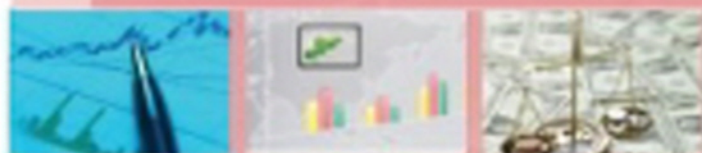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7년 제1호



2017. 7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7년 제1호

2017. 7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CONTENTS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3
1. 들어가며	3
2.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4
가. 소득세	4
나. 법인세	8
3. 평가	11
II. Taxing Wages 2017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4
1. 서 론	14
2.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15
가. 2016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현황	15
나. 2016년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18
3. 요약 및 시사점	27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캐나다 31

1. 미국 31
 - 가. 2016년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내용 발표 31
 - 나. 미국 재무부의 법인세법 개정 관련 보고서 발표 32
 - 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조정세 도입 시사 35
 - 라. 2017년 주요 세법개정안 발표 37
2. 캐나다 39
 - 가. 국가별보고서 작성 양식 발표 39
 - 나. 조세회피 방지 권고안 도입계획 및 성과 발표 39
 - 다. 2017년 예산안 발표 42
 - 라. 개인소득세의 Tax Assured, Tax Gap을 추정한 보고서 발표 45

II. 유럽 47

1. 그리스 47
 - 가. 2016년 조세피난처 국가 발표 47
 - 나.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법개정안 승인 48
 - 다. EU의 자동정보교환지침 시행안 승인 50
2. 네덜란드 50
 - 가. 비상장회사의 주주정보 등록시스템 도입 제안 50
 - 나. 최종 수익적 소유자 등록 법안 관련 의견수렴 개시 51
 - 다.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 체결 52
3. 노르웨이 53
 - 가. 원천징수세 경정청구 기한 연장 53

나. 내국법인 판정에 관한 개정안 발표	54
다. 이자공제 제한 규정에 관한 개정안 발표	55
라.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신고의무 부여	56
4. 덴마크 - 조세회피 방지 부서의 신규 설치 합의	57
5. 독일	57
가. 연결그룹 간 로열티 지급 시 비용공제 제한하는 규정 초안 발표	57
나. 연결그룹 간 로열티 지급 시 비용공제 제한하는 규정 승인	58
6. 룩셈부르크 - 예산안 등 법안 확정	59
7. 리투아니아 -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안 발표	61
8. 벨기에	61
가. 2017년 예산안 최종 승인	61
나. 클라우드 펀딩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금액 유지 발표	63
9. 스웨덴	64
가. 화학세 도입	64
나. 금융활동세 개정안 취소	65
다. 국가별보고서 등에 관한 규정 최종 승인	66
10. 스위스	67
가. 법인세율 인하안 국민투표 부결	67
나. 새로운 세법개정안(TP 17) 발표	68
11. 아일랜드 - 중소기업 주식의 인지세 비과세 규정 도입 발표	70
12. 아이슬란드 - 국가별보고서 규정 개정	70
13. 에스토니아 - 국가별보고서와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규정 승인	71
14. 영국	72
가. 다자간조세협약 참여 계획 발표	72
나. 이자공제 제한 규정 관련 개정안 발표	75
다. 캐시풀링에 대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발표	76
라. 2017년 예산안 발표	78
마. 디지털세무행정에 관한 진행상황 요약	86
바. 해외 온라인 사업자의 조세회피에 관한 보고서 발표	88
사. 2017 재정법 확정	89

아. 국세청의 우회이익세 부과	90
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형사재정법 개정 확정	90
차. 집권 보수당의 조세정책 방향	92
15. 이탈리아	93
가. 2017년 예산법 발표	93
나. 역외재산 자진신고 절차에 대한 지침 공개	96
다. 국가별보고서 관련 시행령 발표	97
라. EU지침에 따른 사전예규 자동교환 시행 발표	98
마. 각료회의의 조세 관련 긴급조치 법령 발표	99
16. 프랑스	101
가. 우회수익세 위헌 결정	101
나. 국가별보고서 신고서식 발표	102
다. 헌법재판소의 CFC규정 관련 면책조항 확대적용 결정	103
17. 핀란드 -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관련 법안 확정	104
18. 체코	106
가.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규정 승인	106
나.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의 보고기한 연장	106
19. 헝가리 -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안 발표	107
20. EU	108
가. 혼성불일치규정 개정 합의	108
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보고서 발표	109
21. OECD	111
가. BEPS Action 4 추가 지침 발표	111
나. BEPS Action 6에 대한 협의문서 공개	112
다.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 추가 서명 국가 발표	113
라. BEPS프로젝트 Action 5와 13에 대한 상호검토 문서 공개	113
마. BEPS프로젝트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114
바. Taxing Wages 2017 보고서 출간	116
사. 국가별보고서의 국가 간 교환체계 현황 발표	117
아. BEPS프로젝트 Action 15에 따른 다자간협약 체결식 개최	118

자. BEPS프로젝트 Action 6 관련 상호검토 문서 발표	120
차. Action 8-10에 따른 무형자산 평가 관련 협의문서 발표	120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122

1. 대만	122
가. 담뱃세,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상 승인	122
나. 고정자산 감가상각표 일부 개정안 발표	123
2. 싱가포르	123
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123
나. 2017/18 예산안 발표	125
3. 인도	127
가. 연방 재무장관 통합 부가가치세 법안 하원 제출	127
나. 'Clean Money' 2단계 실시	128
다. 인도 전역에 통합 부가가치세 7월 1일부터 시행	128
4. 일본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개정	131
5. 중국	133
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2015년 연차보고서 발간	133
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등의 경감방안 발표	135
다. 비거주자 금융계좌정보 실사 정보관리방법 발표	135
라. 영세기업의 법인세 경감 우대정책 범위 확대	136
마. 증치세 세율 간소화 정책 7월 1일부터 시행	137
바. 광고홍보비의 손금산입정책 발표	137
6. 호주	138
가.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s tax; DPT) 법안 의회에 제출	138
나.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발표	139
다. 재무장관 2017/18년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139
7. 홍콩 - 2017/18 예산안 발표	143

IV. 기타 144

1. 남아프리카공화국 - 국가별보고서 최종 규정 공개 144
2. 브라질 - 국가별보고서 최종 규정 공개 144
3. 칠레 - 국가별보고서 도입 발표 145

제1부

〈표 I-1〉 트럼프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소득세율 개편안	5
〈표 I-2〉 G7국과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법정최고세율	5
〈표 I-3〉 G7국 및 우리나라 법인소득세 법정최고세율	9
〈표 II-1〉 2016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현황(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16
〈표 II-2〉 2016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	17
〈표 II-3〉 2016년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한국 vs. OECD 평균 (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18
〈표 II-4〉 2016년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20
〈표 II-5〉 주요국의 독신·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00% 임금수준, 2000~2016년) ·	24
〈표 II-6〉 주요국의 기혼·2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6년) ·	25
〈표 II-7〉 주요국의 기혼·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6년) ·	26

제2부

〈표 I-1〉 캐나다 재무의회의 조세회피 방지 권고사항	40
〈표 II-1〉 그리스의 조세행정 비협조 국가 리스트(2016년)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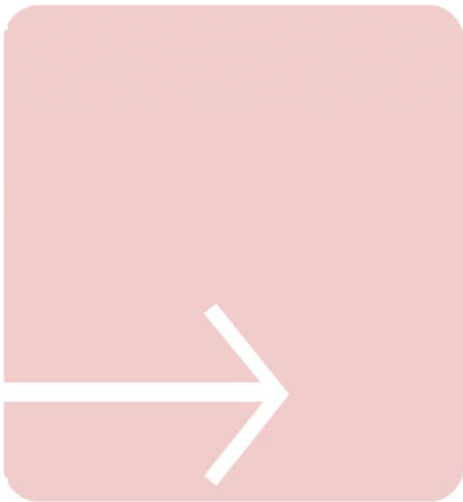
〈표 III-1〉 인도의 통합부가가치세 논의 연혁	129
〈표 III-2〉 인도의 통합부가가치세 세율	131
〈표 III-3〉 2015년 중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단계별 현황	134
〈표 III-4〉 호주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개정내용	141

제1부

[그림 I-1] G7국과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법정최고세율	6
[그림 I-2]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변경된 국가들	6
[그림 I-3] G7국 및 우리나라 법인세 법정최고세율	9
[그림 I-4] G7국 및 우리나라 법인세 법정최고세율	10
[그림 II-1] 2016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노동사용비용 대비 %)	18
[그림 II-2] 2016년 우리나라와 OECD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21
[그림 II-3] 독신·무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	22
[그림 II-4] 기혼·무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	23
[그림 II-5] 기혼·2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	23
[그림 II-6] OECD와 우리나라의 독신·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 (100% 임금수준, 2000~2016년)	25
[그림 II-7] OECD와 우리나라의 기혼·2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6년)	26
[그림 II-8] OECD와 우리나라의 기혼·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 (133% 임금수준, 2000~2016년)	27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본 챕터 '주요 이슈별 동향'에서 제시하는 보고서는 2017년 상반기 중 세법연구센터에서 「조세재정 Brief」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보고서로, 당시 조세현안에 대한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작성하였음

I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들어가며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국의 경제성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 공화당의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제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¹⁾
 - 미 공화당의 세법개정안은 감세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미국 내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트럼프의 세제공약은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을 낮춰 개인의 노동, 저축,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미국 이전을 유도하고 투자를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음
 - 개인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소득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폐지 등을 제시함
 - 법인의 미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하, 신규사업 투자비용 전액 공제, 해외유보소득에 저세율로 일회성 과세를 할 것을 제시함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26일 '2017년 주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대선 시 공약한 다수의 세법개정 내용을 담음²⁾
 -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국 내 일자리창출, 경제성장, 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율 인하, 세법규정 단순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국경조정세³⁾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에는

1)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시 세제공약은 미국 공화당, "A better way", 2016.06.24.를 참고하여 작성함

2)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제개편안은 미국 백악관, "Briefing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Steven Mnuchin and Director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Gary Cohn"을 참조하여 작성함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26/briefing-secretary-treasury-steven-mnuchin-and-director-national>(검색일자: 2017. 4. 27.)

3) 국경조정세는 수출 시 매출액에 과세하지 않고, 수입비용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법인세 과세방법으로, 수입기업에 부과하여 미국기업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임(자료: 미국 공화당, "A

발표된 2017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음

- 개정사항에 대해 큰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5월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발표할 예정임
- 본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제개편안'의 내용 및 정책목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음

2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전반적으로 감세정책을 통해 미국의 중산층 가정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미국 이전 및 해외 유보소득을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유도하여 미국 내 투자를 증대시키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함

가. 소득세

- 미국 가정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1)소득세율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2)기존의 소득 공제제도 폐지 및 표준공제액 확대, 3)자녀 및 부양가족을 둔 가족의 세액공제 확대를 제시함
 - 또한, 세법규정 단순화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완화시키고자 함
-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서 현행 10~39.3%의 7단계 누진세율구조에서 10, 25, 35%의 3단계 누진세율구조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트럼프의 대선공약에서는 12, 25, 33%의 세율을 제시하였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최저세율이 10%로 발표됨
 -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세제공약을 미루어 볼 때 독신의 경우 과세표준이 37,450달러 이하 납세자와 90,750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임(〈표 I-1〉참조)

Better way," 2016. 6. 24.)

- 단, 이는 각종 공제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실효세율이 아닌 명목세율이므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에 따라 세부담 경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최근 G7국의 일부는 최고세율을 인상하였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세율 인하를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와 함께 G7국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표 I-2〉참조)

〈표 I-1〉 트럼프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소득세율 개편안

(단위: 달러, %)

과세표준						현행 세율	제안 세율
단독신고		부부합산, 적격미망인		세대주신고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이하		
0	9,225	0	18,450	0	13,150	10	12
9,225	37,450	18,450	74,900	13,150	50,200	15	12
37,450	90,750	74,900	151,200	50,200	129,600	25	25
90,750	189,300	151,200	230,450	129,600	209,850	28	25
189,300	411,500	230,450	411,500	209,850	411,500	33	33
411,500	413,200	411,500	464,850	411,500	439,000	35	33
413,200	-	464,850	-	439,000	-	39.6	33

자료: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the 2016 House Republican Tax Reform," Table1, 2016.07.

〈표 I-2〉 G7국과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법정최고세율

(단위: %)

구분	세율				변동결과
	2013	2014	2015	2016	
미국	39.6	39.6	39.6	39.6	유지
일본	40	40	45	45	인상
영국	45	45	45	45	유지
프랑스	45	45	45	45	유지 ¹⁾
독일	45	45	45	45	유지
이탈리아	43	43	43	43	유지
캐나다	29	29	29	33	인상
한국	38	38	38	38	유지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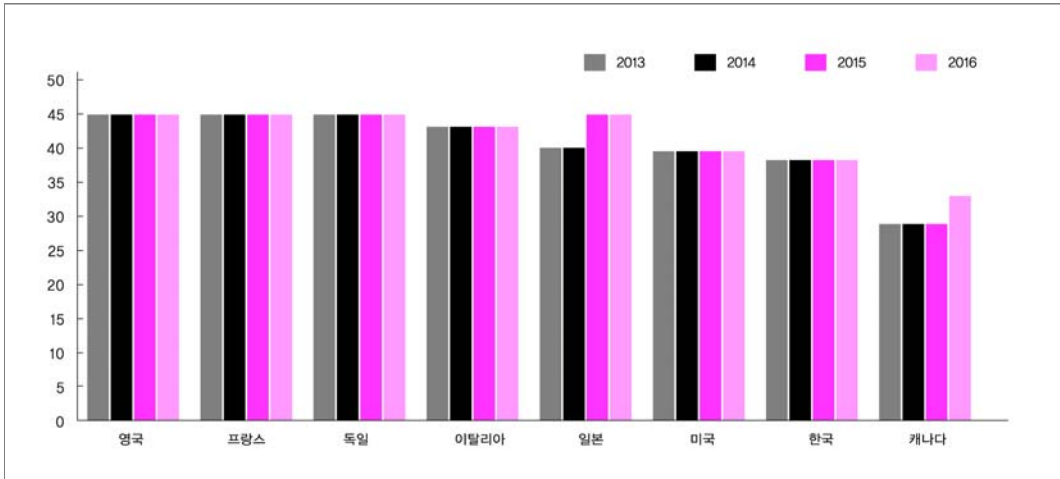
주: 1) 최고세율은 45%로 동일하나 2014년부터 5.5%의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함

2) 우리나라는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40%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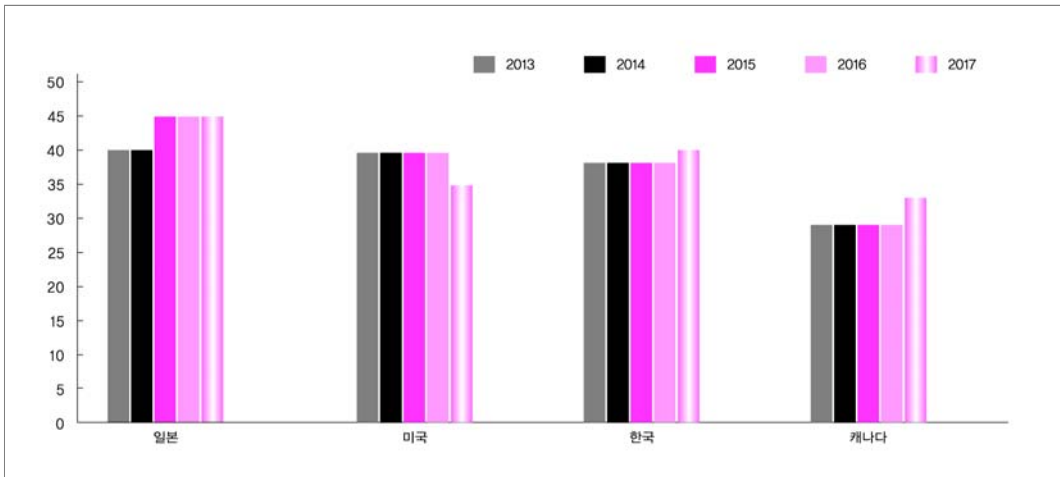
[그림 1-1] G7국과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법정최고세율

(단위: %)



[그림 1-2]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변경된 국가들

(단위: %)



주: 미국은 세계개편안에 제시된 최고세율임

- 둘째, 표준공제액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처럼 표준공제액이 인상되면 소득세 면세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기준 표준공제액은 독신 6,350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12,700달러로 표준공제액을 2배로 인상 시 독신의 경우 조정된 총 소득(AGI)이 12,700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25,400달러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이와 동시에 현재의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여 세법을 단순화하는 한편, 자녀 및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할 것으로 발표함
 - 주택담보대출이자, 기부금, 퇴직연금계좌와 관련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는 한편 그 외 소득공제 항목은 폐지할 것으로 보이거나 구체적인 항목은 제시하지 않음
 - 또한, 주정부·지방정부 납부세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해 주정부의 소득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주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단, 각 주별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저세율 또한 상이하여 소득에 따라 세부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최고세율만 보았을 때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납세 부담이 가장 커질 것임
 - 2016년 기준 주정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캘리포니아 13.9%, 오리건 9.9%, 미네소타 9.85%, 뉴저지 8.97%, 뉴욕 8.82%인 것으로 나타남⁴⁾
- 셋째, 소규모사업자 가업승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함
 -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전략 수립과 같은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함
 - 한편, 현행 세법상 상속·증여재산가액 통합공제를 통해 일생동안 543만달러 한도까지 공제되고 있으므로 상속세 폐지 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적어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함
 - 이는 상속세를 유지하면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각종 특례제도를 제공하는 일본, 독일,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⁵⁾
 - 미국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상속·증여세 면세점 상향으로 가업상속공제가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인식과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2013년 폐지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상속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낸 것도 상속세 폐지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⁶⁾

4) Tax Foundation, "State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for 2016," 2016, 2.

5) 안중석·송은주·정경화, 『주요국의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p. 64.

6) 상속인 또는 증여인은 일생동안 납세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상속·증여 재산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음(Trump Camp, "An America First Economic Plan: winning the global

- 넷째, 자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소득에 부과되는 3.8%의 오바마케어세(Obamacare tax) 폐지를 발표함
 - 오바마케어세는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고소득 투자자의 투자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임⁷⁾
 - 고소득 투자자 기준은 부부합산 신고 시 순 투자소득이 25만달러 이상, 부부별도 신고 시 12만 5천달러 이상, 개인신고의 경우 2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를 말함
-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한세 폐지를 제안함
 - 최저한세란 과도한 공제 및 감면에 의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임
 - 최저한세 폐지를 통해 정규세액과는 별도로 최저한세를 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나. 법인세

- 트럼프 정부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1)법인세율 인하, 2)원천지소득과 세제도로의 전환, 3)해외유보소득에 일회성 과세, 4)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축소를 제안함
- 첫째,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20%p 인하할 것을 발표함
 - 현행 미국의 법인세율은 G7국 중 가장 높은 35%로서(〈표 I-3〉참조),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의 Inversion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 Inversion 거래란 외국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실제 회사는 미국에 그대로 위치하면서 서류상의 본사만 해외로 이전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2004년부터 Inversion 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규제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대처하고자 함

competition,” Detroit Economic Club 연설내용 중, 2016. 8. 8.)

7)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uac/newsroom/net-investment-income-tax-faqs>(검색일자: 2017. 4. 28.)

- 대선 당시 트럼프는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동기를 감소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국내 생산 및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음
 - 세율 인하를 통해 조세피난처를 찾아 미국을 떠났던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할 것을 기대함

- 개정안 통과 시 미국의 법인세율은 G7국의 평균 법인세율인 24%보다 낮은 15%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캐나다와 함께 G7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법인세율이 15%로 인하될 경우 다국적 기업이 주로 소재하는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인 12.5% 수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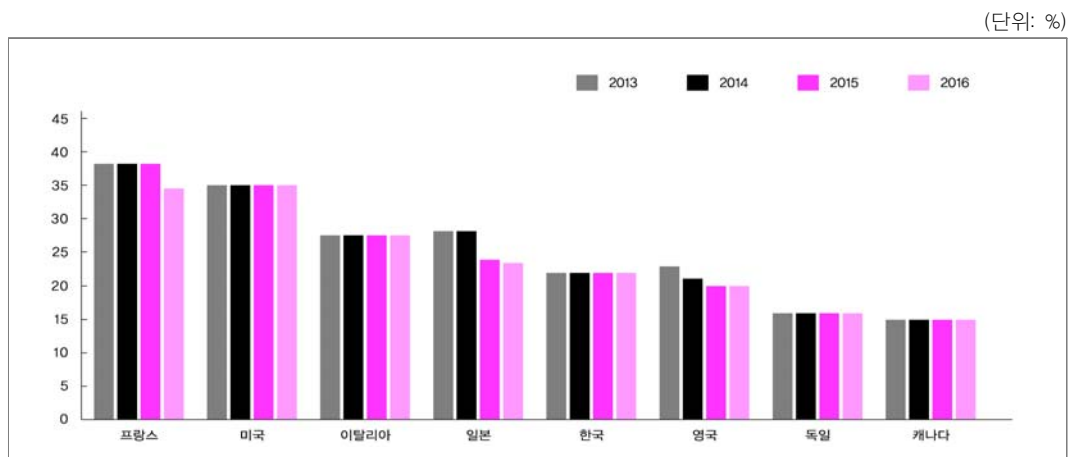
[표 1-3] G7국 및 우리나라 법인소득세 법정최고세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변동결과
미국	35	35	35	35	유지
일본	28.05	28.05	23.9	23.4	인하
영국	23	21	20	20	인하
프랑스	38	38	38	34.43	인하
독일	15.83	15.83	15.83	15.83	유지
이탈리아	27.5	27.5	27.5	27.5	유지
캐나다	15	15	15	15	유지
한국	22	22	22	22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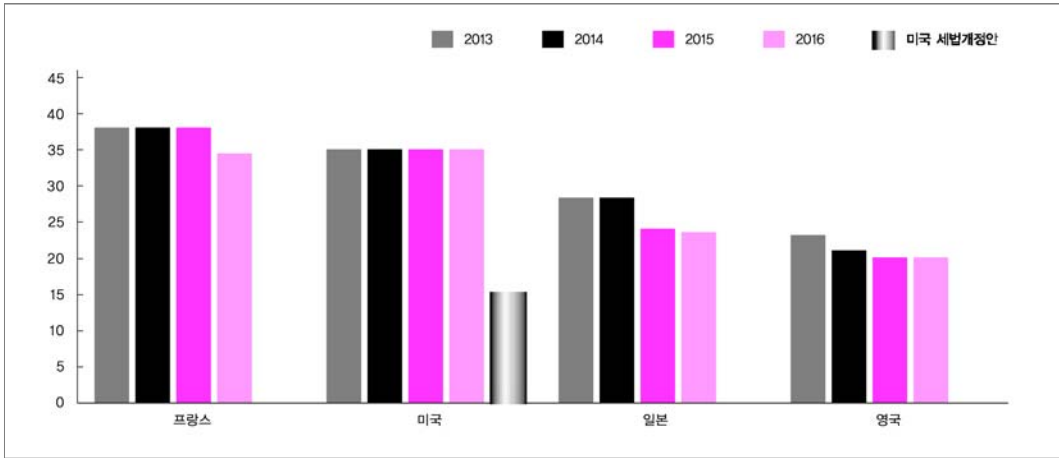
주: 부가세(surtax) 등을 포함한 법인소득세 전체 최고세율임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I.1, Corporate income tax rate

[그림 1-3] G7국 및 우리나라 법인세 법정최고세율



[그림 1-4] G7국 및 우리나라 법인세 법정최고세율

(단위: %)



주: 미국은 세계개편안에 제시된 최고세율임

- 둘째, 기존의 전세계소득과세체계(Worldwide System)에서 원천국가과세체계(Territorial System)제도로의 전환을 발표함⁸⁾
 - 원천국가과세체계 전환 시 국외발생소득에 대해 과세 없이 국내 송금이 가능함
 - 두 과세방법의 우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전세계소득과세체계에서 원천국가과세체계로 전환하는 추세임⁹⁾
- 셋째,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는 해외유보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일회성 세금(one-time tax)을 부과하여 국내로 자금을 유입시키고자 함
 - 현행 제도하에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이하 CFC) 소득은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아 부적절하게 과세를 이연하는 문제가 발생해옴¹⁰⁾

8) 전세계소득과세체계(Worldwide System)란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거주국가에서 과세권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국내외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이익에 대해 거주국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음. 원천국가과세체계(Territorial System)란 소득의 원천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거주국가에서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는 과세방식임

9)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전세계소득과세체계를 운용 중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함

10) 해외자회사 소득은 미국 내 주주에게 배당형태로 지급될 때 과세되며, 미국 내로 송환되지 않더라도 Subpart F 소득(주로 수동소득, CFC가 속한 국가와 경제적 연관성이 없는 소득),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투자소득, 배당간주금액에 과세함. 이를 통해 과세이연문제를 일정 수준에서 방지할 수 있으나, 과세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음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스코, 오라클과 같은 IT기업의 해외누적소득은 총현금보유액의 41%로 추정됨¹¹⁾

- 대선 당시 해외에 누적된 유보소득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 유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세율은 제시하지 않음
 - 해외유보소득을 국내로 송환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동시에 일회성 과세를 통해 법인세율의 급격한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 바 있음
- 마지막으로, 이자비용 공제 축소를 발표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지 않음
 - 이자비용은 배당과는 달리 과세소득에서 공제됨에 따라 기업들이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이 지적되어 옴
 - 추가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판단됨

3 평가

-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의 노동·저축·소비를 장려하는 동시에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제고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제시함
 - 므누친(Mnuchin) 재무장관은 본 감세안으로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증대를 통해 3%의 경제성장을 기대하며 이로써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함
- 납세자들의 세부담 완화로 개인의 노동·저축·투자 동기를 증가시키며 기업의 불필요한 조세회피행위 감소 및 기업의 국내이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존재함
 - Tax Policy Center(이하 TPC) 및 Tax Foundation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담 완화로 TPC는 개인 및 법인의 세후소득이 7.1%p, Tax Foundation은 10.2%p

11) S&P Global Ratings, "Technology: Awaiting the Return of Cash Stockpiles"
<https://www.spglobal.com/our-insights/Technology-Awaiting-the-Return-of-Cash-Stockpiles.html> (검색일자: 2017. 4. 2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¹²⁾

- 반면, 감세규모에 대한 구체적 정보 및 재정적자에 대한 세부계획의 미흡, 국경조정세의 불포함, 입법화 과정의 난항 예상 등의 이유로 세계개혁안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다수 존재함¹³⁾
- 대선 당시 해외에 누적된 유보소득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 유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세율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임
-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에 기인한 구체적인 세수감소의 규모 및 재정적자 해결방안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감세정책의 대안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 공제제도 폐지,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조세혜택제도 폐지 등을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규모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세수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임
 - 미의회예산국(CBO)은 세수손실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부채가 증가해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¹⁴⁾
 - 세수 부족분에 대한 후속대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 미국 기업의 국내복귀(Reshoring) 효과가 실제로 존재할 것인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임¹⁵⁾
- 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¹⁶⁾를 통해 수출에 대해 면세를 확대하고 수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번 세계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12)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 규모 및 재정수지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의 세계공약을 토대로 분석한 수치임을 밝힘

13) TIME, "The White House Unveiled a Tax Reform Plan. It's Not Really a Plan"
<http://time.com/4756442/trump-tax-reform-plan-mnuchin/>

14)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Fiscal FactCheck: How Much Will Trump's Tax Plan Cost?",
<http://www.crfb.org/blogs/fiscal-factcheck-how-much-will-trumps-tax-plan-cost>

15) Reshoring이란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비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기지 등을 해외로 진출하는 Offshoring과 대비되는 개념임

16) 국경조정세는 수입기업과 수출기업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비용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법인세를 증가하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관련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법임

- 북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경조정세가 세계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아 다행스러운 측면이 존재하나, 향후 수정안의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에 따라 국경조정세의 도입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음
- 또한 의회에서의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안 통과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다수임
 - 민주당은 최저한세, 상속세, 오바마케어세 폐지 등 감세안의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됨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막대한 세수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세계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 공화당 역시 일자리 창출, 조세부담 경감, 미국 내 투자 증대를 목표로 함에 따라¹⁷⁾ 트럼프 정부의 세계개혁안과 궤를 잇고 있으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세개혁에 대한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 다수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임

17) 미국 공화당 “A better way” 2016. 6. 24

II

Taxing Wages 2017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서론

- OECD는 2017년 4월 11일 OECD 35개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Taxing Wages 2017』 보고서를 출간¹⁸⁾
 - 동 보고서는 OECD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OECD 회원국의 임금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비교·분석
 -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산출을 위해 근로자¹⁹⁾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와 더불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²⁰⁾ 등을 모두 고려
 - 특히,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 및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임금소득 과세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Taxing Wages 2017』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 현황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 구체적으로, 2016년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개인 근로자의 세부담 및 세부담 구성 비중 현황을 정리
 - 또한, 2016년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가구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현황 및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구형태별 세부담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18)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ctp/tax-policy/taxing-wages-20725124.htm>(검색일자: 2017. 5. 25.)

19) '성인 정규 근로자(adult full-time worker)'가 그 대상이며, 육체노동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뿐 아니라 사무직 등 비육체 노동근로자도 포함함

20)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호주·오스트리아·헝가리·스웨덴 등 일부 국가의 통계에 포함됨

- 본고에서는 세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중 조세격차(tax wedge)를 사용
 - 조세격차는 고용주의 노동사용비용(labour costs) 중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에서 근로자에 대한 가계현금급여를 뺀 값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음

$$\text{조세격차(\%)} = \frac{\text{개인소득세} + \text{근로자부담 사회보험료} + \text{고용주부담 사회보험료} - \text{가계현금급여}}{\text{임금} + \text{고용주부담 지불급여세} + \text{고용주부담 사회보험료}} \times 100$$

- 고용주의 총노동사용비용과 근로자의 실질임금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로 표현되기도 함
-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세부담 수준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Taxing Wages 2017』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

2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가. 2016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현황

1) 조세격차 현황

- 2016년 현재 OECD 회원국들의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조세격차는 36.0%로, 최대 54.0%(벨기에)에서 최소 7.0%(칠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 (<표 II-1> 참조)²¹⁾
 - 조세격차가 OECD 평균인 36.0%를 상회하는 국가는 총 21개국이며, OECD 평균보다 작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4개국
- OECD 평균 조세격차가 전년 대비 평균 0.07%p 감소한 가운데, 전년 대비 조세격차가 증가한 국가는 20개국, 감소한 국가는 14개국이며, 칠레의 경우 조세격차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1) 본고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국가와 우리나라의 현황만을 제시함. OECD 35개 회원국에 대한 자료는 OECD의 『Taxing Wages 2017』, p. 16 참조.

- OECD 회원국들에서 조세격차가 감소한 주된 요인은 소득세의 감소(-0.09%p)였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은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0.02%p)
- 우리나라의 2016년 조세격차는 22.2%로 전년 대비 0.18%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 중 30위로 세부담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

〈표 II-1〉 2016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현황(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단위: %, %p)

국 가	조세격차	전년 대비 증감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¹⁾
독일	49.4	0.05	-0.12	0.17	0.00
프랑스	48.1	-0.34	0.19	0.17	-0.70
이탈리아	47.8	-0.08	0.02	0.01	-0.11
일본	32.4	0.12	0.01	0.06	0.06
미국	31.7	0.15	0.19	0.00	-0.05
캐나다	31.4	-0.13	-0.17	0.01	0.02
영국	30.8	-0.03	-0.11	0.04	0.04
한국	22.2	0.18	0.13	0.02	0.02
OECD 평균	36.0	-0.07	-0.09	0.04	-0.01

주: 1) 지불급여세(payload taxes)가 있는 국가의 경우 지불급여세 포함.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6.

2)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 2016년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총노동사용비용²²⁾은 50,214달러이며, 노동사용비용 중 소득세 비중은 13.4%,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지불급여세 포함)의 비중은 22.6%(〈표 II-2〉 및 [그림 II-1] 참조)²³⁾
-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 부담 비중은 평균 14.4%, 근로자 부담 비중은 평균 8.2%로 고용주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됨

22) 구매력 기준 미국달러(US dollars with equal purchasing power)로 표시

23) 본고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국가와 우리나라의 현황만을 제시함. OECD 35개 회원국에 대한 자료는 OECD의 『*Taxing Wages 2017*』, pp. 17~18 참조.

- 우리나라의 노동사용비용은 OECD 평균보다 높은 54,053달러이며(18위), 노동사용비용 대비 소득세 비중은 5.2%,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17.0%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모두 상당히 낮은 수준
 - 소득세의 경우 OECD 평균인 13.4%보다 8.2%p 낮았으며, 이는 칠레(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
 - 사회보장기여금의 근로자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상대적 차이를 감안하면 근로자 부담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은 7.6%로 OECD 평균인 8.2%와 비슷한 수준
 -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은 9.4%로 OECD 평균 14.4%보다 5.0%p 낮았음
- 우리나라의 조세격차 구성요소별 OECD 회원국 내 순위는 모든 항목에 걸쳐 낮은 편 (<표 II-3> 참조)
 - 조세격차는 OECD 회원국 중 30위로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개인소득세 항목의 순위가 매우 낮은 반면,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평균 수준
 - 개인소득세는 칠레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34위
 -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회원국 중 18위

<표 II-2> 2016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단위: %, USD)

국 가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¹⁾	노동사용비용 ²⁾
독일	49.4	15.9	17.3	16.2	73,683
프랑스	48.1	10.8	10.5	26.8	65,294
이탈리아	47.8	16.4	7.2	24.2	55,609
일본	32.4	6.8	12.5	13.1	57,882
미국	31.7	16.9	7.1	7.7	56,956
캐나다	31.4	13.8	6.8	10.8	45,998
영국	30.8	12.6	8.4	9.7	58,714
한국	22.2	5.2	7.6	9.4	54,053
OECD 평균	36.0	13.4	8.2	14.4	5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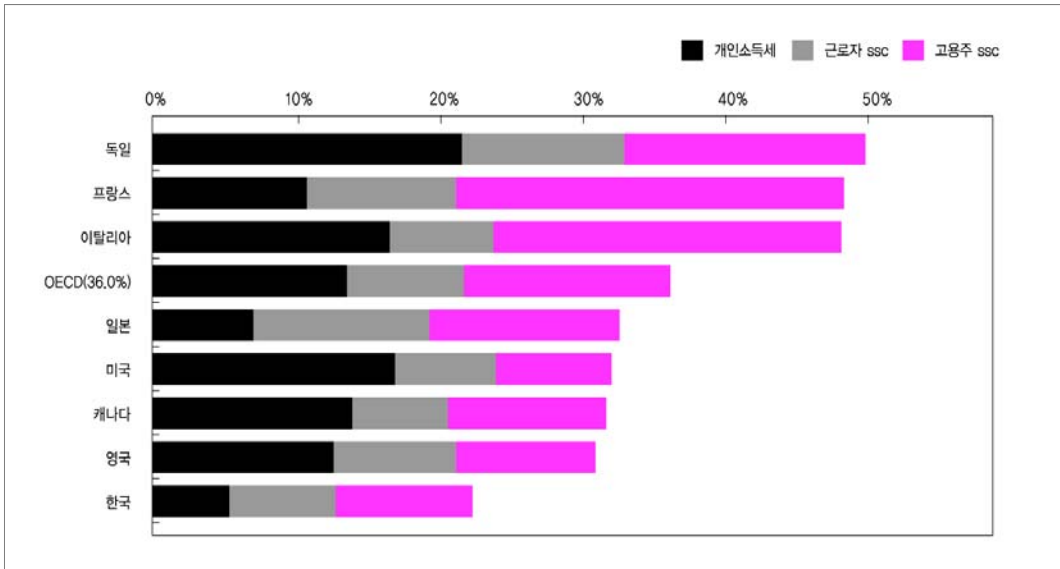
주: 1) 지불급여세(payroll taxes)가 있는 국가의 경우 지불급여세 포함.

2) 구매력 기준 미국달러(US dollars with equivalent purchasing power)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7.

[그림 II-1]

2016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노동사용비용 대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8.

<표 II-3>

2016년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한국 vs. OECD 평균 (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단위: %, USD)

구분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노동사용비용
한국(A)	22.2	5.2	7.6	9.4	54,053
OECD 평균(B)	36.0	13.4	8.2	14.4	50,214
한국과 OECD 평균 격차(B-A)	13.8	8.2	0.6	5.0	-3,839
OECD 회원국 중 순위	30	34	18	27	18

나. 2016년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1)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 OECD 회원국의 가구구성 형태²⁴⁾별 조세격차 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II-4> 참조)²⁵⁾

- 평균 임금수준의 “독신·무자녀 가구”가 “기혼·2자녀 가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
 - 평균 임금수준의 “독신·무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36.0%, 평균 임금수준의 외별이 “기혼·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26.6%
 - 같은 독신 가구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
 - “임금수준 67%의 독신·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16.6%)는 “임금수준 67%의 독신·무자녀 가구”의 조세격차(32.3%)의 절반 수준
 - 이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부양가족에 따른 세제혜택과 정부의 가계 현금급여 지급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대부분의 가구형태에서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II-2 참조)
- “독신·무자녀 가구”에서는 모두 OECD 평균과 10%p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 가운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OECD 평균과 조세격차 차이가 증가
 - 기혼 가구를 살펴보면 자녀유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기혼 가구 역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OECD 평균과 조세격차 차이가 확대되는 패턴이 나타남
 - 예외적으로, 가장 취약한 가구로 분류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낮은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만 OECD 평균보다 높은 세부담을 보임
 - “임금수준 67%의 독신·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17.0%로 OECD 평균(16.6%)을 상회

24) OECD(2017)에서는 다음의 8가지 가구 유형을 선정하여 세부담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 ① 독신·무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67% 임금수준
- ② 독신·무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100% 임금수준
- ③ 독신·무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167% 임금수준
- ④ 독신·2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67% 임금수준
- ⑤ 기혼·2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100% 임금수준(외별이)
- ⑥ 기혼·2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133% 임금수준(1차 근로자 100%, 2차 근로자 33% 임금수준)
- ⑦ 기혼·2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167% 임금수준(1차 근로자 100%, 2차 근로자 67% 임금수준)
- ⑧ 기혼·무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133% 임금수준(1차 근로자 100%, 2차 근로자 33% 임금수준)

25) 본고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국가와 우리나라의 현황만을 제시함. OECD 35개 회원국에 대한 자료는 OECD의 『Taxing Wages 2017』, p. 54 참조.

- 우리나라 역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향은 나타나지만, 부양가족에 따른 세제혜택의 정도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II-2〉 참조)
- 우리나라의 맞벌이 기혼·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19.6%, 맞벌이 기혼·무자녀 가구는 20.9%로 1.3%p 차이를 보이는 데 그침
- 반면 OECD 평균의 경우 맞벌이 기혼·2자녀 가구 28.2%, 맞벌이 기혼·무자녀 가구 32.8%로 4.6%p 차이를 보여 우리나라보다 그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표 II-4〉 2016년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단위: %)

국 가	독신	독신	독신	독신	기혼	기혼	기혼	기혼
	무자녀	무자녀	무자녀	2자녀	2자녀	2자녀	2자녀	무자녀
	67%	100%	167%	67%	100%	100~33%	100~67%	100~33%
	임금수준	임금수준	임금수준	임금수준	임금수준 ¹⁾	임금수준 ²⁾	임금수준 ³⁾	임금수준 ⁴⁾
캐나다	26.5	31.4	32.7	-14.9	11.9	20.5	24.7	28.3
프랑스	43.0	48.1	54.4	24.5	40.0	37.5	42.6	42.7
독일	45.3	49.4	51.4	31.0	34.0	38.8	42.4	45.2
이탈리아	40.8	47.8	54.1	25.3	38.6	38.4	41.5	42.7
일본	31.0	32.4	35.0	24.9	27.1	28.5	29.4	31.6
한국	19.0	22.2	24.5	17.0	20.0	19.6	19.8	20.9
영국	25.9	30.8	37.3	6.2	25.8	22.4	26.2	25.8
미국	29.3	31.7	36.5	12.7	20.8	24.5	26.5	29.2
OECD 평균	32.3	36.0	40.4	16.6	26.6	28.2	30.9	32.8

주: 1) 외벌이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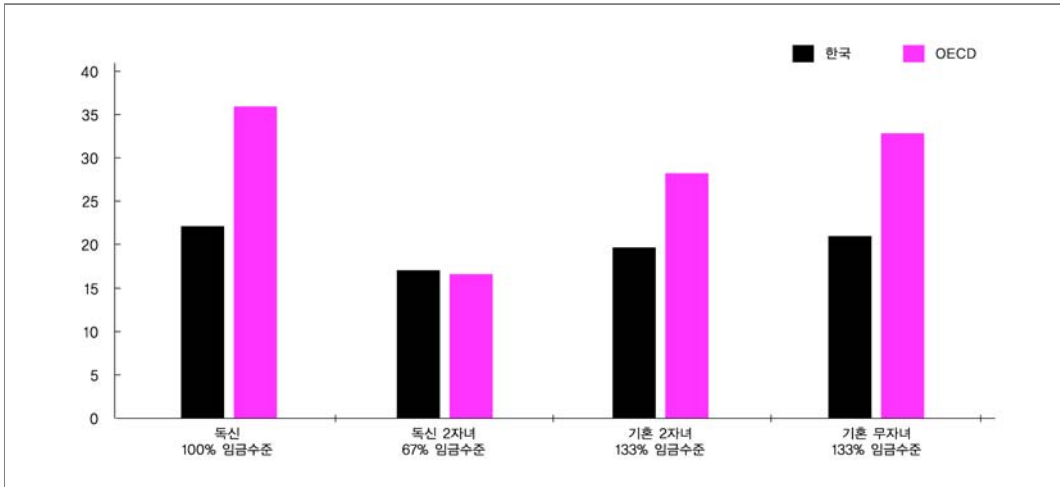
2) 1차 근로자 임금수준 100%, 2차 근로자 임금수준 33%,

3) 1차 근로자 임금수준 100%, 2차 근로자 임금수준 67%,

4) 1차 근로자 임금수준 100%, 2차 근로자 임금수준 33%,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54.

[그림 11-2] 2016년 우리나라와 OECD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주: 자료의 제한으로 독신·2자녀의 경우 67% 임금수준, 기혼·2자녀와 기혼·무자녀의 경우 133%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함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5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격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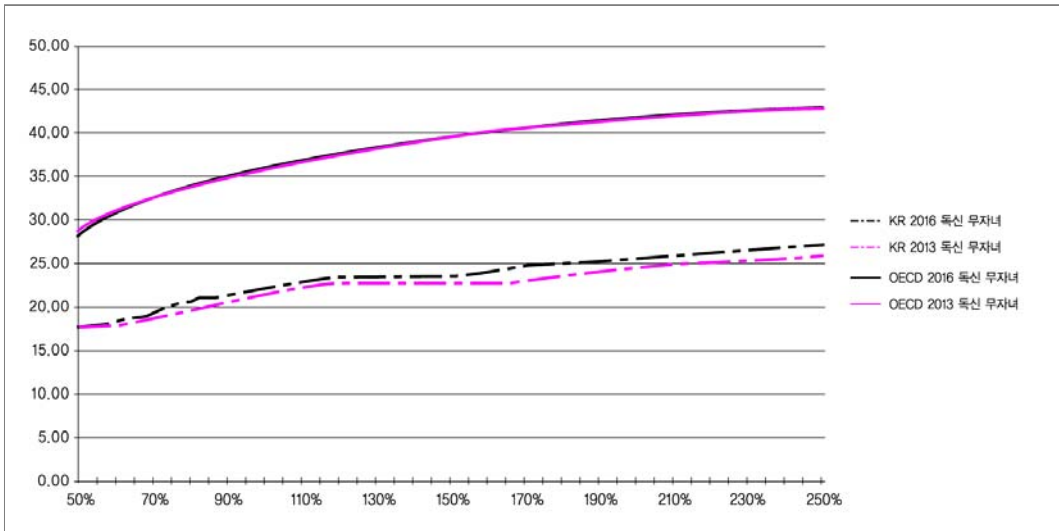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구형태 및 소득구간에서 세부담 수준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3, 4, 5 참조)
 - “독신·무자녀 가구” 및 “기혼·무자녀 가구”의 경우 모든 임금소득 구간에서 OECD 평균이 우리나라 수치를 상회함
 - 다만 “기혼·2자녀 가구” 저소득 구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았음
 - 평균 임금의 50~70% 구간에서 세부담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가족수당 등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정부의 가계현금급여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²⁶⁾
- 또한 OECD는 각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이 2013년과 2016년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 기간 전반적으로 상승
 -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소득공제제도의 상당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추정

26) 안종석,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4. p. 44.

- 우리나라는 임금소득 수준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이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임
 - 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수록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조세격차 차이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다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 누진성은 2013년 대비 다소나마 개선
 - 누진성에 있어 OECD 평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가구형태는 “기혼·2자녀 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저소득 가구에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1-3] 독신·무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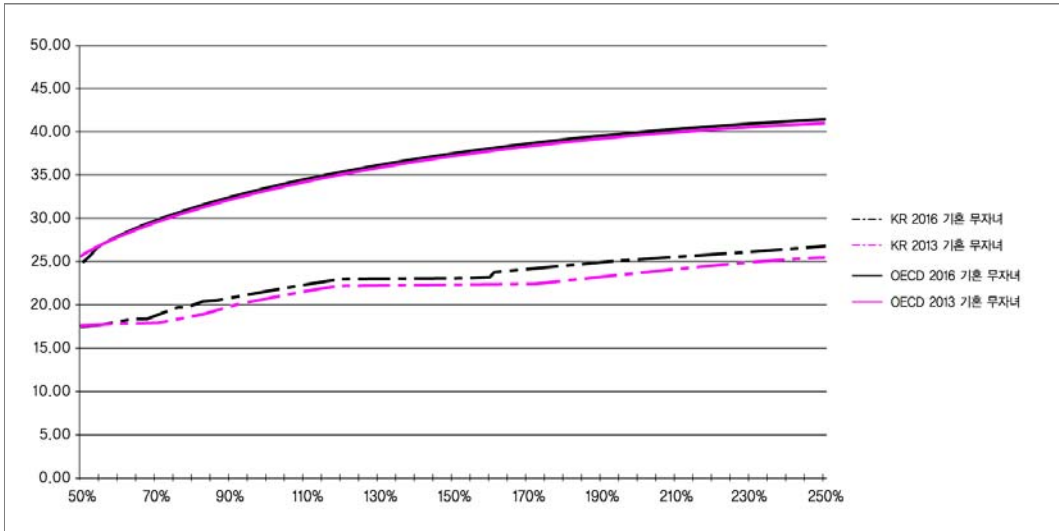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ax wedge decomposition(<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 검색일자: 2017.5.2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11-4] 기혼·무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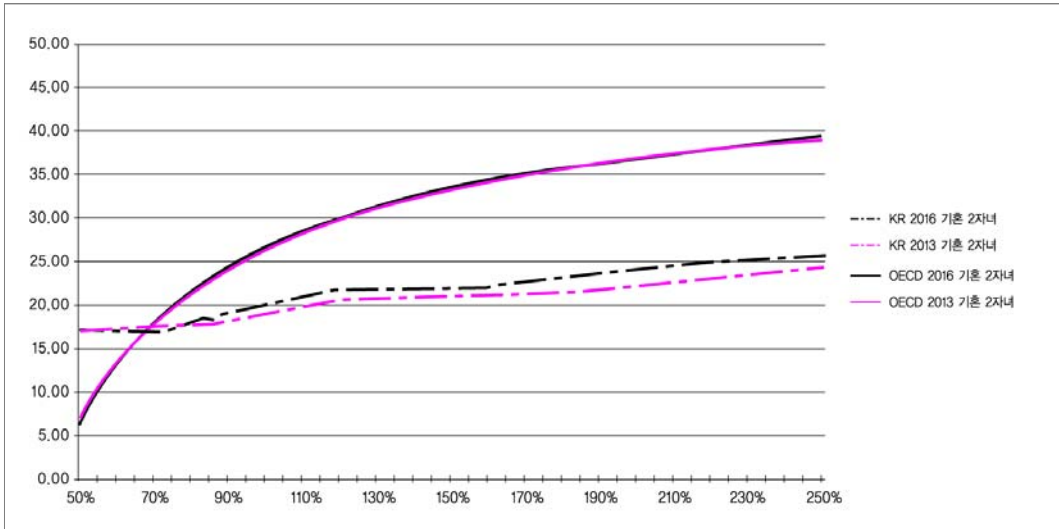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ax wedge decomposition(<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 검색일자: 2017. 5. 2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11-5] 기혼·2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

(단위: %)



자료: OECD, Tax wedge decomposition(<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 검색일자: 2017. 5. 2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추이

-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구형태별 세부담 추이를 살펴보면 OECD의 경우 2000년 대비 2016년 조세격차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표 II-5, 6, 7〉 참조)²⁷⁾
- OECD의 평균 조세격차는 모든 가구형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2000년 대비 2016년 평균 조세격차는 여전히 1%p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우리나라는 조사기간 동안 매년 조세격차가 상승하여 모든 가구형태에서 2000년 대비 2016년 조세격차가 4~5%p 이상 상승
 - 독신·무자녀 가구의 경우 2016년 기준 22.2%로 2000년(16.4%) 대비 5.8%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멕시코(7.4%p) 다음으로 높은 상승 폭을 보임
 - 기혼·2자녀 가구 및 기혼·무자녀 가구의 조세격차 역시 동 기간 각각 4.3%p와 5.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기록

〈표 II-5〉 주요국의 독신·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00% 임금수준, 2000~201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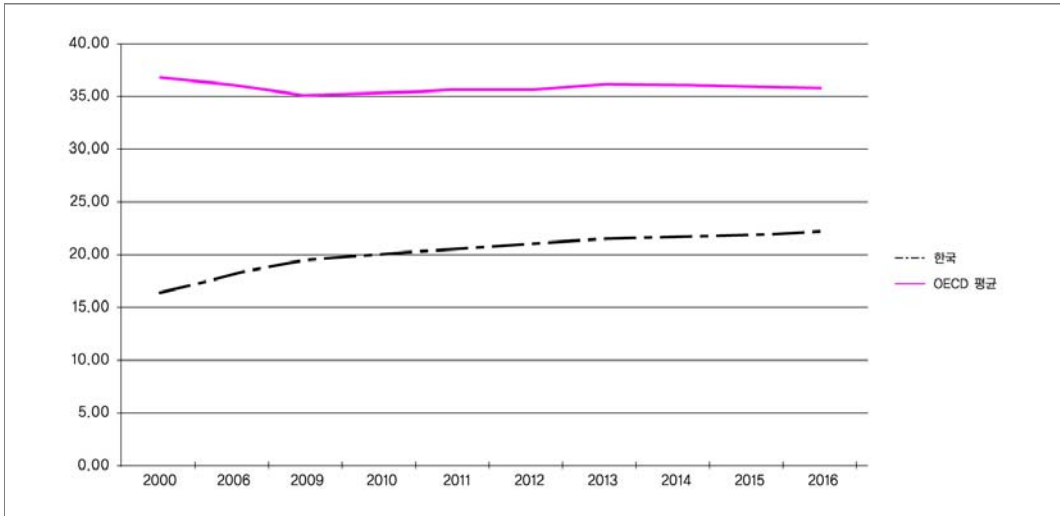
국 가	2000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캐나다	32.9	31.8	30.5	30.4	30.7	30.8	31.0	31.6	31.5	31.4
프랑스	50.4	49.7	49.8	49.9	50.0	50.1	48.8	48.4	48.4	48.1
독일	52.9	52.3	50.8	49.0	49.7	49.6	49.2	49.3	49.4	49.4
이탈리아	47.1	46.1	46.8	47.2	47.6	47.7	47.8	47.8	47.9	47.8
일본	29.8	28.8	29.2	30.2	30.8	31.3	31.6	32.0	32.3	32.4
한국	16.4	18.2	19.5	20.1	20.5	21.0	21.5	21.7	22.0	22.2
영국	32.6	34.0	32.4	32.6	32.5	32.1	31.4	31.0	30.8	30.8
미국	30.8	30.6	30.3	30.7	29.9	29.8	31.5	31.6	31.6	31.7
OECD 평균	37.0	36.2	35.2	35.3	35.8	35.9	36.2	36.2	36.1	36.0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44.

27) 본고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국가와 우리나라의 독신·무자녀 가구(100% 임금수준), 기혼·2자녀 가구(133% 임금수준), 기혼·무자녀 가구(133% 임금수준)의 현황만을 제시함. OECD 35개 회원국에 대한 전체 가구형태별 자료는 OECD의 『*Taxing Wages 2017*』, pp. 144, 156, 162 참조.

[그림 11-6] OECD와 우리나라의 독신·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00% 임금수준, 2000~2016년)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4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1-6] 주요국의 기혼·2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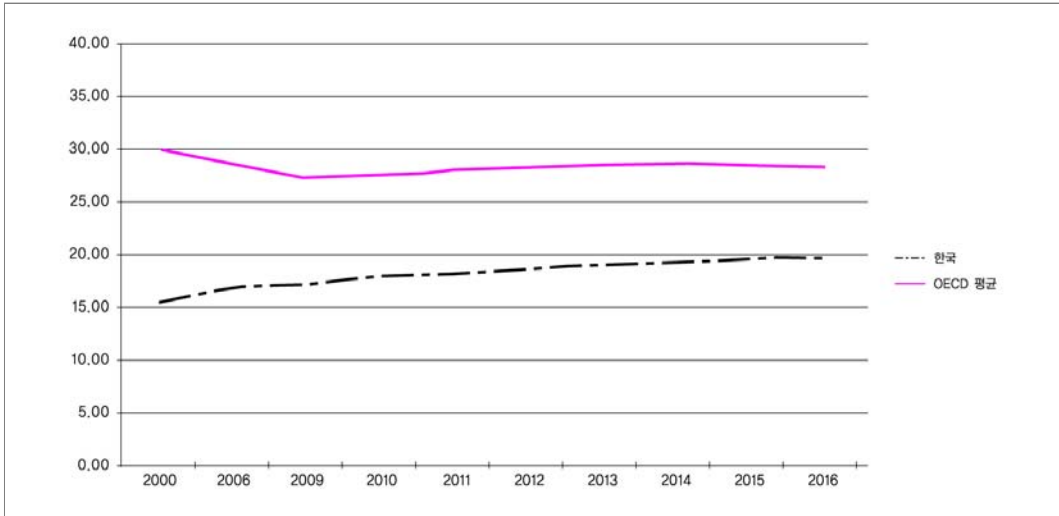
(단위: %)

국 가	2000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캐나다	26.9	25.4	23.0	23.2	23.4	23.7	24.0	24.2	19.9	20.5
프랑스	40.5	40.0	40.4	40.6	40.7	41.0	39.4	37.5	37.8	37.5
독일	41.2	41.0	38.9	37.7	38.6	38.7	38.3	38.5	38.6	38.8
이탈리아	41.1	39.1	38.9	39.6	40.2	40.5	40.3	38.9	38.5	38.4
일본	27.7	24.8	24.9	24.0	25.1	27.2	27.5	28.0	28.4	28.5
한국	15.3	16.6	17.1	17.8	18.0	18.6	19.0	19.2	19.5	19.6
영국	25.5	26.0	24.4	24.7	24.8	24.4	23.3	22.6	22.4	22.4
미국	25.0	23.0	22.6	23.0	22.6	22.7	24.3	24.6	24.4	24.5
OECD 평균	29.9	28.6	27.2	27.4	27.9	28.2	28.5	28.6	28.3	28.2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56.

[그림 11-7] OECD와 우리나라의 기혼·2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6년)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5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1-7] 주요국의 기혼·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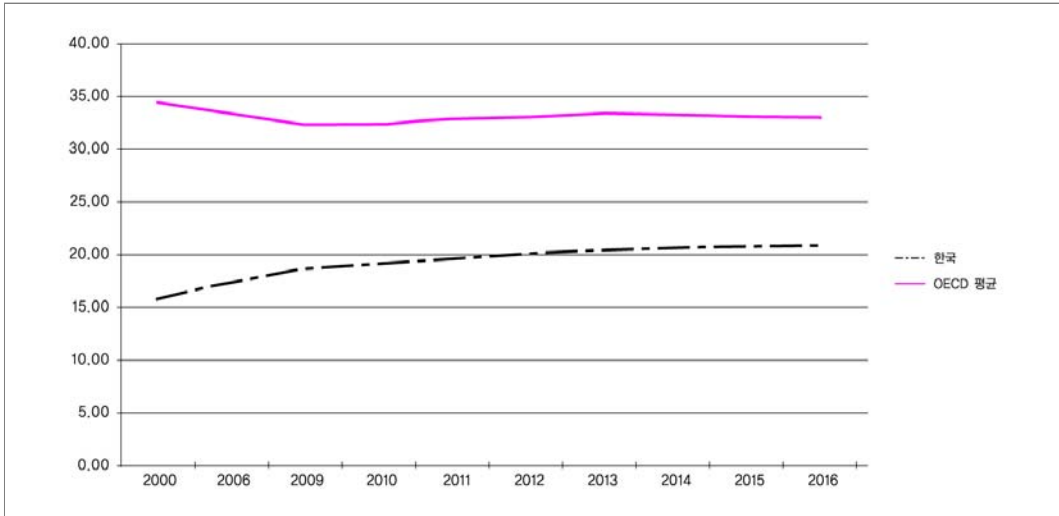
(단위: %)

국 가	2000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캐나다	30.0	28.7	27.3	27.2	27.5	27.7	27.8	28.4	28.4	28.3
프랑스	45.3	44.4	46.1	46.1	46.2	46.4	44.9	44.4	43.7	42.7
독일	47.5	47.4	45.9	44.8	45.5	45.4	45.0	45.0	45.1	45.2
이탈리아	44.0	42.7	43.4	43.9	44.4	44.6	44.8	43.3	42.8	42.7
일본	29.1	28.0	28.3	29.4	30.0	30.4	30.7	31.1	31.5	31.6
한국	15.8	17.4	18.6	19.2	19.6	20.0	20.4	20.5	20.8	20.9
영국	29.1	30.6	29.1	29.3	28.4	27.8	26.7	26.1	25.8	25.8
미국	29.5	28.8	28.0	28.3	27.8	27.7	29.3	29.5	29.2	29.2
OECD 평균	34.3	33.3	32.2	32.3	32.8	33.0	33.2	33.1	33.0	32.8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62.

[그림 11-8] OECD와 우리나라의 기혼·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6년)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6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임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OECD 35개국 중 30위에 해당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2014년 기준 4.0%로 OECD 평균인 8.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²⁸⁾
 -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기준 16.3%로 OECD 평균(2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²⁹⁾
- 또한 전반적인 세부담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이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임

28)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tax/tax-on-personal-income.htm#indicator-chart>(검색일자: 2017. 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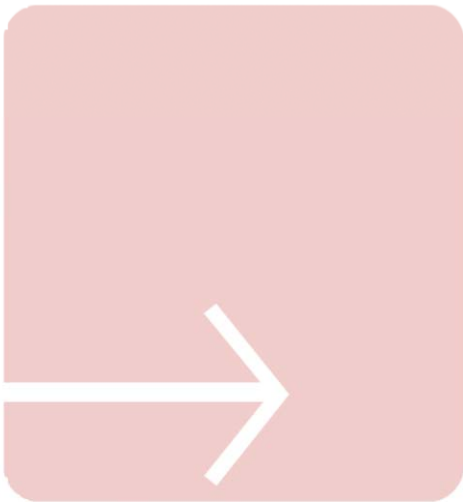
29)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tax/tax-on-personal-income.htm#indicator-chart>(검색일자: 2017. 6. 13)

- 이러한 현상은 모든 가구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기혼·2자녀 가구의 저소득 구간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이 OECD를 상회
-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상대적 고소득 구간에서의 세부담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저소득 구간에서의 세부담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따른 세제혜택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남
- OECD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부담이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작음
-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OECD 국가들의 현황을 참고할 때,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누진성 강화를 고소득 구간에만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되는 세율체계 개편만으로는 세수 증대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안종석(2016)의 지적을 참고할 필요³⁰⁾
-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30) 안종석, 『소득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 159.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캐나다

1 미국

가. 2016년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내용 발표

[조세동향 17-1호]

- 미국 국세청은 2017년 1월 3일, 2016년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발표함³¹⁾
 - 2016년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1) 올림픽 상금 비과세, 2) 장애인 저축계좌(able account) 납입액 인출 시 비과세, 3) 퇴직연금계좌(IRA) 납입액 중도인출 시 다른 계좌로의 이전기한 연장, 4)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변경이 있음
- 2016년에 올림픽 메달, 상금을 받는 자는 조정된 총소득(AGI)이 1백만달러 미만인 경우 올림픽 메달 가치 또는 상금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부 별도신고 시 AGI가 50만달러 미만인 경우 올림픽 메달가치 및 상금소득에 과세되지 않음
- 2016년부터 장애인 양육비 목적으로 장애인 저축계좌 납입액 인출 시 비과세혜택이 적용됨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되었으나 2016년부터 가입이 가능하였음
 - 가입대상자는 26세 이전 장애판정을 받은 자이며, 연간 14,000달러를 한도로 불입

31)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uac/newsroom/2016-tax-changes>, IBFD, United States - IRS issues Fact Sheet regarding 2016 tax changes(13 Jan. 2017), News IBFD.

이 가능하고, 장애아동의 교육, 교통, 건강, 고용훈련 등 장애아동과 관련된 비용인출 시 운영소득에 과세하지 않음

- 2016년 8월부터 자기검증제도가 도입되어 은행에 퇴직연금계좌(IRA) 납입액 중도인출 시 은행에 서류만 제출하여 중도인출액을 다른 IRA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기한 연장이 가능함
- 기존에는 IRA납입액 중도인출 시 다른 퇴직연금계좌로 60일 이내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 인출금액에 과세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요청 건당 1만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³²⁾
- 자기검증제도는 국세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승인 및 수수료 부담 없이 다른 IRA로 이전해야 하는 기한의 연장을 허용함
 - 국세청이 정한 사유로는 가족의 사망·질병, 주거지 침해, 송달 오류, 금융기관 오류 등이 있음
- 2016년 해외금융계좌의 신고(FBAR³³⁾)기한은 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개정되었으며, 자동연장제도 도입으로 기한 내 미제출 시 2016년 10월 16일로 자동연장됨
- 기존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은 6월 30일이었으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자동 기한 연장제도가 별도로 없었으나 2016년부터 자동연장제도가 도입됨

나. 미국 재무부의 법인세법 개정 관련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7-2호]

- 미 재무부 조세정책과(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Tax policy)는 2017년 1월 4일 법인세 개정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The case for responsible business tax reform"을 발표함³⁴⁾

32)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시 비과세를 위한 유예기간 관련한 정보는 미 국세청의 "Retirement Plans FAQs relating to Waivers of the 60-day Rollover Requirement"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retirement-plans-faqs-relating-to-waivers-of-the-60-day-rollover-requirement#5>

33)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으로 2016년 중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1만달러를 초과한 날이 있는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함

34) 발표일자는 2017년 1월 4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발표된 자료임.
IBFD, "United States - US Treasury Department issues report on US business tax reform," 2017. 1. 24.

- 보고서는 현행 법인세제도의 문제점, OECD 국가의 법인세 과세체계와 비교를 통해 미국 내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제도, 법인세 개정방향 검토의 내용을 담고 있음

1) 현행 법인세제도의 문제점

- 현행 조세제도는 기업의 투자 및 저축을 위축시키고, 자본조달방법 또는 기업설립형태에 따라 과세 차이가 발생해 자본조달방법 및 기업 설립형태를 왜곡시킴
 - 개인의 자본이득은 일반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기업의 자본이득은 기업 소득에 포함되어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킴
 - 부채 발행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나 주식 발행으로 지급한 배당금은 비용공제가 되지 않고, 배당금은 주주소득에 포함돼 이중과세되어 자본조달방법의 왜곡을 가져옴
 - 도관기업(pass-through)은 기업의 소득을 개인에게 배분한 후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기업형태를 선택해 기업 선택의 왜곡을 발생시킴
- 또한 특정 활동에만 조세혜택을 주는 제도는 자본 및 노동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기업의 사업활동을 왜곡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음
 - 1986년 많은 조세혜택제도를 폐지한 바 있으나 오일, 가스산업 및 보험업 등의 경우 여전히 기업활동을 왜곡시키는 비효율적인 조세혜택이 존재함
 - 또한, 조세혜택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로 인해 다른 세목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음
 - 재무부는 가속상각, 무형자산 비용처리 및 R&D세액공제, 국내생산활동 공제, 재고자산의 후입선출 회계처리, 주거용 주택 관련 조세혜택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명시함

미 국세청,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tax-policy/Documents/Report-Responsible-Business-Tax-Reform-2017.pdf>(검색일자: 2017. 2. 14.)

2)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제 및 법인세제 개정방향 검토

[조세동향 17-3호]

- 미국은 전세계소득과세(world wide tax system)체계로 미국 기업은 국내소득뿐 아니라 해외자회사 소득에도 과세되며, 유효법인세율³⁵⁾은 39.1%로 G7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국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이 큼
 - 주요 OECD 국가는 모두 원천지소득과세(territorial tax system)제도를 적용하여 국내소득에만 과세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G7의 유효법인세율은 캐나다 26.3%, 프랑스 34.4%, 독일 30.2%, 이탈리아 30.9%, 일본 34.6%, 영국 21%임
- 해외자회사 소득에는 피지배법인과세제도(CFC)가 적용되어 수동소득에는 바로 과세하는 반면 해외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미국 내 송금 전까지 과세가 이연됨
 - 원천지소득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도 CFC규정을 통해 해외자회사의 수동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어 미국기업이 해외소득을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한 해외자회사 소득은 원천지소득과세제도 도입 국가와 동일하게 과세됨
 - 그럼에도 원천지소득과세제도는 해외사업소득을 국내로 송금 시 과세하지 않아 국내로 해외사업소득을 가져올 강한 동기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음
- 한편, 미 의회 조세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또한 원천지소득 과세제도로 전환 시 전세계소득과세제도하에서의 세수보다 증가할 것이라 추정함
- 법인세를 소비세 형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소비세 형태로 변환 시 사업투자비용 전액 공제로 기업의 투자증대, 이자비용 공제제한으로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소비세 형태 과세 시 임금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임금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함
 - 임금비용의 공제를 허용하는 현금흐름 과세(cash flow tax)도 제안되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 현금흐름 과세로 전환 시 세수액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정세율에 대한 고

35) Effectiv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로 연방정부 법인세율, 추가과세(surcharges), 지방정부 법인세율을 포함하여 계산한 유효세율임

려가 필요함³⁶⁾

- McClelland(2016)은 국민계정통계를 기반으로 세율을 추정한 결과 26~29%의 세율이 세수액 균형을 이룰 것이라 봄

- 국제조세제도를 개정하는 데 있어 미국기업의 해외 이전과 다국적기업의 미국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목적 간 상충관계(trade-off)를 발생시키므로 법인세개정 시 정책 간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법인세 개편을 할 필요가 있음
- 상충관계는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이 희생되는 것을 말하며, 해외소득 비과세 시 미국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미국 내 이전효과가 반대로 나타남
 - 소득원천에 상관없이 국내·해외 소득에 동일하게 과세 시:
 - 미국기업이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할 동기는 줄여주나 해외소득에 국내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되므로 미국기업의 세부담은 외국 경쟁자에 비해 높아짐
 - 다국적기업의 경우 외국에 소재한 경쟁자와 달리 해외자회사의 세부담이 커지므로 해외로 이전할 유인을 제공
 - 해외소득에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시:
 - 미국기업이 이익 및 주요 영업활동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짐
 - 다국적기업이 미국으로 이전할 유인 제공

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조정세 도입 시사

[조세동향 17-2호]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23일 미 공화당의 법인세 개정안인 국경조정세(Destination Based Cash Flow Tax; DBCFT) 도입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냄³⁷⁾
- 2017년 1월 국경조정세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도입에 회의적이었던 반응과 달리 이번 발표에서는 미 공화당의 법인세 개정안은 기업의 미국 내 이전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언급함

36) 미 공화당이 제안한 국경조정제도 현금흐름 과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현금흐름 과세와의 차이점은 수입비용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

37) Wolters Kluwer, "Global Daily Tax News-Trump hints at support for border adjustment tax," 2017. 2. 28.

- 국경조정세는 2016년 6월 미 공화당의 세법개정안 ‘A better way’에서 제안되었으며,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출 시 매출액은 과세하지 않고, 수입 시 비용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³⁸⁾
 - 기존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소비지국 과세(destination based tax)과 현금흐름 과세(cash flow tax) 원칙을 적용해 포괄적으로 법인세제를 개정하는 방법임³⁹⁾
 -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최종 소비지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임
 - 현금흐름 과세원칙은 총현금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차감한 금액에 과세하는 것임
 - 기존 법인세 과세제도와의 차이는 1) 국내·외 소득에 과세(worldwide tax system)하던 것에서 국내소득에만 과세(territorial tax system)하며, 2)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던 것에서 총 현금유입액에서 유출액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함
 - 현금흐름 기반 과세원칙은 설비투자금액을 감가상각기간 상관없이 전액 비용공제할 수 있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⁴⁰⁾
 - 또한, 수출액에 면세하여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수입 시 비용불공제로 과세되는 금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국경세 조정을 함⁴¹⁾
- 국경조정세 도입과 함께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인하함으로써 생산시설의 미국 이전 및 이전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미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국경조정세 도입 시 수입기업은 인건비 외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세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에 위치한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낮아짐
- 국경조정세 도입과 관련하여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어 미 공화당 의장인 Brady는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경조정세 도입 필요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발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 발표함

38) 미국 공화당, “미국 공화당 세법개정안(A better way),” p. 27, 2016. 6. 24.,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the 2016 House Republican Tax Reform Plan,” 2016. 7., *Washington Post*, “My take on the Republican’s new, interesting corporate tax plan”, 2016. 12. 30.일자 기사.

39) Tax Foundation, “Understanding the House GOP’s Border Adjustment,” 2017. 2.

40) Tax Foundation, “The House GOP’s 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 Explained,” 2016. 6. 30.

41) Tax Policy Center, “Destination Based Cash Flow Tax,” 2016. 7. 14.

- 국경조정세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식료품 및 잡화, 옷, 가스 등 대부분 물품을 수입하고 있어 해당 물품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미국 수출업자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여 수출금액이 감소할 것을 우려함⁴²⁾

라. 2017년 주요 세법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7-4호]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26일 2017년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발표함⁴³⁾
 -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국 내 일자리창출, 경제성장, 중산층 가정의 세부담 경감, 세법규정 단순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개정사항에 대해 큰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5월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발표할 예정임
 - 또한, 이번 개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다수의 세법 공약을 담고 있음
- 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득세율 구조 단순화 및 세율 인하, 표준공제 확대, 일부 소득공제제도의 폐지,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둔 가족의 세액공제 확대를 제시함
 - 현행 10~39.3%의 7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10, 25, 35%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표준공제액을 기존보다 2배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인상 시 독신은 연소득이 12,700달러, 부부는 연소득이 25,400달러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음
 - 2017년 기준 표준공제액은 독신 6,350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12,700달러임
 -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며, 자녀 및 부양가족의 부양비용에

42)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Why the Proposed Border Tax Adjustment Is Unlikely to Promote U.S. Exports," 2017. 2. 24.
<http://libertystreeteconomics.newyorkfed.org/2017/02/why-the-proposed-border-tax-adjustment-is-unlikely-to-promote-us-exports.html>(검색일자: 2017. 2. 28.)

43) 미국 백악관, "Briefing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Steven Mnuchin and Director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Gary Cohn,"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4/26/briefing-secretary-treasury-steven-mnuchin-and-director-national>(검색일자: 2017. 4. 27.)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함

- 폐지 대상 소득공제항목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기부금 공제는 소득공제 폐지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함
 - 이외에 세법규정 단순화 목적으로 최저한세 폐지, 상속세 폐지를 제안함
 - 자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 투자소득의 세부담을 높이는 ‘오바마케어 세’ 폐지를 제안함
 - 오바마케어세는 오바마케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 투자자들의 순투자소득에 3.8%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목임⁴⁴⁾
- 법인세의 주요 개정안으로 법인세율 인하, 원천지소득 과세제도로 전환, 해외유보소득에 일회성 과세, 이자비용에 대한 조세혜택제도 폐지를 제안함
-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미국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에 대해 일회성 과세를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대선공약에서는 10%의 세율로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세율은 제시하지 않음
 - 현행 제도에서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소득(수동적 소득 제외)은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음
 - 현재 전세계소득 과세제도에서 원천지소득 과세제도(territorial system)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미국으로 송환이 가능하게 됨
 - 법인세율 인하, 과세체계 개정을 통해 해외유보소득을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자본에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44) IRS, “Topic 559-Net Investment Income Tax,” 2017. 4. 12., 고소득 투자자 기준은 부부합산 신고 시 순 투자 소득이 25만달러 이상, 부부별도 신고 시 125,000달러 이상, 개인신고의 경우 2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를 말함

2 캐나다

가. 국가별보고서 작성 양식 발표

[조세동향 17-2호]

- 캐나다 재무부는 2017년 2월 8일 국가별보고서 신고서식을 발표함⁴⁵⁾
 - 캐나다는 2016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보고서 신고를 의무화함
 - 제출기업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캐나다 소재 모법인임
 - 캐나다는 2016년 예산안을 통해 국가별보고서 규정을 제안하였으며, 국가별보고서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 최종 승인됨⁴⁶⁾
- 캐나다의 국가별보고서 신고서식은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서 제시한 템플릿을 준용함
 - 국가별보고서 양식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내용은 보고기업 정보 (Part 1), 다국적기업 계열사의 과세관할권 및 재무정보(Part 2), 계열사의 납세자번호 및 주요 사업활동 정보(Part 3)임
- 국가별보고서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500달러 또는 1,000달러(제출 요구받은 후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부과됨⁴⁷⁾

나. 조세회피 방지 권고안 도입계획 및 성과 발표

[조세동향 17-3호]

- 캐나다 재무장관은 2017년 2월 20일 재무의회(House of committee Standing Committee on

45)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E/pbg/tf/rc4649/rc4649-16e.pdf>(검색일자: 2017. 2. 24.)

4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캐나다 2016년 예산안 발표」, 2016. 4. 12.

47) 캐나다 국세청, “Explanatory Notes Relating to the Income Tax Act, Excise Tax Act, Excise Act, 2001 and Related Legislation,” <https://www.fin.gc.ca/drleg-apl/2016/ita-lir-0716-n-eng.asp>(검색일자: 2017. 2. 28.)

Finance)가 발표한 ‘캐나다 국세청 및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제안 사항’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 발표함⁴⁸⁾

- 캐나다 재무의회는 2016년 10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1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권고사항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자발적 공시시스템 정비, 국세청 행위규범 등의 검토와 파나마 페이퍼컴퍼니 세무조사 강화 및 조세조약 체결국과 세무조사 공조 등이 있음

〈표 1-1〉 캐나다 재무의회의 조세회피 방지 권고사항

번호	권고사항
1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income tax ruling) 검토: 적시성, 효과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2	의무보고규정 정비: 미국은 납세자뿐 아니라 조세전문가도 조세전략을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개정할 필요성 제기
3	자발적 공시제도 정비: 자발적 공시시스템에 의해 공시한 특정 거래가 소송대상인지 납세자와 협의로 해결할 문제인지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검토 필요
4	역외탈세거래 제보자 정보보안 강화
5	캐나다 국세청은 파나마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6	국내외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및 인적자원 증가
7	조세격차 ongoing basis로 추정
8	조세 복잡성,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재검토
9	캐나다 국세청과 검찰 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공조 강화
10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청 성과 통계자료 제공 계획 마련
11	92개의 조세조약과 22개의 정보교환 협정 검토
12	조세조약 체결국과 세무조사 공조 강화
13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 이행
14	국세청 행위규범(code of conduct) 검토

자료: 캐나다 의회(House of Commons Chambre des Communes Canada), “The Canad Revenue Agency,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Recommended Actions,” Chapter 4, 2016.10.

48) Tax notes, “Canada - Government Accepts Committee’s Recommendations on Tax Evasion,” 2017. 3. 6.,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2017/02/government_of_canadatablesitsresponsetothestandincommitteeonfin.html, 2017. 2. 23.(검색일자: 2017. 3. 23.)

- 캐나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역외탈세 관련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위한 부서 신설, 전문가위원회 구성, 탈세제보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거래 분석 작업 등을 진행해온⁴⁹⁾
- 캐나다는 납세순응 제고를 위해 자발적 공시제도(VDP),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Liaison Officer Initiative’, 의무보고 규정 등을 운영 중임
 - ‘Liaison Officer Initiative’는 국세청 담당자가 소규모사업자 사업장을 방문해 조세이슈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장부기장, 신고서 작성 실수 등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제도임⁵⁰⁾
- 캐나다 국세청은 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부서(Offshore Compliance Division)를 신설하여 대기업과 역외탈세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증원함
- 또한, 2016년 4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OCAC)’를 신설하였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국세청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함
- 2014년 1월 역외탈세거래 제보 프로그램(Offshore Tax Informant Program)을 신규 도입하여 해당 제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추가 징수를 위한 41,000개(12억캐나다달러 상당)의 국제금융거래 분석을 수행함
 - 역외납세정보 보고제도는 10만캐나다달러 이상의 세수증가를 가져오는 전자자금이체거래(Electronic Funds Transfer)를 제보한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매년 맨섬(Isle of Man), 저지(Jersey) 외 2개 국가와 관련된 거래와 1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수행함
- 캐나다 재무부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총 444.4백만캐나다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국세청은 13억캐나다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중임
 - 2016년 예산안에서 조세회피방지에 편성된 예산은 세무조사를 위한 추가 인력 및 전문가 선임, 신고서 검증활동 강화 등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

49) 캐나다 의회(House of Commons Chambre des Communes Canada), “The Canada Revenue Agency,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Recommended Actions,” Chapter 2, 2016. 10. 및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2017/02/government_of_canadatablesitsresponsetothestandingcommitteeonfin.html, 2017. 2. 23. 자료를 토대로 작성(검색일자: 2017. 3. 23.)

50)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gncy/cmplnc/thrntpln/lsnffcmntv/loi-qa-eng.html>(검색일자: 2017. 3. 23.)

다. 2017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7-4호]

- 캐나다 정부는 2017년 3월 22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함⁵¹⁾
 -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세법개정안은 큰 개정사항은 없으나 2016년에 이어 클린에너지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중산층 지원 확대, 과세형평성 제고, 조세허점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⁵²⁾
 - 이번 예산안은 2016-2017연도 약 23억캐나다달러, 2017~2018연도 약 28.5억캐나다달러 적자예산이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7년부터 적용됨

- 법인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클린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클린에너지 관련 장비의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반면 기름, 가스 등에 대한 가속상각률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함
 - 클린에너지 관련 장비는 Classes 43.1, 43.2 자산으로 분류하여 50%의 상각률로 가속상각을 허용함
 - 기름 및 천연가스(gas wells) 시추를 위한 비용은 탐사비용 대신 개발비용으로 분류하여 가속 감가상각률을 감소시킴
 - 탐사비용의 경우 감가상각 비율은 100%이며, 개발비용의 경우 감가상각 비율은 30%임

- 소득세의 경우 간병인(caregiver) 세액공제 제도 단순화 및 공제혜택 확대, 대학에 지급하는 직업훈련과정 비용도 교육비공제 허용 등을 제안함
 - 기존에 3개로 나뉘어서 운영하던 간병인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제한도금액 감소 기준을 완화함
 - 간병인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지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 지병이 있는 가족수당 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임

51) 캐나다 국세청, "Tax Measures: Supplementary Information," 2017. 3. 22.

52)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산층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고소득층 과세 강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 조세지원제도 폐지, 중산층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개정한바 있음(2016년 캐나다 세법개정안은 「주요국의 조세동향」 15-03호 참고.

- 기존에 운영 중이던 3개의 세액공제 제도는 각 제도별 자격요건, 공제금액, 공제한도 등 제도가 상이했으나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제도를 단순화시키고, 한도금액은 기존 3개의 제도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함
- 이 개정안은 2017년 4월 11일 승인됨
- 대학에 지급하는 직업훈련과정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함
 - 현행 규정에서는 직업훈련과정 비용은 교육비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이외에 장애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캐나다의 환경보호 목적으로 특정 토지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정비를 제안함
 - 간호사도 납세자의 장애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의료전문가 범위에 포함되므로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
 -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관련 비용의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함
 -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토지를 양수한 자가 캐나다 환경기후부서(ECCC)의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양도받은 공정가치액의 50%만큼 세액을 부과할 것을 제안함
-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의 경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량공유사업에도 부가가치세 부과, 담배 제조업자세 폐지 및 담배소비세 인상, 알코올 소비세 인상 및 세율에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함
 - 택시운송과 차량공유 모두 승객을 운송하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반면 차량공유 서비스는 운송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미부과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담배 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10.5%의 담배 제조업자세 폐지 및 담배소비세 인상을 제안함
 - 소수의 제조업자에게만 제조업자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제조업자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고,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 담배소비세를 인상함
 - 알코올 소비세율을 2% 인상하며,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알코올 소비세는 1980년대 이후로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캐나다 정부는 알

코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알코올 소비세율 인상을 제안함

- 조세제도상 허점이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자 파생상품의 시가평가 방법에 의한 과세처리 허용, 스트래들 거래 손익인식 이연을 제안함
 - 파생상품의 경우 시가평가(Mark-to-Market) 방법에 의한 과세처리를 허용함
 - 시가평가 방법을 선택할 경우 매년 파생상품 가격의 증감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파생상품의 스트래들(straddle) 거래를 통해 과세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반대 포지션에 있는 상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 이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손실공제를 이연하는 규정('stop-loss rule')의 도입을 제안함
- 캐나다 보험회사의 외국지사가 캐나다 거주자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캐나다에서 과세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캐나다 보험회사의 외국지사가 캐나다 거주자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있음
-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제도의 폐지 및 정비를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근무지 이동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제도 폐지, 전문직 종사자의 과세이연혜택 폐지를 제안함
 - 근무지 이동으로 새로 집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금액에 대해 비용공제를 허용했으나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되어 청구될 때 과세소득에 포함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세법상 진행 중인 업무의 경우 진행 정도에 따른 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서 발행 시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누림
- 또한,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⁵³⁾
 -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세액공제 폐지를 제안함
 - 예산안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금액 세액공제제도는 대중교통 이용량 증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아 폐지하는 것임

53) 캐나다 국세청, *BUILDING A STRONG MIDDLE CLASS - Budget 2017*, p. 207.

- 기업이 직장어린이집(child care space) 설치 또는 확장 시 설치비용의 25%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 기업들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증가하지 않아, 조세지원제도 대신 현재 있는 직장 어린이집의 시설을 개선하고, 여유시설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편성함
- 외국인이 여행패키지 상품을 통해 캐나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외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여행사는 캐나다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복잡하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며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라. 개인소득세의 Tax Assured, Tax Gap을 추정한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7-6호]

- 캐나다는 2017년 6월 7일 소득세의 Tax Assured⁵⁴⁾와 Tax Gap 추정을 통해 소득세의 납세순응 정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⁵⁵⁾
 - 2016년 6월 부가가치세 Tax Gap 추정을 시작으로 다른 세목의 Tax Gap을 추정한 보고서의 발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보고서는 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제도에 대한 소개와 Tax Assured, Tax Gap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캐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채널 확대, 원천징수 및 분할납부제도 운영, 제3자 보고제도 운영,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납세자 행동예측 등의 활동을 해옴
 - 신고서 미제출, 지연 제출의 경우 납세의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콜센터, 서면 등을 통해 납세의무에 대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제3자 정보 보고 및 원천징수제도로 소득 과소신고 유인을 줄일 수 있으나 자영업

54) OECD가 제안한 개념으로 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하여 미신고, 과소신고 등 납세 불확실성이 낮다고 보는 과세 표준 비중을 말함

55) 캐나다 재무부, http://www.cra-arc.gc.ca/gncy/tx-gp/fclrlprsnlncmtx-eng.html#_Toc482973746(검색일자: 2017. 6. 22.)

자의 경우 해당 제도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소득을 무신고, 과소신고할 유인이 존재함

- 제3자 정보 보고의 예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서(T4) 또는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한 투자소득 지급내역서(T5)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있음
- 고소득자의 경우 공격적 조세회피로 과소신고할 유인이 커 캐나다 국세청은 최근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납세자의 행동을 예측분석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바 있음
- Tax Assured 분석 결과 2014년 기준 신고소득의 Tax Assured는 86%, 공제금액은 74%, 세액공제액은 83%인 것으로 나타남
 - 즉, 캐나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과세소득 및 공제금액을 정확히 신고했다고 확신하는 수준이 소득의 경우 86%, 공제금액은 74%, 세액공제는 83%라는 것임
 - 국세청이 납세자가 올바르게 신고했다고 확신하는 소득(Assured Income)의 대부분은 제3자 정보 활용이 가능한 근로소득, 연금소득, 고용보험소득이 차지하며, 미확신소득(Non-Assured Income)은 배당소득, 자영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함
 - 공제금액 중 퇴직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기본세액공제 등 제3자 정보 활용이 가능한 경우 또한 국세청이 신고금액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정도(Tax Assured)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Tax Gap 분석 결과 2014년 기준 총 Tax Gap은 2.2억캐나다달러로 총개인소득세수의 1.6%를 차지하며, 지하경제⁵⁶⁾에서 발생하는 Tax Gap은 6.5억캐나다달러로 총개인소득세수의 4.8%, GDP의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하경제에서 발생하는 Tax Gap은 주로 공사활동으로 얻는 소득, 팁 이외에 차량 수리, 보모 소득, 집 수리비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56) 보고서에서는 보고되지 않거나 과소보고된 소득을 지하경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

II

유럽

1 그리스

가. 2016년 조세피난처 국가 발표

[조세동향 17-3회]

- 그리스는 2017년 2월 28일 2016년 조세행정에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국가(non-cooperative states) 리스트를 발표함⁵⁷⁾
 - 그리스는 주기적으로 특혜가 과도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조세행정에 비협조적인 국가로 나누어 조세피난처 국가를 발표하고 있음
 - 이번 발표에서는 조세행정에 비협조적인 국가 리스트를 발표한 것이며, 특혜가 과도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015년에 업데이트하여 발표한 바 있음
 - 조세행정에 비협조적인 국가는 비EU 회원국이고, 조세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그리스와 협정을 맺지 않거나 12개 이상의 국가와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를 말함
- 그리스 납세자가 조세피난처로 선정된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 거래 시 비용의 손금불산입, CFC소득의 과세,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함
 - 단, 조세피난처로 선정된 국가에 지급한 비용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이전가격 원칙에 따라 지급한 비용임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공제를 허용함
- 이번에 발표한 조세행정에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국가는 총 28개국이고 2014년에 발

57) Tax notes, "Greece Ministry of Finance Lists Noncooperative States," 2017. 3. 6.

표된 국가와 비교해 5개 국가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으며, 1개 국가가 블랙리스트 국가에 추가됨

- 추가된 국가는 바베이도스(Barbados)이며, 제외된 국가는 저지(Jersey), 모리셔스(Mauritius), 네덜란드령 안틸리스(Netherlands Antilles), 세이셸(Seychelles), 싱가포르임

〈표 11-1〉 그리스의 조세행정 비협조 국가 리스트(2016년)

국가	영문명	국가	영문명
안도라	Andorra	말레이시아	Malaysia
앤티가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마셜제도	Machall Island
바하마	the Bahamas	모나코	Monaco
바레인	Bahrain	나우루	Nauru
바베이도스	Barbados	니우	Niue
부르나이	Brunei	파나마	Panama
쿡제도	the Cook Islands	필리핀	the Philippines
도미니카	Dominica	세인트키츠네비스	St. Kitts and Nevis
그레나다	Grenada	세인트루시아	St. Lucia
과테말라	Guatemala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홍콩	Hong Kong	사모아	Samoa
레바논	Lebanon	우루과이	Uruguay
리비아	Liberia	미국령 버진제도	the U.S. Virgin Islands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바나우투	Vanuatu.
마케도니아	Macedonia		

나.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법개정안 승인

[조세동향 17-6호]

- 그리스 의회는 2017년 5월 19일 소득세법 개정안을⁵⁸⁾, 2017년 6월 7일 조세절차법,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의 일부를 수정하는 세법개정안을 승인함⁵⁹⁾

58) IBFD News, "Greece - Bill amending Income Tax Code - gazetted," 2017. 5. 22.

59) IBFD News, "Draft bill amending Income Tax Code, Tax Procedural Code, taxation of immovable property and VAT provisions - gazetted," 2017. 6. 12.

- 법인세율 인하안을 제외한 모든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인세율 인하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세액공제한도 축소,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 사회보장세를 추가과세하는 소득기준금액 인상, 법인세율 인하가 있음
 - 기존의 기본 세액공제 금액을 납세자 지위별로 각각 650유로씩 감소시킴
 - 따라서, 개정 이후 세액공제 금액은 독신의 경우 1,200유로, 자녀가 1명 있는 납세자는 1,300유로, 2명의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1,350유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1,450유로임
 - 단, 독신 납세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2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기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연간소득이 2만유로인 경우 적용되던 소득세 최저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함
 - 사회보장세를 추가과세하는 소득기준을 기존 1만 2,000유로에서 3만유로로 인상함
 - 따라서, 연간 소득이 3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2~10% 세율로 사회보장세가 추가과세됨
 - 금융회사(credit institutions)를 제외한 모든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9%에서 26%로 인하함
 - 이외에 기타 개정사항으로 의료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의 1.5%를 공제하던 제도도 2018년부터 폐지하도록 개정함
- 이외에 조세절차법, 상속세법,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으로 국세청장의 자료요구권 강화, 주거주지 상속 시 상속세 면제, 농산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도록 개정함
 - 조세절차법 중 국세청장이 특정 납세자에게 경영활동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결정권한을 갖도록 개정함
 - 상속세의 경우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주거주지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의 경우 난민에게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물품과 농부를 대신해 파는 농산물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함

다. EU의 자동정보교환지침 시행안 승인

[조세동향 17-6호]

- 그리스는 2017년 5월 26일 이전가격협약(APA) 및 조세예규(advance tax ruling) 정보를 자동 교환하도록 하는 EU 지침(EU 2015/2376) 시행안⁶⁰⁾을 승인함⁶¹⁾
 - 2017년 1월 이후 발행된 조세예규 및 이전가격 사전합의 정보는 EU 회원국과 자동적으로 교환하게 됨
 - 2017년 1월 이전에 발행된 정보는 2012년 정보부터 소급적으로 교환 가능함
- 또한, 그리스는 EU 지침 중 연간 매출액이 4천만유로 미만인 소규모기업에 대해 조세예규 및 이전가격협약의 자동정보교환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은 도입하지 않음

2 네덜란드

가. 비상장회사의 주주정보 등록시스템 도입 제안

[조세동향 17-2호]

- 네덜란드 하원은 2017년 1월 19일 비상장 유한회사(PLLC⁶²⁾와 비상장 주식회사(non-listed public limited companies)의 주주명, 주식수 정보를 중앙정보시스템(Central Register Shareholder; CRS)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을 제안함⁶³⁾
 - 주주정보를 시스템화하여 과세당국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접근을 허용해 금융거래 위반을 적발하는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임

60) IBFD News, "Greece; OECD; European Union - Draft bill on implementation of Directive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respect to advance tax rulings - submitted to parliament," 2017. 5. 29.

61) IBFD News, "Greece; OECD; European Union - Draft bill on implementation of Directive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respect to advance tax rulings - gazetted," 2017. 6. 13.

62)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약어임

63) KPMG, <https://meijburg.com/news/bill-on-a-central-register-of-shareholders>, 2017. 2. 2.(검색일자: 2017. 2. 24.)

- 감사기관이 조세회피 등 금융거래 위반으로 유한회사, 비상장회사 감사 시 주주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⁶⁴⁾

- 공증인(notary)이 주주정보 등록 의무를 가지며, 비상장 유한회사,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거래 시 발행한 공증증서 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보 시스템에 주주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 주식관련 거래로 주식 발행, 양도 또는 발행된 주식에 저당권(pledge) 설정 등이 있으며 해당 거래 시 공증인이 무조건(mandatory) 개입하도록 규정함

나. 최종 수익적 소유자 등록 법안 관련 의견수렴 개시

[조세동향 17-4호]

- 네덜란드 재정부는 2017년 3월 31일 최종 수익적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의무등록 법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을 개시함⁶⁵⁾
 - 의견수렴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의견수렴 기한은 2017년 4월 28일임
 - 이에 앞서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6년 2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최종 수익적 소유자 등록 의무화 법안은 관련 EU 지침에 따른 조치로 최종 수익적 소유자는 직·간접적으로 네덜란드 단체 지분의 2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개인으로 함⁶⁶⁾
 - EU의 제4차 자금세탁방지지침⁶⁷⁾에 따르면 모든 EU 회원국은 2017년 6월까지 각 국가에 소재한 단체의 최종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의무등록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네덜란드 재무부의 해당 법안은 2007년 상업등기법(2007 Commercial Register Act)에 따라 등기된 단체에 대하여 최종 수익적 소유자 등록의무를 부여함

64) 네덜란드 정부, "Dutch Central Shareholders Register Chamber of Commerce," <https://www.government.nl/topics/taxation-and-businesses/news/2013/06/28/dutch-central-shareholders-register-chamber-of-commerce>, 2013. 6. 28.(검색일자: 2017. 2. 24.)

65) Netherlands - Consultation on 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register launched(04 Apr. 2017), News IBFD.

66) 『주요국의 조세동향』 16-03 네덜란드 참조.

67) the Fourth Europea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다.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 체결

[조세동향 17-5호]

- 네덜란드와 미국은 2017년 4월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을 위한 협정⁶⁸⁾을 체결함⁶⁹⁾
 - 미국이 현재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OECD의 다자간협약(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 간 조세조약에 기반하여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을 체결함
 - 동 협정은 네덜란드와 미국 간의 조세조약 제30조 정보교환과 행정지원에 의거하여 체결됨
- 동 협정은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최초 교환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보고서의 최초 교환은 2016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 동 협정은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권고에 따라 교환된 국가별보고서의 사용을 규제함
 - 교환된 국가별보고서는 이전가격 관련 사전 위험평가 목적으로 과세당국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양국 과세당국은 국가별보고서만을 근거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소득조정을 하여서는 안 됨

68) Netherlands-United States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 2017.

69) Netherlands; United States - Arrangement on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 between Netherlands and United States signed - details(17 May 2017), News IBFD.

3 노르웨이

가. 원천징수세 경정청구 기한 연장

[조세동향 17-3호]

- 2017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의 경정청구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⁷⁰⁾
 - 원천징수 대상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2년 2월 14일 지급한 배당금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세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음
- 노르웨이 국내법상 이자소득이나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없으며, 배당과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만 존재함⁷¹⁾
 - 국내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임⁷²⁾
 -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과 사용료소득 모두 원천징수세율이 0%이므로 원천징수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후 거주자의 경우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가 면제됨⁷³⁾

70) E&Y, "Norway: New statute of limitations, withholding tax refund claims," 2017. 3. 14.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3/tnf-norway-statute-of-limitations-refunds-withholding-tax.html>(검색일자: 2017. 3. 16.)

71)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2016, p.1067. 및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 - 17*, 2016, p. 1035.

72)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2016, p.1067. 및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 - 17*, 2016, p. 1035.

73)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2016, p.1067. 및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 - 17*, 2016, p. 1035.

나. 내국법인 판정에 관한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7-4호]

- 2017년 3월 16일 노르웨이 재무부는 내국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이중 거주자가 된 내국법인의 거주국 판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함⁷⁴⁾
 - 2017년 6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공개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법안이 확정될 경우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임
- 개정안에서는 노르웨이에 설립된 법인뿐만 아니라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법인도 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내국법인의 범위를 확대함
 - 실질적 관리장소란 일상적인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함
 - OECD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해석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임
 - 현행 세법에는 내국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노르웨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 내국법인으로 간주함
 - 그 밖에 내국법인 판정 시 이사회의 기능,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소재와 권한이 행사되는 장소도 고려함
- 또한 이중거주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이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로 해석될 경우 해당 법인을 노르웨이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규정을 소개함
 - 이 경우 노르웨이 정부는 해당 법인이 상대 체약국 거주자에 해당된 날에 노르웨이에서 출국한 것으로 간주함
 - 법인은 노르웨이에서 출국한 날을 기점으로 출국 전까지 노르웨이에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24%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출국세를 납부해야 함

74) IBFD, "Norway: Hearing on new corporate residency rules," 2017. 3. 20.,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highlight/data/tns/docs/html/tns_2017-03-20_no_1.html&q=residency+residencies&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7. 4. 18.) 및 E&Y, "Norwegian Government proposes amendments to domestic tax residency rule," 2017. 3. 21.,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norwegian-government-proposes-amendments-to-domestic-tax-residency-rule>(검색일자: 2017. 4. 18.)

다. 이자공제 제한 규정에 관한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7-5호]

- 2017년 5월 4일 노르웨이 재무부는 BEPS Action 4에서 권고한 내용을 수렴하여 이자 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함⁷⁵⁾
 - 의견수렴은 2017년 8월 3일까지 진행할 예정임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법인세 이자 감가 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25%⁷⁶⁾를 초과한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함
 - 노르웨이는 2014년부터 손익기준의 이자공제제한 규정을 갖추고 순이자비용이 500만크로네 이상인 경우 그룹 내 관계기업 간 이자비용에 대해 세법상 EBITDA의 25%를 한도로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⁷⁷⁾
 - 개정안은 공제제한 대상 이자비용을 현행 기준보다 확대하여 연결그룹 내 기업 간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뿐만 아니라 외부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이자공제 제한 대상에 포함함
 - 또한, 이자공제 제한 규정의 면세점을 기존 500만크로네 이상에서 1천만크로네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이자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 중 공제되지 않은 이자비용은 이월되어 향후 10년 동안 공제됨
 - 현행 이자공제 제한규정도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함

75) E&Y, "Norway proposes changes to interest deduction limitation rules,"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norway-proposes-changes-to-interest-deduction-limitation-rules>(검색일자: 2017. 5. 29.)

76) 2016년 예산 및 수정 예산에서 Action 4를 수용하여 제3자 이자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한도를 EBIT의 40%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음(출처: BEPS 대응지원센터, BEPS 액션별 동향, http://www.kipf.re.kr/Beps/sub/sub4detail.aspx?Serial_no=190&typeno=1&Search=undefined&SearchWord=&page=1(검색일자: 2017. 5. 29.)(재인용: E&Y, "Norwegian Government issues revised Fiscal Budget for 2016 and proposal for implementation of CbC reporting", Global Tax Alert, 13 May 2016, p.2.,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norwegian-government-issues-revised-fiscal-budget-for-2016-and-proposal-for-cbc-reporting-implementation>))

77) BEPS 대응지원센터, BEPS 액션별 동향,

http://www.kipf.re.kr/Beps/sub/sub4detail.aspx?Serial_no=190&typeno=1&Search=undefined&SearchWord=&page=1(검색일자: 2017. 5. 29.)(재인용: E. Furuseth, Norway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 한편, 노르웨이 재무부는 소득이전과 관련 없는 이자비용을 이자공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자본면제규정(Equity Escape Rule)의 도입을 제안함
- 기업의 자본비율이나 연결 기업그룹에 속한 노르웨이 기업그룹의 자본비율이 전세계 기업그룹의 자본비율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면 자본면제규정의 적용대상임

라.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신고의무 부여

[조세동향 17-6호]

- 2017년부터 노르웨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은 노르웨이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⁷⁸⁾
 -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 확대는 201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노르웨이 조세행정법(Norwegian Tax Administration Act)⁷⁹⁾에서 규정함
 - 이 법은 2016년부터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기한은 2017년 5월 31일이었음
- 양자 간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노르웨이에서 조세를 감면받았더라도, 노르웨이 국내세법에 따를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면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도 법인세 신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신고할 세금이 없으면 모든 거래금액을 0으로 신고하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노르웨이에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 52,450크로네(약 6,244달러)를 한도로 일일 525크로네의 가산세가 부과됨

78) 노르웨이 정부, Lov om skatteforvaltning(skatteforvaltningsloven), <https://lovdata.no/dokument/NL/lov/2016-05-27-14?q=skatteforvaltningsloven>(검색일자: 2017. 6. 23.) 및 E&Y, "Norway requires foreign companies without a Norwegian PE to file tax returns," <http://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norway-requires-foreign-companies-without-a-norwegian.aspx>, (검색일자: 2017. 6. 23.)

79) <https://lovdata.no/dokument/NL/lov/2016-05-27-14?q=skatteforvaltningsloven>

4 덴마크 - 조세회피 방지 부서의 신규 설치 합의

[조세동향 17-6호]

- 2017년 5월 17일 덴마크 의회는 조세정보의 교환과 조세회피 방지를 담당하는 신규 부서를 설치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함⁸⁰⁾
 - 신규 조직은 국세청 내부에 설치할 예정임
 - 부서 설치에 100백만크로네의 예산을, 운영에 연간 약 25백만크로네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임
- 해당 부서는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고,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의회는 조세정보의 교환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국세청에 새로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또한, 의회는 기업에 조세회피를 자문하는 자에게 조세회피 전략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5 독일

가. 연결그룹 간 로열티 지급 시 비용공제 제한하는 규정 초안 발표

[조세동향 17-1호]

- 독일 재무부는 2016년 12월 20일 그룹 간 로열티 지급 시 특정 국가에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액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의 초안을 발표함⁸¹⁾
 - 이 규정은 OECD에서 BEPS Action 5 권고사항을 2021년까지 적용하도록 권고함에

80) Tax Notes International, "Parliament Votes Unanimously to Establish Department to Fight Avoidance," Volume 86, Number 8, 2017. 5. 22.

81) Taxnotes, "Germany - Proposal would disallow deductions involving harmful IP boxes," 2017. 1. 2.

따라 Action 5의 권고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로열티 소득을 지급하여 독일에서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임

- 이번 개정을 통해 3천만유로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지급하는 지급액부터 적용할 예정임
-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국가는 BEPS Action 5의 권고사항인 연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중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이 25% 미만인 국가임
 - 실효세율은 세액감면, 공제, 손실상계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이후의 세율임
- 비용공제 허용 금액은 로열티 지급액에서 실효세율이 25%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금액임
 - 비용공제 허용금액 = 로열티 지급액 × (실효세율/25%)

나. 연결그룹 간 로열티 지급 시 비용공제 제한하는 규정 승인

[조세동향 17-5호]

- 독일은 2017년 4월 27일 연결그룹 간 로열티 지급 시 로열티 지급액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최종 승인함⁸²⁾
 - 연결그룹 간 로열티 지급액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 입법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입법안을 승인한 내용임
 -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지급되는 로열티 지급액부터 적용됨
- 비용공제가 제한되는 계열사는 OECD BEPS Action 5의 연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실효세율이 25% 미만인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비용공제를 제한해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⁸³⁾
 - 비용공제 허용금액은 ‘로열티 지급액 × (실효세율/25%)’이며,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비용공제 허용 금액이 적어짐

82) Tax Notes, “Bundestag Votes to Limit Patent Box Use,” Volume 86, Number 6, 2017. 5. 8.

8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17-1호, 2017. 2.

6 룩셈부르크 - 예산안 등 법안 확정

[조세동향 17-1호]

- 룩셈부르크 정부가 2016년 10월 발표한 예산안⁸⁴⁾이 2016년 12월 22일 의회를 통과함⁸⁵⁾
 - BEPS Action 8-10 관련 이전가격 규정, 비영리단체에 대한 부동산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법안이 확정됨
 - 그 밖에 2016년 9월 발표한 국가별보고서 개정 법안이 확정됨
-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관계회사 사이에 무형자산이나 위험을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적 활동을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BEPS Action 8-10 권고사항을 기존 이전가격 관련 규정에 반영함
 - 정상가격 관련 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전가격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
 - 관계회사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제3자 사이의 거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관계회사 사이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법에 추가함
 - 특히 비교가능분석(comparability analysis)을 강조함
 - 비교가능분석에서는 쟁점이 되는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정확하게 매치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경제적 조건과 환경을 고려함
 - 중요한 경제적 조건과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조건, 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하는 기능(사용되는 자산과 부담 위험을 고려), 제공한 자산이나 서비스의 특징, 각 당사자가 참여한 시장과 각 당사자의 경제적 환경과 각 당사자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확인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27일 룩셈부르크 국세청은 2017년 1월 1일부터 룩셈부르크에서 그룹 간 재무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따라야 하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84)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0-12_lu_1.html&WT.z_nav=crosslinks (검색일자: 2017. 1. 16.)

85)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2-22_lu_1.html&WT.z_nav=crosslinks&hash=tns_2016-12-22_lu_1 (검색일자: 2017. 1. 16.)

을 공시⁸⁶⁾함

- 동 가이드라인에는 그룹 관계회사 간 재무활동의 정의, 관계회사의 정의, 비교가능 분석과 기능분석을 포함한 내부 재무활동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원칙, 위험분석, 룩셈부르크의 실질우선 원칙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자본과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하는 EU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세와 조세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존 룩셈부르크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던 부동산세 면세 규정을 EU 역내 소재한 비영리단체에도 적용함
 - 룩셈부르크로 이주하였으나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룩셈부르크에 세금 납부를 위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 대상 비거주자에서 EU 회원국 거주자를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상 자발적 등록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연 매출액 25,000유로 미만인 기업에서 30,000유로 미만인 기업으로 개정함
 - 연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강제적 등록의무가 없고 자발적 등록의무만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발적 등록이 가능한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⁸⁷⁾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그 밖에 2016년 12월 13일 의회는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개정안⁸⁸⁾을 확정함⁸⁹⁾
 - 확정된 국가별보고서 규정은 개정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지연신고나 무신고 가산세⁹⁰⁾ 대상에 룩셈부르크 회사가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됨⁹¹⁾

86)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2-28_lu_1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7. 1. 16.)

87) <http://www.guichet.public.lu/entreprises/en/fiscalite/tva/inscriptions-declarations/inscription-tva/index.html> (검색일자: 2017. 1. 25.)

8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룩셈부르크-국가별보고서-법률초안-제출/524475(검색일자: 2017. 1. 16.)

89)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12-21_lu_1.html&WT.z_nav=crosslinks&hash=tns_2016-12-21_lu_1(검색일자: 2017. 1. 16.)

90) 지연신고나 무신고의 경우 25만유로까지 가산세가 부과됨

7 리투아니아 -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안 발표

[조세동향 17-6회]

- 2017년 5월 31일 리투아니아 재무부는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령을 발표함⁹²⁾
 - 리투아니아는 BEPS Action 13과 EU Directive 2016/881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신고 제도를 도입함
- 법안에서는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직전연도 연결 기업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720백만유로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리투아니아 모회사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의 작성 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리투아니아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나, 신고 첫째 사업연도인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기한은 2018년 3월 31일로 정함
- 다만,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과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아직 발표하지 않음

8 벨기에

가. 2017년 예산안 최종 승인

[조세동향 17-1회]

- 벨기에 정부는 2016년 12월 29일 2017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조세회피 방지

91)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luxembourg-s-parliament-adopts-draft-law-on-country-by-country-reporting>(검색일자: 2017. 1. 16.)

92) E&Y, "The Latest on BEPS - 19 June 2017-Lithuania,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19-june-2017>(검색일자: 2017. 6. 20.)

목적의 세법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⁹³⁾

- 2017년 예산안은 필요경비액의 70%는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20%는 세제조치를 통해, 10%는 다른 소득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 언급함⁹⁴⁾
 - 직접세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상, 주식내부거래 시 배당소득 과세, 종업원의 업무용차량 사적이용 시 비용 불공제 비율을 인상하는 반면 투기세(speculation tax)의 도입은 철회함
 - 간접세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주식거래세 부과대상 확대가 있음
 - 해당 세법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7%에서 30%로 인상함
 - 2016년에 25%에서 27%로 인상하였으며, 2017년에 다시 30%로 인상하는 것임
 -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 주식양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배당가능 소득으로 보아 주주에게 지급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자본이득은 기업이 구입한 주식가액과 주식공정가치의 차액이며, 개인이 공정가치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회피가 가능함
 - 따라서, 주식 공정가치와 기업이 구입한 주식가액 차이를 배당가능소득으로 보아 향후 주주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함
 - 종업원이 회사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적으로 이용한 차량비용의 비용불공제 비율을 현행 17%에서 40%로 인상함
 - 종업원이 사적으로 이용한 회사용 차량비용은 현물급여(benefits in kinds)로 보아 종업원의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기업은 사적으로 이용한 회사용 차량비용을 공제함 - 차량비용은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유류비용, 통행료, 주차료 등을 포함함
 -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통해 증권거래 시에도 증권거래세(stock exchange tax)를 부과하며, 증권거래세 과세상한액을 인상함

93) IBFD, "Belgium - Program law containing various tax measures - gazetted," 2016. 12. 29.

94) Taxnotes, "Belgium - Government Reaches Agreement on Budget, Pushes Tax Obstacles Aside," 2016. 10. 24., 벨기에 예산안은 2016년 10월 15일 처음 발표하였으며 의회승인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 29일 최종 승인된 것임

- 현재까지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통해 증권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었음
- 외국은행, 중개인에게 보고의무를 지우는 것에 한계가 있어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 금액을 자가측정하고 납부해야 함
 -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경우 주식가액 1,000유로당 2.7유로를 부과하며, 채권의 경우 채권금액 1,000유로당 0.9유로, 기타 투자펀드의 경우 1,000유로당 10유로를 부과함⁹⁵⁾
- 증권거래세 과세상한액은 주식의 경우 800유로에서 1,600유로로 인상하며, 채권의 경우 650유로에서 1,300유로로, 기타 투자펀드의 경우 2,000유로에서 4,000유로로 인상함
- 투기거래로 발생하는 특정 단기자본이득에 33%의 세율로 과세하는 투기세를 폐지함
 - 투기세는 2016년 신규 도입되었으며, 상장주식, 옵션, 워런트, 기타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사업활동 외 목적으로 구매하고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었으나 2017년부터 이를 폐지함
 - 현행 제도에서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16.5%의 세율로 과세함

나. 크라우드 펀딩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금액 유지 발표

[조세동향 17-5호]

- 벨기에 재무부는 2017년 4월 4일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현행과 동일하게 1만 5,000유로로 유지하는 시행 규칙을 발표함⁹⁶⁾
 - 벨기에는 2015년 8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에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1만 5,000유로까지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투자자가 적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시 이자소득의 비과세를 적용받음

95) IBFD, "Belgium - 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 14.2.2, 2016. 9. 1.

96) IBFD News, "Belgium-Circular on tax exemptio," 2017. 4. 21.

- 적격기업은 설립된 지 4년 미만이며, 종업원, 매출액, 재무제표 잔액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임
 - 연간 평균 종업원 수는 50명 미만이어야 함
 - 연간 총매출액(VAT 제외)이 730만유로 미만이어야 함
 - 당해연도 재무제표 잔액이 365만유로 미만이어야 함
- 이자수익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비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9 스웨덴

가. 화학세 도입

[조세동향 17-2회]

- 스웨덴 정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화학세(chemical tax)를 부과함⁹⁷⁾
 - 2016년 9월 발표한 예산안 중 소비세 도입안에 포함⁹⁸⁾되었던 내용임
 - 화학세를 도입할 경우 2017년 1.08십억스웨덴달러, 2018년 2.17십억스웨덴 달러, 2019년과 2020년 각각 1.98십억스웨덴달러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⁹⁹⁾함
 - 전자제품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유해 화학물질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도입됨
- 화학세는 특정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제품 종류에 따라 제품 1킬로그램당 8스웨덴달러나 120스웨덴달러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함

97) E&Y, "Sweden proposes excise duty on certain electronic products,"(검색일자: 2017. 2. 17.)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weden-proposes-excise-duty-on-certain-electronic-products>)

98) 『조세동향』 2016-10-1호, 「스웨덴-2017년 예산안 발표」, 2016. 10.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스웨덴-2017년-예산안-발표/524537)

99) 스웨덴 정부, <http://www.government.se/4a6f9f/globalassets/government/dokument/finansdepartementet/pdf/bp-17/reform-and-financing-table>(검색일자: 2017. 2. 23.)

- 화학세의 부과대상 제품은 오븐,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전화기, 컴퓨터와 게임기 등 스웨덴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유럽에서 사용하는 국제관세코드(CN codes) 중 40개에 해당하는 품목임
- 화학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임
- 스웨덴 거주자가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화학세가 부과되지 않음
- 서울의 경우 주방 제품은 킬로그램당 8스웨덴달러(약 1달러)이고 그 밖의 전자제품은 킬로그램당 120스웨덴달러(약 14달러)이며, 제품당 화학세 최대한도를 320스웨덴달러(약 36달러)로 규정함
 - 다만, 브롬, 염소나 인 첨가물(additive compounds)을 포함하지 않은 전자제품에 대한 화학세는 50%까지 감면되며, 전술한 첨가물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는(reactive) 브롬과 염소 화학물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화학세가 75%까지 감면됨

나. 금융활동세 개정안 취소

[조세동향 17-3호]

- 2017년 2월 24일 스웨덴 정부는 2016년 11월 제안한¹⁰⁰⁾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y tax)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취소하기로 결정함¹⁰¹⁾
 - 금융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조세혜택을 받고 있어 금융활동에 법인세 외에 법인세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과세할 예정이었음¹⁰²⁾
 - 집권 여당은 금융활동세를 취소하는 대신 은행 서비스(banking services) 과세를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100) 『조세동향』 16-11-2호,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스웨덴-금융활동세-도입-제안/524622(검색일자: 2017. 3. 21.)

101) KPMG, "Sweden: Proposed tax on financial activity is withdrawn," 2017. 2. 27.,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2/tnf-sweden-proposed-tax-on-financial-activity-is-withdrawn.html>(검색일자: 2017. 3. 16.)

102) 『조세동향』 16-11-2호,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스웨덴-금융활동세-도입-제안/524622(검색일자: 2017. 3. 21.)

- 금융활동세가 연금과 핀테크¹⁰³⁾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림

다. 국가별보고서 등에 관한 규정 최종 승인

[조세동향 17-3회]

- 스웨덴 정부는 2017년 3월 3일 국가별보고서 규정을 최종 승인함¹⁰⁴⁾
 - 승인된 규정은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며,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개정안에서는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부터로 정하였으나 승인된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유효함
- 2016년 4월 스웨덴 국세청¹⁰⁵⁾은 재무부에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함¹⁰⁶⁾
-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제출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스웨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 내 기업이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해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이전가격문서 제출 의무를 배제함
 - 중소기업이란 종업원 수 250명 미만, 매출액 450백만크로나(약 55.4백만달러) 미만 이거나 자산이 400백만크로나(약 49.2백만달러) 미만인 경우임¹⁰⁷⁾
 - 소액거래에 대해 로컬파일 일부 내용의 제출을 면제함
 - 소액거래란 거래상대방과 총거래가 5백만크로나(약 61만 5천달러) 미만인 경우임
 - 스웨덴 법인의 해외 고정사업장,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과 파트너십의 해외

103)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FinTech라는 신조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산업의 변화를 의미함

104)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13-march-2017>, 2017. 3. 13.

105) 2015년 스웨덴 재무부는 국세청에 국가별보고서 등(OECD BEPS Action13)과 관련된 국내에 관한 개정 권한을 부여함

106) E&Y, "Sweden proposes implementation of OECD standard for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automatic exchange of CbC reports," 2016. 5. 12.,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weden-proposes-implementation-of-oecd-standard-for-transfer-pricing-documentation-and-automatic-exchange-of-cbc-reports>(검색일자: 2017. 3. 21.)

107) EC의 중소기업 정의에 따름

고정사업장, 해외 법인의 스웨덴 고정사업장을 이전가격문서화 제출 의무대상에 포함함

- 국가별보고서는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70억크로나(약 861백만달러) 이상인 스웨덴 소재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제출함
- 최종 모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유효하므로 다국적기업은 최초 2017년 12월 31일부터 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될 것임

10 스위스

가. 법인세율 인하안 국민투표 부결

[조세동향 17-2호]

- 스위스 정부는 칸톤¹⁰⁸⁾별로 다국적기업에 제공하는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칸톤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59.1%의 반대표를 얻어 부결됨¹⁰⁹⁾
- EU와 OECD는 칸톤별 세제 특혜로 다국적기업이 스위스에 지주회사만 두고 영업활동은 다른 국가에서 하는 방법으로 다른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들어 스위스의 세제개혁을 요구함
 - 칸톤은 연방정부의 법체계 안에서 독자적으로 법인세법 개정이 가능하며, 칸톤별로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세특례를 제공함
- 이번 개정안은 2016년 6월 17일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번 투표의 부결로 칸톤별 조세특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EU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¹¹⁰⁾

108) 스위스의 지방정부를 말하며 26개의 칸톤이 있음

109) IBFD, "Switzerland - Voters reject Corporate Tax Reform III," 2017. 2. 13.

110)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2/tnf-switzerland-voters-reject-corporate-tax-reform.html>
(검색일자: 2017. 2. 23.)

- 스위스 연방정부 및 칸톤은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
- 스위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칸톤의 유해조세제도에 OECD BEPS의 권고사항을 적용함으로써 국제적 과세기준을 준수하고,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위해 칸톤 법인세율을 인하할 것을 제안함
 - 각종 조세특례제도 개정으로 다국적기업은 스위스 기업과 동일한 세부담을 가지나 칸톤의 법인세율을 동시에 인하함
 - 칸톤의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부족액은 연방정부가 칸톤정부에 배분하는 세수액 비율을 17%에서 21.2%로 인상하여 충당함
 - 모든 칸톤은 특허박스제도에 BEPS Action 5의 ‘연계접근법’을 무조건 적용해야 하며, R&D비용공제, 명목이자공제(notional interest deduction), 특정 자본이득과세 경감, 법인세율 인하안은 칸톤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함
 - 칸톤의 각종 조세특례로 발생하는 공제한도를 소득의 80%로 제한함
-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법인세율 인하안 부결로 다국적기업 이탈 시 일자리가 감소될 것을 우려함¹¹¹⁾
 - 반면 이번 법인세 인하안에 반대하는 측은 다국적기업이 스위스에 위치하는 것은 세제혜택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이유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는 오히려 지방 재정에 부담이 생김을 주장함

나. 새로운 세법개정안(TP 17) 발표

[조세동향 17-6호]

- 스위스의 연방, 칸톤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steering body)는 2017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할 새로운 세법개정안 ‘Tax Proposal 17(TP 17)’을 채택함¹¹²⁾
 -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017년 2월 법인세법 개정안(CTR III)이 국민투표로 부결된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한 것임

111) Financial Times, “Swiss prepare to vote on corporate tax unification,” 2017. 2. 12.일자 기사

112) IBFD News, “Switzerland - Recommendations on new proposal for corporate tax reform adopted,” 2017. 6. 2.

- 당시 유권자들은 연구·개발비용 공제, 이자비용 공제, 법인세율 인하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함
- 새로운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 유치,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세법개정, 세수부족 감소를 목적으로 함
- 이번 발표에서는 큰 틀에서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2017년 6월까지 정한 후, 2018년 봄까지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함
- 새로운 세법개정안(TP 17)에서 법인세의 개정내용으로 OECD 기준에 맞은 특허박스제도 도입, R&D비용 공제범위 축소, 기업의 과도한 세액공제 제한, 적격 배당소득에 부과세를 제시함¹¹³⁾
 - 특허박스제도는 OECD BEPS의 권고사항에 따라 연계접근법을 도입하며, 이전에 부결된 세법개정안(CTR III)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특허박스제도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함
 - R&D비용의 추가공제는 실제 발생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전 세법개정안과 달리 인적비용에 대해 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함
 - 특허박스제도와 R&D비용의 공제허용 금액을 순이익의 70%로 하며, 이전 세법개정안에서는 순이익의 80%로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공제한도를 축소할 것을 제안함
 - 적격주주(10% 이상 지분 보유)가 배당을 받는 경우 연방정부, 칸톤정부 모두 배당금액의 70%만 과세하며, 이전 법인세법 개정과 달리 연방정부에서도 적격 배당소득의 일부만 과세하도록 수정됨
-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칸톤)에 세수를 배분하는 비율을 현행 17%에서 21.2%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소득세의 개정내용으로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공제의 인상을 제안함
 - 칸톤이 분배받는 재정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칸톤이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재정비율도 동시에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의 최소 공제금액을 각각 30스위스프랑씩 인상하며, 인상 시 자녀공제 최소금액은 230스위스프랑, 교육비용공제 최소금액은 280프랑임

113) 이전에 부결된 법인세법 내용과의 차이는 EY, "Swiss Finance Minister presents new cornerstones of tax reform," 2017. 6.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또한, 이전 법인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이자비용 공제허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법인세율 인하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음

11 아일랜드 - 중소기업 주식의 인지세 비과세 규정 도입 발표

[조세동향 17-5호]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17년 5월 17일 중소기업의 주식거래 시 인지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도입함¹¹⁴⁾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중소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 언급함
 - 현행 규정상 아일랜드 기업의 주식 거래 시 1%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이번 인지세 비과세규정으로 인한 감면 규모는 연간 5백만유로로 추정됨
 - 이 비과세 규정은 2013년 발표되었으나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도입된 것이며¹¹⁵⁾, 2017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주식은 아일랜드의 Enterprise Securities Market(ESM)에서 거래되는 주식임
 - ESM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 규모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임

12 아이슬란드 - 국가별보고서 규정 개정

[조세동향 17-4호]

- 아이슬란드 재무부는 2017년 3월 24일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 중 제출기한, 보고내용

114) 아일랜드 재무부,
<http://finance.gov.ie/news-centre/press-releases/minister-noonan-makes-it-easier-invest-ireland%E2%80%99s-growing-businesses>

115) Irish Times,
<http://www.irishtimes.com/business/markets/budget-2017-noonan-urged-to-keep-promise-on-shares-1.2798495>,
2016. 9. 21. 일자 기사

규정을 개정함¹¹⁶⁾

- 아이슬란드 재무부는 2016년 12월 22일 국가별보고서 규정을 최종 입법한 바 있음¹¹⁷⁾
 -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업은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로 직전연도 연결그룹 매출액이 100억크로네(ISK, 약 1조원)를 초과하는 기업임¹¹⁸⁾
 - 이번 개정안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
-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을 앞당겼으며, 국가별 보고 내용은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재무정보를 합산하여 보고하도록 개정함
- 기존의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임
 - 보고내용의 경우 기존 규정에서는 연결그룹 내 자회사의 보고금액을 개별 기업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국가별 보고내용은 자회사의 총매출액, 미지급세액, 세금납부액,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정보임

13 에스토니아 - 국가별보고서와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규정 승인

[조세동향 17-4호]

- 2015년 3월 15일 에스토니아 국회는 국가별보고서와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¹¹⁹⁾
- 국가별보고서는 에스토니아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제출하며, 직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7.5억유로를 초과한 경우 제출 의무가 있음¹²⁰⁾

116)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iceland-amends-country-by-country-reporting-rules> (검색일자: 2017. 4. 24.)

117) IBFD, "Regulation on country-by-country reporting issued," 2016. 12. 29.

118) Ibid

119) E&Y, "The Latest on BEPS: Estonia," 2017. 4. 10,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10-april-2017>(검색일자: 2017. 4. 18.)

120) E&Y, "The Latest on BEPS: Estonia," 2017. 1. 30.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에스토니아 내국법인은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자인지 여부와 다국적기업 그룹 내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업과 제출 국가를 보고해야 함
 - 에스토니아는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과세당국 간 다자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다른 다자협정 체결국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임
- 강제적 자동정보교환과 관련하여 에스토니아 과세관청은 EU 회원국의 과세관청 사이에 사전답변 예규(advance tax rulings) 정보를 강제적·자동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조세정보 교환법(the Tax Information Exchange Act)을 개정함¹²¹⁾
- 승인된 규정은 EU 국가 사이에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EU의 자동정보교환 지침(Directive 2015/2376)을 에스토니아 국내법에 적용한 것임
 - 자동정보교환지침은 2015년 12월 8일 채택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에스토니아의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다만, 2017년 이전 발행된 사전답변 예규 정보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교환될 예정임

14 영국

가. 다자간조세협약 참여 계획 발표

[조세동향 17-1호]

- 영국 정부는 BEPS Action 15 다자간조세협약¹²²⁾에 대해 각 조문별 참여나 유보¹²³⁾ 계

<http://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the-latest-on-beps-30-january-2017.aspx>(검색일자: 2017. 4. 18.)

121) EU,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5L2376>(검색일자: 2017. 4. 21.) 및 E&Y, "Estonia: amendments to Tax Information Exchange Act and Law on Taxation proposed," 2016. 9. 9., <http://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estonia-amendments-to-tax-information-exchange-act-and-law-on-taxation-proposed.aspx>(검색일자: 2017. 4. 21.)

122) OECD는 2016년 11월 24일 다자간조세협약 각 조문의 세부내용과 최소기준 항목과 유보 가능한 항목을

획을 발표¹²⁴⁾함

- OECD 다자간조세협약은 BEPS Action 2 혼성불일치의 해소, BEPS Action 6 조세조약 남용 방지, BEPS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해소 방지, BEPS Action 14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 마련의 네 가지 부분과 관련된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됨
- 영국은 최소기준¹²⁵⁾을 제외하면 고정사업장 관련 조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문에 유보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영국은 다자간조세협약 체결 후 현재 발효 중인 양자간조세조약에 다자간조세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할 계획임

□ 영국은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에 유보를 표명¹²⁶⁾할 계획임

- 다자간조세협약 제12조에서 위탁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전략을 이용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유보를 표명할 계획임
- 다자간조세협약 제13조 고정사업장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특정 사업행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부분 유보를 표명할 계획이나, 일부 항목은 채택할 계획임
 -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를 표명할 계획임
 - 다만, 다자간조세협약 제13조 제6항과 제4항의 인위적으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분할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채택할 예정임
 - 또한, 다자간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의 특정 기업과 긴밀하게 관련된 인(person)¹²⁷⁾

발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2-2호,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OECD-세원잠식과-소득이전-방지를-위한-다자간협약-공개/524667)

123) 유보를 표명한 조문이나 조항에 대해서는 다자간조세협약에 참여한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24) Tax Notes International, "U.K. to reject most revised PE standards in Multilateral Instrument," 2017. 1. 9., pp. 163~166.

125) BEPS Action은 모두 15개이며, 이 중에서 강제이행 의무가 부여된 권고안을 가리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이라 함. 최소기준 중에서 다자간조세협약에 포함된 항목은 BEPS Action 6 조세조약 남용 방지와 BEPS Action 14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의 마련임

126) 유보를 표명할 경우 다자간조세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127) 개인과 법인을 의미함

- 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채택할 예정임
- 다자간조세협약 제14조 계약분할을 통한 고정사업장 과세회피 방지에 관해서는 유보를 표명할 계획임
- 분쟁해결장치와 관련하여 상호합의와 강제중재 제도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중재기간에 대해서는 유보를 표명할 계획임
 -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한 다자간조세협약 제16조 내용을 모두 채택할 예정임
 - 최소요구기준이지만 국내법 등으로 이행이 가능한 경우 유보를 통하여 상호합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나, 유보 없이 전체 내용을 채택할 예정임
 - 한편, 다자간조세협약에서 중재기간을 3년으로 제안¹²⁸⁾하였으나, 영국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 2년의 중재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항목에 유보를 표명할 계획임
 - 법정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중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내용¹²⁹⁾과 중재 범위¹³⁰⁾에 관하여 다자간조세협약의 제안에 따를 것임
- 조세조약 남용방지와 관련하여 혜택의 제한(LOB)과 주요목적 기준(PPT) 중에서 주요목적 기준을 채택할 예정이며, 그 밖의 항목은 대부분 유보를 표명할 예정임
 - 조세조약 남용과 관련하여 다자간조세협약 제8조의 배당거래 이전 거래 방지와 제9조 부동산주식 양도거래 과세에 관하여 유보를 표명할 예정임
 - 다자간조세협약 제10조의 제3국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한 조약남용 방지 규정에 유보를 표명할 계획임
- 혼성불일치와 관련하여 다자간조세협약 제3조의 도관단체와 제4조의 이중거주자단체의 거주국가 결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채택할 예정임

128) 다자간조세협약 제19조 제11항

129) 다자간조세협약 제19조 제12항

130) 다자간조세협약 제28조

나. 이자공제 제한 규정 관련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7-2호]

- 영국 정부는 2017년 1월 26일 이자공제 제한 관련 개정세법안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설명자료를 공개함¹³¹⁾
 - 이번 발표한 법안은 2016년 12월 발표한 재정법 초안¹³²⁾에 포함되어 소개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역을 소개하고 있음
 - 영국이 제안한 이자공제 제한규정에는 BEPS Action4의 권고안이 반영됨
 - 다만, BEPS Action4에서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공제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권고한 데 비해, 영국 정부는 금융회사와 그 밖의 회사 사이에 동일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함
 - 법안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17년 3월 중 관련 규정을 확정할 예정임
 - 본 법안이 현행 부채규모에 따라 이자공제를 제한하는 법(World Wide Debt Cap legislation)을 대체할 것임
- 기존 재정법에서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자비용이 과다한 법인에 세무상 EBITDA의 30%까지의 고정비율과 그룹비율을 한도로 이자공제가 허용됨
 - 이자비용 과다법인이란 연결그룹 전체 이자비용이 2백만파운드를 초과, 이자비용이 영국 내 과세소득의 20%를 초과하고 영국 그룹 내 순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전체 그룹의 이자비용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임¹³³⁾
 - 이자비용 한도초과액을 계산할 때 총이자비용에는 금융리스, 팩토링, 금융자산이나

131)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n 85, Number 5, "Government Issues New Interest Deductibility Rules," 2017. 1. 30., pp. 434-435.

132) 영국 정부, "Tax deductibility of corporate interest expense: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2016. 12. 5.,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74318/tax_deductability_consultation_response_final.pdf) 및 『조세동향』 2016-12-1호, 「영국 2016년 추계예산안, 2017년 재정법 발표」, 2016. 12. 23.,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영국-2016년-추계예산안-2017년-재정법-발표/524655)

133) 『조세동향』 2016-12-1호, 「영국 2016년 추계예산안, 2017년 재정법 발표」, 2016. 12. 23.,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영국-2016년-추계예산안-2017년-재정법-발표/524655)

채권으로 보증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포함됨

- 그룹비율규정이 적용되면 그룹비율이 고정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그룹의 EBITDA 대비 제3자 순이자비용의 비율까지 이자비용이 추가적으로 공제가능함
 - 그룹비율은 그룹의 제3자 순이자비용을 그룹의 EBITDA로 나눠서 계산하며, 이자공제 한도액은 영국의 세무상 EBITDA에 그룹비율을 곱한 금액임
- 2016년 5월 13일 전에 발생한 특정 차입금이나 공공이익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유지와 수선이나 공익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등을 이자공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제규정(Public Benefit Infrastructure Exemption)의 대상으로 규정함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물, 가스나 전력의 전송이나 공급, 재생이나 원자력 에너지의 생성, 항만, 공항이나 철도망의 운영 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이자공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이자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은 일정 기한 내에 국세청에 이자공제 한도초과액 계산 등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제출해야 함
 -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12개월 내에 'Interest Restriction Return'을 국세청에 제출함
 - 규정의 적용대상인 영국 기업의 정보, 이자비용과 이자공제 한도초과액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함

다. 캐시풀링에 대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17-2호]

- 영국 국세청은 2017년 2월 6일 캐시풀링 거래(cash pooling arrangements)¹³⁴⁾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¹³⁵⁾
 -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관계회사 사이의 캐시풀링 거래가 세금절감 목적을 위해 도

134) 다국적기업이 계열사 간에 여유자금을 이용하고 이자율이나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거래임

135) 영국 정부, "Intra-group funding: Cash Pooling: conten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503100>) 및 E&Y, "UK Tax Authority issues new guidance on transfer pricing of cash pooling arrangements," 2017. 2. 10.

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나, 거래가 복잡하여 이전가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가이드라인은 캐시폴링의 정의와 사례, 이자율 결정, 캐시폴링의 장점, 캐시폴링 거래에 참여한 대출자나 차입자가 고려할 사항, 마스터계좌(master account or cash pool header)에 대한 보수와 캐시폴링 거래 참여자 간 이익배분에 관한 방법 등을 포함함
- 캐시폴링에 포함된 여러 법률적·계약적 거래를 구분하여 마스터계좌와 거래 참여자의 기능과 위험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도록 제안함
- 캐시폴링 관련 이자율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설명함
 - 대출자로 거래에 참여한 자가 자금 대여 시 차입기업의 신용등급 등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이자를 산정하는가를 고려함
 - 이자율의 이전가격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때 다국적기업 그룹이 그룹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부분이 각 자회사의 기여 비율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었는가를 고려함
 - 이는 BEPS Action 8~10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부분임
- 캐시폴링 거래에 참여한 자금을 단기와 장기 대차 거래로 구분하고 이전가격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설명함
 - 장기 대출이나 차입을 캐시폴링 거래가 아닌 장기대출로 간주하고, 이자율의 적정성을 검토함
 - 모니터링의 정도, 단거나 장기 대차거래의 정도 등을 포함하여 캐시폴링 참여자의 거래가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와 다른 여러 사례를 제시함
- 마스터계좌 보수에 대한 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마스터계좌가 부담한 리스크와 거래의 실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마스터계좌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이나 초과 예금의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
 - 예를 들어, 장기 차입과 단기 대여의 비중이 높다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함
 - 캐시폴링 참여자 간 이익배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마스터계좌에 과도한 이익이

- 배분되거나 자금이 축적되지 않는가를 고려해야 함
- 법률상 단기 대차거래이나 실질은 장기 대차거래인 경우 이전가격 결정 시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그 밖에 가이드라인에는 문서화, 동일 국가에 소재한 모·자회사 사이의 대차거래와 화폐단위가 다른 캐시폴링 거래의 이전가격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이 포함됨

라. 2017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7-3호]

-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8일 2017 춘계 예산안을 발표함¹³⁶⁾
 - 경쟁력 있는 세율과 안정적 세원확보를 기조로 한 조세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법인세, 개인소득세, 상속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 등의 개정사항이 포함됨
 - 세무행정 개선방안과 조세회피방지 방안이 포함됨
 - 예산안은 2016년 11월 발표한 2017 재정법 초안의 세부내용과 2017년 재정법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개정내용으로 구분됨

1) 법인세

- 결손금 이월공제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일정 규모를 초과한 이익에 대한 이월공제 한도를 도입하여 이월공제를 제한함¹³⁷⁾
 - 이월결손금이 다른 유형의 소득이나 동일 그룹 내 계열사 소득과 상계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함
 - 현행 세법상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자본손실과 일반소득 사이의 상계를 허용함
 - 기업이나 그룹의 각 과세연도 소득이 5백만파운드를 초과한 경우 5백만파운드 초과

136) 영국 정부, "Spring Budget 2017: overview of tax legislation and rates (OOTLAR)," 2017. 3. 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budget-2017-overview-of-tax-legislation-and-rates-ootlar/spring-budget-2017-overview-of-tax-legislation-and-rates-ootlar#table-1>(검색일자: 2017. 3. 16.)

137) 현행 영국 세법상 기간 제한 없이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허용됨

- 이익의 50%만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됨
-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이더라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됨¹³⁸⁾
- 영국 정부는 기업의 99%가 이번 결손금 이월공제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¹³⁹⁾
- 2017년 4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됨
-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신규 전시물을 도입한 박물관과 미술관 세액의 20%나 25%를 공제함
 - 관람용 전시물에 대해 25%의 비율로, 그 밖의 전시물에 대해 20%의 비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됨
 - 공제한도를 두고 관람용 전시물에 대해 10만파운드까지 그 밖의 전시물에 대해 8만 파운드까지로 공제를 제한함
 -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2개 이상의 기업이 비용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연구개발의 경우도 특허박스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영국은 2016년 7월 1일부터 OECD BEPS Action5에서 권고한 연계접근법에 따른 특허박스제도를 마련하고 기존 특허박스제도를 대체함
 -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연계접근법하에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한 납세자가 불이익이나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개정안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이자비용 과다 법인의 이자비용 공제를 OECD BEPS Action4 보고서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EBITDA의 30%까지로 제한함

138)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poration-tax-reform-of-loss-relief/corporation-tax-reform-of-loss-relief>

139)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poration-tax-reform-of-loss-relief/corporation-tax-reform-of-loss-relief>

- 30%의 고정비율과 그룹비율의 사용을 허용함¹⁴⁰⁾
-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영국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외국 사업자의 관련 소득을 영국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함
 - 2016 재정법에서¹⁴¹⁾ 2016년 7월 5일부터 비거주자가 영국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토지개발 사업 결과로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을 도입함¹⁴²⁾
 - 현행 세법이 2016년 7월 5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임
 - 계약체결일과 무관하게 2017년 3월 8일 이후 발생한 수익부터 적용됨
-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IFRS(국제회계기준) 16에 따라 신규 리스회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세법 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리스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 관련된 세부 내용은 2017년 여름 중 발표할 예정임
-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을 명확화·간소화하여 관련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음
 -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임
- 유럽 다자간 거래 시스템(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MTF)¹⁴³⁾에서 거래되는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면세할 예정임
 - 영국 채권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서 제안됨

140) 『조세동향』 17-2호 참조,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영국-이자공제-제한-규정-관련-개정안-발표/524806)

141) 2016 재정법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규정과 관련됨

142)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come-tax-and-corporation-tax-disposals-of-land-in-the-uk/income-tax-and-corporation-tax-disposals-of-land-in-the-uk>

143) “a multilateral system, operated by an investment firm or a market operator, and which brings together multiple third-party buying and selling interests in financial instruments - in the system and in accordance with non-discretionary rules - in a way that results in a contract in accordance of the provisions of Title II,4”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1145/Withholding_tax_exemption_for_debt_traded_on_a_Multilateral_Trading_Facility.pdf]

- 2009년 이후 영국 채권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으며, 특히 MTF와 같은 비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영국 채권의 규모가 주변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적어¹⁴⁴⁾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제안함¹⁴⁵⁾
- 구체적인 내용은 2017~18 재정법에 포함되어 2018년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고급 TV, 애니메이션과 비디오게임에 대한 조세혜택, 전사적 관리(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s)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안함
- 201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음
-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 관련 조세혜택(Investment Allowance and Cluster Area Allowance Regulations)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운영과 리스를 위한 지출액 중 일부를 적용대상에 추가할 예정임
- 현행 세법상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액의 62.5%를 공제하고 있으며¹⁴⁶⁾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운영비 등을 공제 대상에 추가할 방침임
-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음

2) 개인소득세 및 상속세

- 배당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5,0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로 하향 조정함
- 배당소득에 적용되던 면세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s)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함¹⁴⁷⁾
- 2016년 11월 발표한 추계예산안에서 2020년까지 인적공제 금액을 현행 1만 1,500파운드에서 1만 2,5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하고 ISA 납입한도도 현행 15,240파운드에서

144)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채권의 28% 상당이 MTF에서 거래되는 데 반해 영국 채권의 1%만 MTF 시장에서 거래됨

145)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1145/Withholding_tax_exemption_for_debt_traded_on_a_Multilateral_Trading_Facility.pdf

146)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vestment-allowance-for-oil-and-gas-companies/investment-allowance-for-oil-and-gas-companies>

147)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come-tax-dividend-allowance-reduction/income-tax-dividend-allowance-reduction>

2만파운드로 인상할 방침을 밝힘¹⁴⁸⁾

-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자본이득과 부동산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도입함
 - 자본이득과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각각 1,000파운드이며 실제 지출비용을 대신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방식임
 - 자본이득의 경우 모든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이나 서비스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얻은 잡수익에 한해 적용됨
 - 의견수렴 이후 개정안이 확정될 것임
- 현행 세법상 주거용 임대인에게 적용되던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주거용으로 장기 임대한 임대인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세법상 주거용으로 임대한 모든 자가 연간 7,500파운드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음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발표되지 않음
- 상속세(inheritance tax) 개정안을 발표하고, 20년 중 15년의 기간 동안 영국 거주자(resident)인 경우나 영국에서 출생(domicile) 후 해외 거주자였다가 다시 영국 거주자가 된 경우도 상속세법상 영국 거주자로 간주함
 - 2017년 4월부터 적용됨
- 현물 수당(benefits in kind)에 적용되던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혜택을 폐지함
 - 다만 고용주 부담 연금, 연금 관련 자문료, 양육보조금, 고용주 제공 보육료나 보육 시설 관련 비용, 저공해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혜택이 유지됨
 -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추가 발표할 예정이며, 2017년 4월 6일부터 적용됨
- 퇴직위로금(termination payment)에 대해 세무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금액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면세하는 개정안을 포함함

148) 『조세동향』 17-2호 참조,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 영국-이자공제-제한-규정-관련-개정안-발표/524806)

- 3만파운드 이하 퇴직위로금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모두 면세함
- 2018년 4월 6일부터 적용됨
- 고용주가 보전하지 않는 업무추진비(employees' expenses) 명목의 급여와 주거비용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제안함
 -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임
- 2018년 4월 6일부터 8,060파운드를 초과하는 자영업자(class 4)의 사회보장세 세율을 9%에서 10%로 인상하고, 2019년 4월 6일부터 11%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그 밖에 연소득 5,965파운드 미만인 자영업자(class 2)에게 사회보장세 납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위한 매출액 한도와 사업자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매출액 기준을 연간 8만 3,000파운드에서 8만 5,0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함
 - 기존 사업자로 등록된 납세자 중 사업자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을 연간 8만 1,000파운드에서 8만 3,0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함
 -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국내 재화를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split payment' 모델을 개발하고, 구매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자동적으로 징수할 예정임
 - split payment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영국 과세당국이 실시간 부가가치세를 확보하도록 돕는 시스템임¹⁴⁹⁾
 - 이미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split payment 시스템을 이용하

149)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1027/Alternative_method_of_VAT_collection_-_Call_for_evidence.pdf

- 여 해외 온라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음¹⁵⁰⁾
-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주체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¹⁵¹⁾
- 영국은 국내 재화를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사업자가 직접 영국 내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split payment를 통해 해외 온라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split payment의 운영주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임
- 국내 해외 사업자가 영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바일폰 서비스의 공급장소 판단 시 적용되던 ‘사용 및 향유되는 장소(use and enjoyment)’ 기준을 폐지함
- 개정 이후 영국 소비자가 영국 역외에서 사용되거나 향유하는 모바일폰 서비스도 영국에서 20%의 부가가치세로 과세됨
-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됨

4) 그 밖에 간접세

- 담배세 최저한세(minimum excise tax)를 도입하고 영국에서 판매되는 담배 1,000개비당 268.83파운드를 최저한세로 납부하도록 제안함
- 최저한세는 초저가 담배 판매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이루기 위해 제안됨
- 2017년 3월 20일부터 적용됨
- 쓰레기매립세(landfill tax)의 과세대상에 허가받은 쓰레기매립지에서 불법적으로 물품을 처분하여 세금을 회피한 경우를 추가함
- 그 외에 쓰레기매립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 처분의 정의를 변경하고 납세자 이해도 증진과 법 간소화를 위하여 법을 재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됨

150)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1027/Alternative_method_of_VAT_collection_-_Call_for_evidence.pdf

151)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1027/Alternative_method_of_VAT_collection_-_Call_for_evidence.pdf

- 기존 '부가가치세 회피 방지를 위한 공개 규정'의 적용대상을 모든 간접세로 확대하여 '간접세 회피 방지를 위한 공개 규정(disclosure of indirect tax avoidance schemes)'을 마련함
 - 간접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자나 이를 자문하는 자(promoters)는 영국 국세청(HMRC)에 신고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의무가 있는데 규정의 적용대상을 모든 간접세로 확대하는 방안임
 -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됨

5) 조세행정

- 담배의 불법 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 내 담배 제조 기계의 소유와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함
 - 법률상 담배 제조 기계에 대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라이선스 없는 기계를 통해 생산된 제품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 국세청은 대기업(large businesses)의 세무위험과 관련한 국세청의 정보수집 절차를 담은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임
 - 국세청이 발행할 보고서에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제시될 것이며,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국세청의 검토(enquiry)를 받지 않음
 - 보고서를 통하여 기업이 저위험군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 대기업의 납세순응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 2017년 여름 중 발행할 예정임
- 현금주의 세무처리와 관련된 두 가지 개정사항이 포함됨
 - 현금주의 세무처리를 선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매출액 8만 3,000파운드에서 15만파운드 이하인 사업자로 변경함
 - 단, 매출액이 30만파운드를 초과한 사업연도로부터 현금주의 세무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 2017년 4월 6일부터 적용됨
 - 현금주의 세무처리의 이해를 돕고 비용 공제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현금주의를

선택했을 때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목록을 제시할 방침임

- 2017년 4월부터 적용됨

- 그 밖에 디지털세무행정과 관련 논의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와 임대업자의 디지털세무행정 이행 시기를 2019년 4월까지 1년 연기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됨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조세회피에 가담한 기업이나 개인에 가산세를 도입하고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the General Anti Abuse Rule, GAAR)의 적용 시점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포함됨

마. 디지털세무행정에 관한 진행상황 요약

[조세동향 17-4호]

- 영국 정부가 2015년 11월¹⁵²⁾ 디지털세무행정에 관한 로드맵을 소개한 이후, 공개 의견수렴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디지털세무행정 이행 시기를 연장하는 등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함¹⁵³⁾
 -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과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디지털세무행정 진행 시기를 늦추자는 다수의 의견을 일부 반영함
 - 디지털세무행정 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속적인 의견수렴, 기술적 검토와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임
 - 디지털세무행정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논의된 내용¹⁵⁴⁾을 요약 정리함
-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디지털세무행정의 이행시기를 부가가치세 면세점 이하의 법인, 자영업자와 임대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2019년으로 연기하고 매출액

152) 2015년 12월 『조세동향』(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영국-디지털-세무행정-시스템의-전환/523651)에서 다룬 내용임

153) Tax notes international, “‘Making Tax Digital’ Deferral Not Enough, U.K. Committee says,” 2017. 3. 27. 및 Tax notes international, “Large Variation in U.K. Digitization Cost Estimates Questioned,” 2017. 4. 3.

154) 2017년 3월 발표한 예산안에 포함된 디지털세무행정에 관한 향후 계획임

10,000파운드인 이하인 사업자를 디지털세무행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¹⁵⁵⁾

- 수정된 계획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초과한 사업자의 소득세와 사회보장세(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를 시작으로 2020년 모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까지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9년 4월부터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디지털세무행정을 시작할 계획이었음
 - 2019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의 디지털세무행정을 시작할 계획이었음
 - 2020년 4월부터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의 디지털세무행정을 시작할 계획이었음
- 현재 디지털세무행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한 디지털 세무행정의 이행시기를 2020년으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각 세목별 사업자 종류별 디지털세무행정의 시작 시점을 일부 연기한 것임
- 영국은 디지털세무행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이행시기와 범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소기업의 비용 완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85,000유로 미만인 사업자에 한하여 디지털형태의 장부 보관과 분기별 세무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함
 - 디지털세무행정 관련 위원회는 현재 디지털 세무행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고, 소기업은 디지털 세무행정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함
- 한편, 영국 국세청에서는 디지털세무행정으로 조세격차(tax gap)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는 등 여러 가지 디지털세무행정 이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발표함
 - 국세청의 추정에 따르면 조세격차 감소가 2018/19년에는 10백만파운드, 2019/20년에는 400백만파운드, 2020/21년에는 805백만파운드와 그 이후 연간 십억파운드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155) 영국 정부, "Making Tax Digital for business," 2017. 3. 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aking-tax-digital-for-business/making-tax-digital-for-business>)

- 다만, 국세청의 추정액은 현재 세무행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다수의 납세자가 디지털 세무행정을 이행한 후 오류 없이 신고할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 디지털세무행정이 납세자의 오류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임

- 영국은 3월 20일 발표한 2017 재정법에서 디지털 세무행정에 관한 법안과 관련 규정을 2017년 여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바. 해외 온라인 사업자의 조세회피에 관한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7-5호]

- 2017년 4월 19일 영국 감사원(the National Audit Office, NAO)은 해외 온라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순응¹⁵⁶⁾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행함¹⁵⁷⁾
 - 영국 감사원은 영국 국세청, 하원의원 공공재정위원회(PAC), 영국 기업그룹(U.K. trader group), 아마존과 이베이로부터 받은 의견을 조사에 반영함
-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16 사업연도 중 해외 온라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지 않아 미납된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이 1십억파운드~1.5십억파운드에 상당할 것으로 추계함
 - 2015~16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조세격차가 12.2십억파운드인 점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 조세격차의 8~12%가 해외 온라인사업자로부터 발생한 것임
- 영국 감사원은 국세청의 뒤늦은 대응이 해외 온라인 사업자의 탈세를 증가시켰다고 지적하는 한편 최근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해외 온라인 사업자의 탈세가 계속 쟁점이 되었으나, 국세청은 2014년에 와서 이러한 쟁점을 최우선순위 해결 과제로 채택하고 2015년 해당 업무에 국세청 내 인력과

156) 영국 내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 온라인 사업자는 직접 영국 내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해외 온라인 사업자는 EU 비회원국에 소재하는 사업자를 의미함(출처: 『조세동향』 17-04, '영국 2017년 예산안 발표',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영국-2017년-예산안-발표/524860(검색일자: 2017. 5. 26.)

157) Tax Notes International, "Online VAT Fraud Cost U.K. Over £1 billion in 2016," 2017. 4. 24.

자원을 확대 배치함

- 영국 기업그룹도 이러한 쟁점이 2009년 초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국세청이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5년의 기간 동안 탈세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함
- 2016년 9월부터 해외 온라인 사업자가 영국 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대행하는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미납 시 대리인이나 보증금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등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그 밖에 보고서에는 주요 탈세 품목이나 탈세 원인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됨

- VATFraud.org과 같은 영국 기업그룹은 탈세 규모가 큰 거래품목 중 하나가 휴대폰 악세사리이며,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해외 온라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의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힘
- 아마존이나 이베이는 주요 탈세 원인 중 하나로 해외사업자가 영국 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무지를 지적함
- 한편, 국세청은 중국에 소재한 해외 온라인 사업자가 영국 내 창고를 두고 온라인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면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으로 위장하거나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있다고 밝힘

사. 2017 재정법 확정

[조세동향 17-5호]

- 2017년 4월 27일 영국의 2017년 재정법이 영국 국왕의 승인을 얻어 확정됨¹⁵⁸⁾
 - 당초 발표한 2017 재정법 개정안¹⁵⁹⁾에 포함된 중요한 법인세 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 확정됨
 - 법인세 개정안에 포함된 중요한 개정사항 중 하나인 혼성불일치, 특허박스 조세혜

158) 영국 의회, <http://services.parliament.uk/bills/2016-17/financeno2.html>(검색일자: 2017. 5. 26.)

159) 『조세동향』 16-12, '영국 2016년 추계예산안, 2017년 재정법 발표',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영국-2016년-추계예산안-2017년-재정법-발표/524655 및 『조세동향』 17-04, '영국 2017년 예산안 발표',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영국-2017년-예산안-발표/524860(검색일자: 2017. 5. 26.)

택에 대한 원가분담, 법인의 손실공제나 이자비용공제 관련 개정안이 확정된 재정 법에는 제외됨

- 2017년 6월로 예정된 대선을 고려하여 재정법을 예상보다 조기 확정함

아. 국세청의 우회이익세 부과

[조세동향 17-5호]

- 영국 국세청은 대표적인 다국적기업 중 하나인 디아지오(Diageo PLC)에 우회이익세 (diverted profits tax)¹⁶⁰⁾ 명목으로 107백만파운드의 법인세를 부과할 계획임¹⁶¹⁾
 - 107백만파운드는 2015년 6월 말과 2016년 6월 말로 종료한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와 이자 가산금의 합임
- 디아지오나 영국 국세청이 우회이익세의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으며, 이번 우회이익세의 부과 근거가 이전가격과 관련된 쟁점이라는 점만 밝힘
 - 디아지오는 자사의 거래가 영국의 우회이익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¹⁶²⁾

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형사재정법 개정 확정

[조세동향 17-5호]

- 2017년 4월 27일 조세회피 방지¹⁶³⁾를 위한 형사재정법(the UK Criminal Finances Act)이

160) 영국은 2015년 4월 1일이 포함된 과세연도부터 우회이익세를 과세하였으며, 우회이익세가 적용되는 소득은 일반 법인세율인 20%의 세율보다 높은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161) Tax Notes International, "HMRC to Hit Diageo with £107 Million Diverted Profits Tax Bill," 2017. 5. 15. 및 BBC, "Diageo told to pay £107m in extra tax in profits row," <http://www.bbc.com/news/business-39871218>, 2017. 3. 10.

162) 우회이익세는 다국적기업이 영국 내 고정사업장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하여 경제적 실질이 거의 없는 해외로 이익을 이전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디아지오의 우회이익세 과세 근거가 고정사업장과 관련되기보다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쟁점이라는 점에서 우회이익세의 과세 근거에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출처: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xing-multinationals-transfer-pricing-rules/taxing-multinationals-how-international-transfer-pricing-rules-work>(검색일자: 2017. 5. 29.))

영국 국왕의 승인을 얻어 확정됨¹⁶⁴⁾

- 이 법은 2017년 9월 말부터 시행됨
- 개정된 형사재정법에 따르면 직원, 세무대리인이나 자회사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기업¹⁶⁵⁾을 처벌할 수 있음
 - 기존 2002년 형사법(the Criminal Act 2002)에 따른 경우 제3자의 조세회피 행위가 입증되더라도 해당 기업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진이 직원의 조세회피 행위에 참여하거나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만, 기업이 합리적인 조세회피 방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형사재정법 제3절에서 기업이 처벌받는 관련자의 영국법과 외국법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 등을 규정함
 - 영국법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는 세금을 줄여 개인이 이익을 취하는 행위나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의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함¹⁶⁶⁾
 - 외국법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는 외국 법률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거나, 외국의 법률에서 정한 납세의무의 위반과 관련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의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행위로 영국 내 지방 법원에서 조세회피로 인정한 행위를 의미함¹⁶⁷⁾
 - 그 밖에 형사재정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갖추어야 할 절차나 각 용어의 정의와 범위 등을 포함함

163) 이 법은 조세회피 방지 외에 돈세탁, 부패, 테러범의 자금조달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164) 영국 국회,

<http://services.parliament.uk/bills/2016-17/criminalfinances.html>(검색일자: 2017. 5. 26.) 및 E&Y, "UK enacts new corporate criminal offense for failure to prevent facilitation of tax evasion,"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uk-enacts-new-corporate-criminal-offense-for-failure-to-prevent-facilitation-of-tax-evasion>, 2017. 5. 26.

165) 기업은 법인과 파트너십을 의미함

166) 형사재정법 제45조,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7/22/contents/enacted/data.htm>(검색일자: 2017. 5. 31.)

167) 형사재정법 제46조,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7/22/contents/enacted/data.htm>(검색일자: 2017. 5. 31.)

차. 집권 보수당의 조세정책 방향

[조세동향 17-6호]

- 2017년 6월 8일 영국 대선에서 보수당이 집권하였으며, 향후 영국의 조세정책 방향을 예측할 목적에서 선거기간 동안 보수당이 주장한 ‘저세율 정책’을 살펴봄¹⁶⁸⁾
 - 보수당은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을 기업과 맞벌이 가족에 대한 세부담 감소로 정함
- 개인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인상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힘
 - 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2020년까지 12,500파운드로 인상할 예정임
 - 현재 기본공제액은 1만 1,000파운드이며, 조정 후 순소득이 10만파운드를 초과하면 증가한 소득에 비례해서 기본공제액이 감소하여 조정 후 순소득이 122,000파운드를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함
 - 소득세 고세율 구간을 현행 4만 5,000파운드 초과에서 5만파운드 초과로 인상할 예정임¹⁶⁹⁾
 - 법인세율을 현재 20%에서 2020년까지 17%로 3%p 인하할 방침임
 - 대선 기간 동안 법인세율 인상과 인하를 두고 영국의 보수당은 법인세 인하를,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였음¹⁷⁰⁾
- 그 밖에 조세시스템의 간소화와 조세회피 방지 등을 강조함

168) 영국 보수당,

“Forward Together: The Conservative Manifesto,” <https://www.conservatives.com/manifesto>(검색일자: 2017. 6. 23.)

169) 영국의 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음

(단위: 파운드, %)

세율구간	금액	세율	
		일반소득	배당소득
기본세율(Basic rate)	11,500 ~ 45,000	20	7.5
고세율(Higher rate)	45,000 ~ 150,000	40	32.5
추가세율(Additional rate)	150,000 ~	45	38.1

자료: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17,” p. 1440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gov.uk/income-tax-rates>(검색일자: 2017. 6. 14.)

170) Tax Notes International, “Labour Party Manifesto Pushes Corporate Tax Spike and FIT”, “Liberal Democrats Call for Income a Corporate Tax Rate Rises”, “Conservative Party Manifesto Sticks 17 Percent Corporate Rate Target,” Volume 86, Number 8, 2017. 5. 22.

- 조세간소화를 위한 부서(the Office of Tax Simplification)를 통해 조세시스템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조세회피를 자문하는 자에 대한 규제와 신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고 밝힘
- 온라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부가가치세제 측면에서는 세부담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힘

15 이탈리아

가. 2017년 예산법 발표

[조세동향 17-1호]

- 이탈리아 정부는 2016년 12월 21일 국회의결을 통과한 2017년 예산법을 공개하였으며, 동 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17년 1월 1일 발효됨¹⁷¹⁾
-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특례, R&D 과세특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를 대신하는 대체세 도입 등이 있음
-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으로는 VAT연결납세제도 도입이 있으며,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해외 고액자산가 유입을 위한 과세특례제도가 있음

1) 법인세

- 2017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을 기존 27.5%에서 3.5%p 인하하여 24%의 세율을 적용함
-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은 24%의 세율에 3.5%의 추가세금(surcharge)을 부과하여 기존 세율인 27.5%가 유지됨

171) Italy - Budget Law for 2017 - published(29 Dec. 2016), News IBFD; EY Global Tax Alert, Italian Parliament approves 2017 budget law, December 16, 2016.

- 다만, 자금운용법인은 27.5%의 세율이 아닌 24%의 세율을 적용함
- 2016년 예산법에 따른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특례 적용을 연장함
 - 세법상 연간 감가상각률이 6.5%를 초과하는 유형자산으로 2018년 6월 30일까지 취득 또는 금융리스계약으로 임차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의 40%를 증액하여 감가상각을 허용함(장부가액의 140% 상각 허용)
 - 이탈리아 정부의 산업성장 계획에 따른 디지털 또는 과학기술 설비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의 150%를 증액하여 감가상각을 허용함(장부가액의 250% 상각 허용)
 - 이탈리아 정부의 산업성장 계획에 따른 소프트웨어, IT시스템, 플랫폼 등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의 40%를 증액하여 상각을 허용함(장부가액의 140% 상각 허용)
- R&D 과세특례 적용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R&D 특례 대상 비용을 확대함
 - 2012~2014 과세연도의 평균 R&D비용을 초과하는 R&D비용의 50%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허용함
 - R&D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의 5백만유로에서 2천만유로로 상향조정함
 - 또한, 적격 R&D비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단체의 연구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함
- 상장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피인수 자회사의 결손금을 인수법인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탈리아 내국 상장법인이 내국법인인 피인수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의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피인수 자회사의 결손금을 인수법인인 상장법인에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 결손금 이전은 주식 취득 이후 최초 3년간 발생하는 결손금에 한해 적용함
- 비상장법인 양도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대신하는 대체세를 도입함
 - 2017년 1월 1일 현재 이탈리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이탈리아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8%의 대체세(substitute tax)를 납부함으로써 추후 관련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대체세의 과세표준은 취득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2017년 1월 1일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함
- 대체세 납부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일괄 납부하거나, 2017년 6월 30일부터 3년간 연납할 수 있음

2) 부가세

- EU의 부가가치세("VAT") 지침에 따른 VAT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 EU VAT지침¹⁷²⁾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VAT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함
 - VAT 연결납세제도를 신청하는 관계사 그룹은 단일 VAT 납세자로 취급되어, 그룹 내부 거래는 VAT가 과세되지 않으며 제3와의 거래는 단일 VAT 그룹의 거래로 처리함
 - VAT 연결납세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경제적, 조직적 연관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재무적 연관성: 50%를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지분관계
 - 경제적 연관성: 관계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유사하거나 보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이어야 함
 - 조직적 연관성: 관계 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함

3) 개인소득세

- 해외 고액자산가 유입을 위해 해외로부터 이탈리아로 이주하는 개인의 해외원천소득을 과세면제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함
 - 이탈리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과세제도(territorial tax system)를 적용하여 15년간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는 대신 매년 10만유로의 대체세(일반 소득세를 대신하는 대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172) Article 11 of the EU Directive 2006/112/CE

- 동 특례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당 25,000유로의 대체세를 납부하고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동 특례규정은 과거 10년 중 최소 9년 동안 비거주자인 개인에 한해 적용 신청할 수 있음

나. 역외재산 자진신고 절차에 대한 지침 공개

[조세동향 17-2호]

-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2017년 2월 개인 납세자의 역외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절차에 대한 지침을 공개함¹⁷³⁾
 -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개인 납세자 중 세무신고서에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누락 신고한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2015년 및 그 이전 과세연도 신고분에 대한 자진신고 절차를 2017년 2월 7일부로 개시함
 - 자진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진신고절차 개시를 2017년 7월 31일까지 과세당국에 신청하여야 함
- 자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가산세 경감과 형사소추 면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¹⁷⁴⁾
 - 자진신고 신청자는 미납세액과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가산세의 최대 50%를 경감받을 수 있음
 - 미납세액과 이자 상당액은 일시에 납부하거나 3개월 분납이 가능함
 - 또한 자진신고자는 조세범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소추 등 형사상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음

173) Italy - Voluntary disclosure procedure - instructions for electronic submission published(08 Feb. 2017), News IBFD.

174) Italy - Law Decree on urgent tax measures - voluntary disclosure procedure(06 Jan. 2017), News IBFD.

다. 국가별보고서 관련 시행령 발표

[조세동향 17-3호]

- 이탈리아 경제재정부는 2017년 3월 8일 국가별보고서 관련 시행령을 발표함¹⁷⁵⁾
 - 이탈리아는 2015년 12월 2016 개정세법(Stability Law for 2016)에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를 입법하였으나, 당시에는 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음
 - 동 시행령은 국가별보고서의 최초 신고대상 사업연도, 신고의무자, 신고 대상 정보, 신고기한 등에 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최초 신고대상 과세연도는 2016년으로 하며, 신고의무자는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이탈리아 소재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법인으로 하되 대리신고를 허용함¹⁷⁶⁾
 -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법인의 거주지국에서 국가별보고서 신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대리모법인(surrogate parent entity)을 통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이 대리모법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탈리아 현지법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 국가별보고서는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권고에 따라 조세관할지역별 재무 및 세무 정보와 사업현황 그리고 조세관할지역별 다국적그룹의 현지법인 현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¹⁷⁷⁾
 - 국가별보고서 신고서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음

- 국가별보고서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턴 12개월로 하되, 2016 과세연도 신고분에 한해 신고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함¹⁷⁸⁾

175) Italy - BEPS Action Point 13 and Directive 2016/881/EU - Ministerial Decree on CbC reporting published (09 Mar. 2017), News IBFD. https://online.ibfd.org/document/tns_2017-03-09_it_1(검색일자: 2017. 3. 20.)

176) KPMG, Italy: Ministerial decree enacting the Italian CbCR regulations, Tax Alert, 10 March 2017.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3/tnf-italy-march10-2017.pdf>(검색일자: 2017. 3. 20.)

177) Ibid.

178) Ibid.

- 한편,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자(최종모법인, 대리모법인, 또는 이탈리아 현지법인)를 지정하여 과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 미신고 또는 신고오류에 대해서는 1만~5만유로의 가산세가 적용됨¹⁷⁹⁾

라. EU지침에 따른 사전예규 자동교환 시행 발표

[조세동향 17-4호]

-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3월 24일 EU 회원국 간의 사전예규(advance tax ruling) 자동교환 시행을 발표함¹⁸⁰⁾
 - 동 사전예규 자동교환 시행은 EU의 자동정보교환지침¹⁸¹⁾에 따른 조치로,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함
-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국제거래 관련 사전예규와 이전가격사전승인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EU 회원국 간 자동교환하게 됨¹⁸²⁾
 - 국제거래에 대한 사전예규
 - 국제사업과 관련하여 특허박스(patent box)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과 관련된 예규
 - 납세협력프로그램(cooperative compliance program)에 참여하는 법인이 요청한 예규
 - 이탈리아 정부는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규신청 간소화 규정을 적용함¹⁸³⁾
 - 국제사업 관련 신규 투자에 대한 예규
 - 이전가격사전승인합의(APA)

179) Italy - Stability Law for 2016 - other measures(13 Jan. 2016), News IBFD.
https://online.ibfd.org/document/tns_2016-01-13_it_5(검색일자: 2017. 3. 20.)

180) Italy - Directive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respect to advance tax rulings implemented(24 Mar. 2017), News IBFD.

181) Directive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respect to advance tax ruling(Directive 2015/2376/EU of 8 December 2015).

182) Italy - Directive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respect to advance tax rulings implemented(24 Mar. 2017), News IBFD.

183) Italy - Tax ruling procedure for taxpayers joining cooperative compliance programme - Ministerial Decree published(28 June 2016), News IBFD.

- 비EU 회원국과 합의한 APA는 합의 내용상 정보공개를 허용하고 또한 해당 국가 과세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보교환이 가능함

마. 각료회의 조세 관련 긴급조치 법령 발표

[조세동향 17-5회]

- 이탈리아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2017년 4월 24일 EU의 이탈리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손실 방지 요구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조세 관련 긴급조치 법령을 실행함¹⁸⁴⁾
 -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동 법령은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며, 60일 이내에 국회의결을 통해 입법될 예정임
- 동 조치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이 개정됨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개정 사항으로는 자본투자에 대한 명목이자 공제, 이전 가격세제, 특허박스제도, 투자이익분배금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 등이 있음
 - 부가가치세법 개정 항목에는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척기한 단축,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대상 거래 확대, 부가가치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채권과 여타 조세채무 상계 적용 기준금액 조정 등이 포함됨¹⁸⁵⁾
- 법인의 자본투자에 대해 적용하는 명목이자공제(nominal interest deduction) 관련 현행 규정에 기한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가능 금액을 축소함
 - 명목이자공제는 이탈리아 법인의 자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과 현금 출자 금액에 특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자본투자는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과 비교할 때 관련 이자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명목이자 공제를 통해 자본투자를 장려하는 것임

184) Italy - Law decree on urgent tax measures - details of new corporate taxation measures(11 May 2017), News IBFD.; EY, Global Tax Alert, 1 May 2017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italian-parliament-introduces-urgent-measures-on-tax-matters>(검색일자: 2017. 5. 24.)

185) KPMG, Italy: New VAT measures introduced, 28 April 2017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4/tnf-italy-new-vat-measures-introduced.html>(검색일자: 2017. 5. 25.)

- 기존 규정은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과 현금 출자의 증가분에 대하여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7%의 명목이자 공제를 적용하였음
- 이번 개정은 2010년 1월 1일이 아닌 특정 사업연도의 5 사업연도 전 개시일의 이익 잉여금과 현금출자를 기준으로 명목이자 공제를 계산하도록 하여 법인들의 명목이자공제 금액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짐
-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정상가격 개념을 도입하고,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이탈리아에서의 과세소득 감소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소득 조정 신청절차를 도입함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하는 거래금액을 기존 정상가치(normal price)에서 OECD 이전가격지침에 따른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대체함
 - 기존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에서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정은 양자 조세조약상 상호합의를 통하여서만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의 별도 요청에 따라 과세소득 감소 조정이 가능해짐
 - 관련 과세소득 조정 신청에 대한 상세 절차는 추후 이탈리아 국세청이 고시할 예정임
- BEPS프로젝트 Action 5에 따라 기존 특허박스(patent box)제도하에서 조세특례 적용 대상이었던 상표권(trademark)을 지적재산권 분류에서 제외하여 조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 이탈리아 또는 이탈리아와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임직원 등에 귀속되는 투자이익분배금(carried interest)을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투자이익분배금이 자본이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기 위해서는 지분율 요건과 투자 비율 요건, 투자보유기간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투자이익분배금이 기존 근로소득에서 자본이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률이 45%에서 26%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 경정청구 제척기한을 기존 3년에서 당해 사업연도 내로 단축함

-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는 해당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매입세액공제와 환급 청구를 완료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분할 납부 대상 거래를 기존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이탈리아 증권거래소(Borsa Italiana)에 상장된 법인으로 확대 적용함
 - 한편, 2017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분할 납부 제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정부는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2020년까지 제도 유지 연장 허가를 요청함
-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표준세율은 2021년까지 현행 22%에서 25%로, 경감세율은 2020년까지 현행 10%에서 13%까지 인상하기로 함
 - 현행 22%의 표준세율을 2018년 25%, 2019년 25.4%, 2020년 24.9%, 2021년 25%로 인상함
 - 현행 10%의 경감세율을 2018년 11.5%, 2019년 12%, 2020년에 13%로 인상함
- 부가가치세 환급채권과 기타 세목의 조세채무의 상계 적용 최소기준을 현행 1만 5천 유로에서 5천유로로 하향 조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입증 절차를 간소화함

16 프랑스

가. 우회수익세 위헌 결정

[조세동향 17-1호]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2017년 예산법(Budget Law)에 포함된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 tax)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¹⁸⁶⁾
 - 프랑스 국회는 2016년 12월 20일 우회수익세가 포함된 2017년 예산안을 의결함
 - 그러나, 우회수익세 법안은 국회 의결 이후 법 적용에 앞서 실시된 헌법재판소의 심의결과와 위헌으로 판정되어 입법이 취소됨

186) Tax Notes International, Vol. 8, Number 1, January 2, 2017, pp. 56-57.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우회수익세 법안이 프랑스 과세당국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법인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프랑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함
 - 프랑스 헌법 제34조는 모든 종류의 세금에 대한 과세소득, 세율, 징수절차는 법령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¹⁸⁷⁾
 - 이에 반해 우회수익세 법안은 세무조사 시에 프랑스 과세당국의 임의적 추정에 기반하여 과세당국이 외국법인에 프랑스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¹⁸⁸⁾
 - 헌법재판소는 우회수익세 법안이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부과할 납세자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당하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 동 법안이 헌법 제34조에 의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함

나. 국가별보고서 신고서식 발표

[조세동향 17-2호]

- 프랑스 과세당국은 2017년 2월 2일 국가별보고서 신고서식을 발표함¹⁸⁹⁾
 - 프랑스는 2016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보고서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프랑스 소재 모법인은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프랑스는 2015년 12월 30일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를 입법하였으며, 입법 당시 국가별보고서 서식은 공개하지 않음
- 프랑스의 국가별보고서 신고서식은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서 제시한 템플릿을 준용함
 - 신고서식은 Action 13의 지침에 따라 “조세관할 지역별 소득, 세금, 사업활동 분배

187) Multinational Tax & Transfer Pricing News,
<http://mnetax.com/frances-diverted-profit-tax-ruled-unconstitutional-18873>(검색일자: 2017. 1. 23)

188) EY Global Tax Alert, December 30, 2016,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French_diverted_profits_law_struck_down_by_Constitutional_Court/\\$FILE/2016G_04583-161Gbl_French%20diverted%20profits%20law%20struck%20down%20by%20Constitutional%20Court.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French_diverted_profits_law_struck_down_by_Constitutional_Court/$FILE/2016G_04583-161Gbl_French%20diverted%20profits%20law%20struck%20down%20by%20Constitutional%20Court.pdf)(검색일자: 2017. 1. 23)

189) France - CbC reporting - form published (09 Feb. 2017), News IBFD.

에 대한 개관”과 “조세관할 지역별 다국적기업그룹의 전체 기업 목록” 등 두 개의 표로 구성됨¹⁹⁰⁾

- 국가별보고서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며,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하여 전자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최대 10만유로로함¹⁹¹⁾

다. 헌법재판소의 CFC규정 관련 면책조항 확대적용 결정

[조세동향 17-3호]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일 개인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규정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항의 개정을 결정함¹⁹²⁾
- 본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의 판결은 2016년 12월 프랑스 행정대법원(Administrative Supreme Court, Conseil d'Etat)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짐¹⁹³⁾
- 헌법재판소는 프랑스의 개인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CFC규정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소재한 피지배법인에 한하여만 면책조항(safe harbour)을 적용하는 것은 프랑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함¹⁹⁴⁾
- 개인납세자에게 적용되는 CFC규정은 프랑스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이 소유된 해외 피지배법인 중 법인의 소재국가가 저세율 국가이며 자산이 주로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에 대해 적용함

190) 해당 서식은 프랑스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impots.gouv.fr/portail/files/formulaires/2258-sd/2017/2258-sd_1800.pdf(검색일자: 2017. 2. 23.)

191) KPMG, France: Country-by-country reporting form, April 2017.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2/tmf-france-country-by-country-reporting-form.html>(검색일자: 2017. 2. 23.)

192) France - CFC rules for individuals - scope narrowed by Constitutional Court(03 Mar. 2017), News IBFD.

https://online.ibfd.org/document/tns_2017-03-03_fr_1(검색일자: 2017. 3. 21.)

193) France - CFC rules for individuals - preliminary ruling on constitutionality requested(28 Dec. 2016), News IBFD.

https://online.ibfd.org/document/tns_2016-12-28_fr_2(검색일자: 2017. 3. 21.)

194) France - CFC rules for individuals - scope narrowed by Constitutional Court(03 Mar. 2017), News IBFD.

https://online.ibfd.org/document/tns_2017-03-03_fr_1(검색일자: 2017. 3. 21.)

- CFC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외 피지배법인이 프랑스 개인에게 배당을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지배법인의 유보소득을 프랑스에서 과세함
- 다만, EU 소재 피지배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CFC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두었음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상기 EU 소재 피지배법인에만 적용되는 면책조항이 프랑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결함
- 헌법재판소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EU 소재 피지배법인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비EU 국가에 소재한 피지배법인에 대해서도 면책조항이 적용되도록 함¹⁹⁵⁾
 -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지배법인이 EU 국가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프랑스 개인이 소유하는 해외 피지배회사에 대한 투자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의 인위적 투자구조가 아닌 경우 CFC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피지배법인이 비협조적 조세관할지역(non-cooperative state or territory) 또는 프랑스와 조세행정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2016년 기준 비협조적 조세관할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보츠와나, 브루나이, 과테말라, 마셜군도, 나우루, 니우에 등 총 6개국이 있음

17 핀란드 -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관련 법안 확정

[조세동향 17-1호]

- 2016년 11월 핀란드 국회는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제출에 관한 법안을 확정함¹⁹⁶⁾¹⁹⁷⁾

195) Ibid.

196)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let-finland-implements-country-by-country-reporting-in-accordance-with-beps-action-13>(검색일자: 2017. 1. 16.)

197) 핀란드 재무부는 2015년 12월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도입안을 발표했으며, 2016년 6월 수정안을 발표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 대응지원센터, http://www.kipf.re.kr/Beps/sub/sub4detail.aspx?serial_no=142&typeno=2&Search=undefined&SearchWord=&page=1(검색일자: 2017. 1. 16.)

- 핀란드는 국가별보고서뿐만 아니라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점에서 EU 지침¹⁹⁸⁾보다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강화함
-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국가별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국가별보고서는 핀란드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제출하며, 직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5억유로를 초과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함
 -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핀란드 과세당국에 보고대상자임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¹⁹⁹⁾
 - 추후 핀란드 과세당국은 통지의 내용, 형식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임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임
 - 핀란드는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과세당국 간 다자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한 국가이므로 제출된 국가별보고서는 다른 다자협정 체결국과 교환될 예정임
- 마스터파일은 해당 사업연도 동안 다국적기업 그룹 내 기업 사이의 총거래금액이 5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함
 - 현행 핀란드 세법상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 규정이 마스터파일에도 적용됨
- 로컬파일은 해당 사업연도 동안 다국적기업 그룹 사이에 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이 제출 대상이며, 제출이 면제되는 거래 하한금액은 없다는 점이 마스터파일과 다름
 - 다만,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기업 사이의 총거래금액이 50만유로 이하면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 비교분석(comparability analysis)과 이전가격 방법에 대한 설명 등을 생략하여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음

198) EU Directive 2016/881

199)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보고서의 제출대상자를 국세청에 통지해야 하며, 이후 2017년 12월 31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로컬파일의 제출기한은 마스터파일과 동일함
- 국가별보고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5,000유로까지 가산세가 부과됨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대상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됨

18 체코

가.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규정 승인

[조세동향 17-4호]

- 체코 국회는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 예규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 승인 정보를 강제적·자동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함²⁰⁰⁾
- 승인된 규정은 EU 국가 사이에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EU의 자동정보교환 지침(Directive 2015/2376)²⁰¹⁾을 체코 국내법에 적용한 것임
 - 자동정보교환지침은 2015년 12월 8일 채택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²⁰²⁾
- 관련 국가와 연간 2차례 조세 예규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정보를 공유할 것이며, 교환대상 세목은 직접세로 한정함

나.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의 보고기한 연장

[조세동향 17-5호]

- 체코 정부는 국가별보고서의 제출대상에 대한 보고기한을 당초 2017년 9월 30일에서 2017년 10월 31일로 한달 연장함²⁰³⁾

200) Tax notes international, "Senate Approves Tax Administration Cooperation Legislation," 2017. 3. 20.

201) EU,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5L2376>(검색일자: 2017. 4. 21.)

202) EU,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5L2376>(검색일자: 2017. 4. 21.)

- 체코는 2016년 8월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²⁰⁴⁾했으나,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계속 논의 중임
 -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연결기준 매출액이 7.5억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이며,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19 헝가리 -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안 발표

[조세동향 17-4호]

- 2017년 3월 10일 헝가리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헝가리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헝가리 과세당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²⁰⁵⁾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과세기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 매출액 7.5억유로를 초과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함
 - 헝가리 내국법인은 과세기간 종료 후 12개월 내에 과세관청에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자인지 여부와 다국적기업 그룹 내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업과 제출 국가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제출대상자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20백만포린트(HUF)까지 가산세가 부과됨
 -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는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제출대상자를 보고하지 않거나, 국가별보고서를 지연제출이나 미제출하거나, 국가별보고서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임

203) E&Y, "The Latest on BEPS- 8 May 2017,"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The_Latest_On_BEPS_May_8_2017/\\$FILE/2017G_03060-171Gbl_The%20Latest%20on%20BEPS%208%20May%202017.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The_Latest_On_BEPS_May_8_2017/$FILE/2017G_03060-171Gbl_The%20Latest%20on%20BEPS%208%20May%202017.pdf)(검색일자: 2017. 5. 26.)

204) BEPS 대응지원센터, BEPS 액션별 동향, http://www.kipf.re.kr/Beps/sub/sub4detail.aspx?Serial_no=249&typeno=1&Search=undefined&SearchWord=&page=2(검색일자: 2017. 5. 29.)

205) IBFD, "Hungary Draft law on country-by country reporting-released," 2017. 3. 21.,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highlight/data/tns/docs/html/tns_2017-03-21_hu_1.html&q=cbc&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7. 4. 18.)

- 헝가리는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과세당국 간 다자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하였으며, 다자협정 체결국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²⁰⁶⁾

20 EU

가. 혼성불일치규정 개정 합의

[조세동향 17-3호]

- EU 경제재무이사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는 2017년 2월 21일 EU 조세회피방지지침상의 혼성불일치규정을 EU 국가와 제3국 간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에 합의함²⁰⁷⁾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6년 6월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에 합의한 바 있으나, 당시 지침은 혼성불일치규정의 적용을 EU 회원국 간의 거래로 한정하였음²⁰⁸⁾
-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10월 법인세 개혁패키지 제안서(corporate reform package proposal)에 혼성불일치규정을 비EU 국가와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²⁰⁹⁾을 제시하였음²¹⁰⁾
- EU 집행위원회의 개정안은 혼성불일치규정의 상기 확대 적용 외에도 혼성양도, 혼성 고정사업장불일치, 이전불일치, 이중거주자불일치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제안함

206) IBFD,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signed by Hungary," 2017. 1. 30.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highlight/data/tns/docs/html/tns_2017-01-30_o2_2.html&q=cbc&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7. 4. 21.)

207) European Commission,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6595-2017-INIT/en/pdf>(검색일자: 2017. 3. 22.)

208)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886_en.htm(검색일자: 2017. 3. 22.)

209)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EU) 2016/1164 as regards hybrid mismatches with third countries, Strasbourg, 25. 10. 2016 COM(2016) 687 final.

210)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ompany-tax/corporate-tax-reform-package_en(검색일자: 2017. 3. 22.)

- 2016년 6월의 조세회피방지지침상의 혼성불일치규정은 EU 국가 간의 혼성금융상품과 혼성채 거래만을 다루었음
- 동 개정안은 EU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자문을 거쳐 EU 이사회(the Council of EU)에 의해 공식 채택될 계획이며, EU 국가는 2019년 말까지 관련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여야 함
- 단, 역혼성채(reverse hybrid mismatches) 관련 규정은 2021년까지 입법하고 2022년부터 적용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7-6호]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7년 6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효과성』 보고서²¹¹⁾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start-ups)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정책적 역할과 EU 및 OECD 회원국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EU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기업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기업은 고용창출과 생산성 증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반면, 이들 기업의 자본투자(equity financing) 비율은 낮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기업 관련 조세 정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211) European Commission,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for venture capital and business angels to foster the investment of SMEs and start-up, 2017.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final_report_2017_taxud_venture-capital_business-angels.pdf(검색일자: 2017. 6. 19.)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중요한 정책적 방안 중 하나로, 이러한 투자를 장려하는데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음

- EU 28개국과 OECD의 8개국²¹²⁾ 등 주요 36개국에 대한 조사 결과 19개국에서 46개의 관련 세제혜택 제도가 존재하였으며, 세제혜택의 범위, 적용요건, 관련 과세행정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에서는 조사 대상 국가들에서 차이를 보임
 - 동 보고서는 세제혜택 범위, 적용요건, 관련 과세행정 등 크게 3개의 기준으로 각국의 세제혜택 제도를 평가하였으며, 영국의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제도를 가장 좋은 모범사례로 꼽음
 - 영국의 SEIS 제도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 시점에서의 투자세액공제, 재투자를 위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양도차익 과세면제, 양도손실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포함함
- 동 보고서는 투자자의 위험 감소, 투자 세제혜택의 대상 기업 특정, 양질의 투자 확대, 제도의 안정성, 체계적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함
 - 세제혜택은 투자 시점에서의 투자세액공제, 투자 손실 시의 구제 등 투자자들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함
 - 정부는 세제지원 대상 기업을 산업 및 기술 분야 등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력이 없다는 일반적 한계점을 인식하여, 세제혜택 대상 기업을 기업의 연령과 규모(재무 및 인력 등) 등을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양질의 투자 확대를 위해 성과연동 세제혜택 등의 적격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를 설계하여야 함
 - 시간 경과를 고려한 제도의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들에 대한 제도의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과 관련한 투자 세제혜택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조사대상국에서 관련 세제혜택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가 전반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제도의 설계와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

212) OECD 8개국은 호주, 캐나다, 사이프러스,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터키, 미국을 포함

가. BEPS Action 4 추가 지침 발표

[조세동향 17-1호]

- OECD는 2016년 12월 22일 BEPS Action 4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함²¹³⁾
 - 2015년 10월 발표된 Action 4 최종보고서상의 그룹비율규정(group ratio rule)에 대한 설계 및 운영 관련 사항과 은행 및 보험업종에 대한 이자공제제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추가 지침을 제시함
- Action 4 최종보고서의 그룹비율규정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함
 - Action 4 최종보고서는 과도한 이자비용 공제로 발생하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고정비율규정(fixed ratio rule)과 그룹비율규정을 제안함
 - 추가 지침은 상기 그룹비율규정과 관련하여 그룹의 제3자 순이자비용의 계산, 그룹의 EBITDA²¹⁴⁾ 산출, 마이너스 EBIDTA를 보이는 그룹에 대한 접근법 등 그룹비율규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함
- 또한, 은행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이자공제제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함
 - 일반적으로 은행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동 업종에 대한 최소 자본 규정 등 각종 규제와 사업상의 특성으로 인해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통한 BEPS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낮음
 - 다만, 동 업종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관련 산업 규제 등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은행 및 보험업 영위 법인에 대한 이자공제제한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함

213) OECD,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additional-guidance-on-action-4-of-the-beps-action-plan-to-curb-international-tax-avoidance.htm>(검색일자: 2017. 1. 24.)

214)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 각 국가의 관련 규제 등을 고려하여 공통규정(고정비율 또는 그룹비율규정)이 아닌 업종의 특성에 맞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음
- 또한, 각 국가의 은행 및 보험업의 사업활동과 제반 규제 등을 검토하여 동 업종의 BEPS 관련 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공제제한 규정 적용을 면제할 수도 있음

나. BEPS Action 6에 대한 협의문서 공개

[조세동향 17-1호]

- OECD는 2017년 1월 6일 BEPS Action 6에 대한 협의문서(discussion draft)를 공개함²¹⁵⁾
 - 본 협의문서는 비집합투자기구(non-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funds)의 조세조약 적용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의견수렴기간은 2017년 2월 3일까지임
- 본 협의문서는 Action 6 최종보고서가 규정하는 조세조약남용방지 방안인 주목적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의 비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요청함
 - Action 6 최종보고서는 조세조약남용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조세조약에 혜택의 제한(limitation-on-benefits)규정과 주목적테스트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함
 - 동 협의문서는 비집합투자기구를 대표적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별 주목적테스트규정 적용에 대한 사항을 기술함
 - 비집합투자기구를 지역투자플랫폼회사(regional investment platform),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펀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상기 비집합투자기구에 대한 3가지 예시는 의견수렴을 거쳐 주목적테스트규정에 대한 OECD모델조세협약 주석서에 반영될 계획임

215) OECD,

<http://www.oecd.org/tax/treaties/interaction-between-the-tax-treaty-provisions-of-the-report-on-beps-action-6-and-the-treaty-entitlement-of-non-civ-funds.htm>(검색일자: 2017. 1. 25.)

다.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 추가 서명 국가 발표

[조세동향 17-2호]

- OECD는 2017년 1월 27일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에 추가 서명한 국가들을 공개함²¹⁶⁾
 - 본 다자간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for Country-by-Country Reporting)은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국가 간 자동교환을 위한 장치임
 - 다자간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본국에서 신고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들과 자동교환하게 됨
- 최근 다자간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가봉, 헝가리,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몰타, 모리셔스, 러시아 등 7개국 있음
 - 이로써 현재까지 다자간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57개국에 이름²¹⁷⁾

라. BEPS프로젝트 Action 5와 13에 대한 상호검토 문서 공개

[조세동향 17-2호]

- OECD는 2017년 2월 1일 BEPS프로젝트 Action 5와 13에 대한 상호검토 문서를 발표함²¹⁸⁾
 - BEPS프로젝트 참여국의 상호검토(peer review)는 BEPS프로젝트의 15개의 Action 중

216) OECD.

<http://www.oecd.org/tax/seven-more-jurisdictions-sign-tax-co-operation-agreement-to-enable-automatic-sharing-of-country-by-country-information-beps-action-13.htm>(검색일자: 2017. 2. 23.)

217) 다자간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목록은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about-automatic-exchange/CbC-MCAA-Signatories.pdf>(검색일자: 2017. 2. 23)

218) OECD.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peer-review-documents-for-assessment-of-beps-minimum-standards-actions-5-and-13.htm>(검색일자: 2017. 2. 23.)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²¹⁹⁾에 대하여 참여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임

-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등이 최소기준에 해당함

- 상호검토 문서는 상호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검토 국가의 권한과 검토 방법론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검토 국가의 권한(terms of reference)은 최소기준 이행의 평가요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Action 5에 대한 평가요소로는 (i)조세특례 성격의 내국 예규에 대한 정보 수집 절차, (ii)수집된 예규의 국가 간 정보교환, (iii)정보의 비밀유지, (iv)정보교환으로 수집된 예규 관련 통계자료 유지 등이 있음
 - Action 13에 대한 평가요소로는 (i)이전가격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내국 법률 및 행정지침, (ii)다자간협정 등 정보의 교환 체계, (iii)국가별보고서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적절한 사용 등이 있음
 - 방법론(methodology)은 (i)관련 자료의 수집절차, (ii)상호검토 보고서의 준비와 승인, (iii)검토결과와 후속작업 등 상호검토의 절차상 방법론을 기술함

마. BEPS프로젝트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조세동향 17-4호]

- OECD는 2017년 4월 6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와 관련한 추가 지침²²⁰⁾을 발표함²²¹⁾

219)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Action으로는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등이 있음.

220) OECD,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April 2017.
<http://www.oecd.org/tax/beps/guidance-on-the-implementation-of-country-by-country-reporting-beps-action-13.pdf>(검색일자: 2017. 4. 25.)

221) OECD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further-guidance-for-tax-administrations-and-mne-groups-on-country-b>

- 동 추가 지침은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에 국가별보고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됨
- 동 추가 지침은 국가별보고서와 관련하여 1) 국가별보고서 서식상 ‘매출액’과 ‘관계회사’의 정의, 2) 국가별보고서 서식상 보고대상 기업 판단을 위한 회계기준, 3) 국가별보고서 신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연결매출액의 정의, 4) 국가별보고서 신고 및 교환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국가별보고서 서식²²²⁾에서 ‘매출액’은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이익(extraordinary income and gains)을 포함하며, 서식1의 ‘관계회사(related party)’는 서식2²²³⁾의 보고대상 현지법인(constituent entities)과 동일함
- 국가별보고서상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회사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최종모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기업 정보를 국가별보고서에 기재함
 - 최종모회사가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최종모회사의 거주지국은 현지 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IFRS) 중 선택 적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선택된 기업회계기준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국가별보고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결매출액(consolidated group revenue)’은 투자활동 관련 특별이익을 포함하며, 국가별보고서 신고대상 기준을 판단하는 연결매출액²²⁴⁾ 계산 시 연결매출액은 최종모회사 거주지국의 회계기준을 따름
 - 비특수관계자가 연결대상 기업의 소수지분(minority interest)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매출액 계산 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 또는 지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최종모회사 거주지국의 회계기준을 따름

y-country-reporting-beps-action-13.htm(검색일자: 2017. 4. 25.)

222) OECD(2015),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Action 13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p. 29의 Table 1에 기재하는 매출액(revenue)

223) OECD(2015), p. 30의 Table 2.

224) 연결매출액 7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은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가 발생함

- 최종모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국가별보고서 관련 입법이 지연된 경우, 해당 모회사가 자발적으로 해당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신고(parent surrogate filing)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별보고서의 최초 신고분(2016 과세연도)에 대한 국가 간 자동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 홍콩, 일본, 리히텐슈타인, 나이지리아, 러시아, 스위스, 미국 등이 자발적 신고를 허용하기로 함

바. Taxing Wages 2017 보고서 출간

[조세동향 17-4회]

- OECD는 2017년 4월 11일 『임금소득과세 2017(Taxing Wages 2017) 보고서』²²⁵⁾를 출간함²²⁶⁾
 - 동 보고서는 OECD 35개 회원국들의 임금에 대한 조세의 산출과 조세가 개별 가구의 순수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함
-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가구형태별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음
 - 임금소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Payroll Taxes), 그 밖에 가계현금급여(Cash Family Benefits) 등이 있음
 -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독신가구, 2자녀 편부모 가구, 2자녀 외벌이 가구, 2자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함
- OECD 회원국의 2016년 독신가구의 평균 임금에 대한 조세부담률(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포함)은 평균 36%로 나타남
 - 2016년 조세부담률은 2015년 대비 0.07%p 감소함
 - OECD 35개국 중 20개국에서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였고, 14개국에서 하락하였으며, 1개국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25) OECD(2017), *Taxing Wages 2017*, OECD Publishing, Paris.

226) 보고서의 발표일자는 2016년 4월 12일이나 실제 보고서의 가용일은 2016년 5월 중임.

- 우리나라의 독신가구 평균 임금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22.2%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6년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0.18%p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조세부담 상승은 주로 소득세 부담(0.13%p 상승)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2자녀 편부모 가구(각 국가 평균 임금의 67% 소득 기준)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16.6%로 조사대상 가구 형태 중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임
 -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조세부담률이 독신 가구의 조세부담률보다 낮음
 - 우리나라의 2자녀 편부모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17%로 OECD 평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2자녀 외벌이 가구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6%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버는 독신 가구(36%)보다 낮은 조세를 부담함
 - 이는 2자녀 기혼 가구에 유리한 소득세제도와 현금급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 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상대적으로 독신 가구의 조세부담률(22.2%)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자녀 맞벌이 가구(평균 임금소득의 167% 기준)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30.9%로 2자녀 외벌이 가구(26.6%)보다 더 높은 조세부담률을 보임
 -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2차 근로자(second earner)에 대한 배우자 및 부양자 공제 등 인적공제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2자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19.8%로 2자녀 외벌이 가구(20%)의 평균 조세부담률과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사. 국가별보고서의 국가 간 교환체계 현황 발표

[조세동향 17-5호]

- OECD는 2017년 5월 4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의 교환과 관

련하여 국가 간 교환체계 현황을 발표함²²⁷⁾

-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5월 현재 다자간협약(MCAA)과 EU의 관련 지침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약 700개 이상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체계가 체결됨
- OECD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국가 간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체계를 확인할 수 있음
- 현재까지는 OECD의 다자간협약과 EU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을 중심으로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향후 양자 간 조세조약을 통한 교환협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1월 현재 MCAA 체결국은 총 57개국에 이르며, OECD 국가 중 MCAA 미체결국은 미국과 터키 2개국이 존재함²²⁸⁾
- OECD 홈페이지²²⁹⁾를 통하여 각 국가 간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자동교환 체계를 확인할 수 있음

아. BEPS프로젝트 Action 15에 따른 다자간협약 체결식 개최

[조세동향 17-6호]

- OECD는 2017년 6월 17일 BEPS프로젝트 Action 15에 따른 다자간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체결식을 개최함²³⁰⁾
- 다자간협약은 BEPS프로젝트의 이행사항 중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국가 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발됨
 - BEPS프로젝트의 조세조약 관련 이행사항으로는 조세조약 남용방지(Action 6), 혼성 불일치효과의 해소(Action 2),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Action 7),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개선(Action 14) 등이 있음

227) OECD, <http://www.oecd.org/tax/beps/country-by-country-exchange-relationships.htm>(검색일자: 2017. 5. 23.)

228) OECD, <https://www.oecd.org/tax/beps/CbC-MCAA-Signatories.pdf>(검색일자: 2017. 5. 26.)

229) Ibid.

230) OECD

http://www.oecd.org/tax/ground-breaking-multilateral-beps-convention-will-close-tax-treaty-loophole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Ground-breaking%20multilateral%20BEPS%20convention%20signed%20at%20OECD%20will%20close%20loopholes%20in%20thousands%20of%20tax&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07-06-2017&utm_term=demo(검색일자: 2017. 6. 19.)

- 동 체결식에서 76개국이 다자간협약에 서명하거나 서명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다자간협약 체결국은 다자간협약 조항 중 BEPS프로젝트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에 해당하는 항목은 채택할 의무가 있으나,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 유보(reserve)를 선택할 수 있음
 - 다자간협약상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조세조약 남용방지(Action 6) 관련 조세조약 서문 개정과 조약남용방지 규정 도입, 상호합의 절차(Action 14) 관련 납세자의 이의제기 신청 범위 확대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다자간협약 조항 중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조항과 조세조약 분쟁 해결 시 양국 간의 대응조정 조항을 적용하고,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를 선택함²³¹⁾
 - 최소기준 중 조세조약 남용방지(Action 6)와 관련하여서는 조세조약 서문(preamble) 개정과 조약남용방지 규정인 ‘주요 목적 테스트’ 규정(principal purpose test)을 채택함
 - 상호합의 절차(Action 14)와 관련한 최소기준으로는 납세자가 체약국 중 어느 국가에라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함
 - 최소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이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체약 상대국에서 대응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적용하기로 함
- 다자간협약 체결로 우리나라의 91개 조세조약 중 45개 정도의 조약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간협약의 효력은 우리나라와 체약 상대국의 관련 국회 비준서가 OECD에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달 1일부로 발생함²³²⁾

23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 6. 8.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K7-mi7tRg3m9TEmQPghHspBj.node3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9379&menuNo=4010100(검색일자: 2017. 6. 19.)

23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06.08. 다자간협약 체결로 인해 개정되는 개별 조세조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재부 보도자료 참조.

자. BEPS프로젝트 Action 6 관련 상호검토 문서 발표

[조세동향 17-6호]

- OECD는 2017년 5월 29일 BEPS프로젝트 Action 6 관련 최소기준 이행 여부 평가를 위한 국가 간 상호검토(peer review) 문서를 발표함²³³⁾
 - BEPS프로젝트 참여국의 상호검토(peer review)는 BEPS프로젝트의 15개의 Action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에 대하여 참여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임
 -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등이 최소기준에 해당함
- 상호검토 문서는 상호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검토 국가의 권한과 검토 방법론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검토 국가의 권한(terms of reference)은 최소기준 이행의 평가 대상을 제시하며, Action 6 관련 검토 대상으로는 조세조약 서문(preamble) 개정과 조약남용방지 규정 도입 등이 있음
 - 방법론(methodology)은 상호검토 수행국가와 검토시기 관련 지침을 제시하며, Action 6 관련 이행사항 검토는 BEPS 참여국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수행하되, 2018년 6월 30일까지 검토를 완료하도록 함

차. Action 8-10에 따른 무형자산 평가 관련 협의문서 발표

[조세동향 17-6호]

- OECD는 2017년 5월 23일 BEPS프로젝트 Action 8-10에 따른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

233) OECD

http://www.oecd.org/ctp/beps/oecd-releases-peer-review-document-for-assessment-beps-action-6-minimum-standard.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releases%20peer%20review%20document%20for%20assessment%20of%20the%20BEPS%20Action%206%20minimum%20standard&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9-05-2017&utm_term=demo (검색일자: 2017. 6. 19.)

자산(hard-to-value intangibles, 이하 'HTVI')의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한 협의문서 (discussion draft)를 발표함²³⁴⁾

- 동 협의문서는 BEPS프로젝트 Action 8-10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HTVI의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한 접근법에 대한 정책적 원칙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의견수렴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임

- 동 협의문서는 HTVI의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i)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와 (ii) HTVI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점과 과세당국의 위협평가 가능 시점의 시기 차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룸
 -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납세자의 사전(ex ante) 정상가격 결정을 HTVI 거래 후의 정보를 바탕으로 과세당국이 사후(ex post)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납세자의 거래 시점과 과세당국의 위협평가 가능 시점 또는 세무조사 시점 간의 시기차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사후 조정이 가능하도록 세무조사 주기 및 부과체기간 등 세무조사 관행 및 관련 법령 개선을 제시함

234) OECD

<http://www.oecd.org/ctp/transfer-pricing/oecd-releases-a-discussion-draft-on-the-implementation-guidance-on-hard-to-value-intangibles.htm>(검색일자: 2017. 6. 19.)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1 대만

가. 담뱃세,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상 승인

[조세동향 17-1호]

- 대만 의회는 1월 11일 장기요양보험 재정 조달을 위해 담뱃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상을 승인함²³⁵⁾²³⁶⁾
 - 현재 대만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0% 단일세율이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10%, 15%, 20% 3단계로 신설됨
 - 각종 공제항목 반영한 후 상속가액이 50백만타이완달러~100백만타이완달러는 15%, 100백만타이완달러 초과 시 20%의 세율이 적용됨²³⁷⁾
 - 담뱃세는 1,000개비당 590타이완달러에서 1,000개비당 1,590타이완달러로 인상되어, 담배 한 갑(20개비)당 가격이 20타이완달러 인상됨
- 대만 재무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과 담뱃세 인상으로 인하여 약 288억타이완달러의 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함²³⁸⁾
 - 증가된 세수입은 2017년 장기요양보험 플랜 2.0(Long-term Care Plan 2.0) 재정에 사용될 예정임

235) Tax News, http://www.tax-news.com/news/Taiwan_Hikes_Inheritance_Cigarette_Taxes_____73208.html(검색일자: 2017. 1. 17.)

236) IBFD, <http://www.ibfd.org/IBFD-Tax-Portal/Tax-News-Service>(검색일자: 2017. 1. 17.)

237) <http://www.chinapost.com.tw/taiwan/national/national-news/2016/10/21/481703/Executive-Yuan.htm>(검색일자: 2017. 2. 1.)

238) 대만뉴스, <http://www.taiwannews.com.tw/en/news/3067912>(검색일자: 2017. 1. 29.)

나. 고정자산 감가상각표 일부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7-2호]

- 다만 재무부는 고정자산 감가상각표 일부 개정안을 2017년 2월 3일 발표함²³⁹⁾
 -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또는 자가 제조되는 고정자산의 잔존 감가상각 기간에 적용됨
-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촉진 등을 이유로 감가상각표 일부를 개정함
 - 산업용 로봇 등의 일부 기계 및 장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재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 특정 형태의 냉각 저장장치는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2 싱가포르

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7-1호]

-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17년 1월 12일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함²⁴⁰⁾²⁴¹⁾
 - 싱가포르는 실제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장소 및 가치창출 장소에서 이윤을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자산 및 위험측정의 기능적 분석에 대한 지침을 강화함
 - 이전가격 결정결과를 가치창출과 연계하도록, 싱가포르의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거

239)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02-08_tw_1.html&WT.z_nav=Navigation, 2017. 2. 8.

240) IBFD, <http://www.ibfd.org/IBFD-Tax-Portal/Tax-News-Service?page=2>(검색일자: 2017. 1. 17.)

241)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default.aspx>, 'Latest Updates'(검색일자: 2017. 1. 30.)

래에 대해 가치사슬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함

- 싱가포르의 이전가격 지침은 OECD 이전가격 지침서와 거의 유사함

- 싱가포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은 작성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싱가포르 납세자인 경우로 직접 사업연도 연결기준 매출금액이 1,125백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임
 - 사업연도 말 이후 1년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보고서 제출형식은 BEPS 권고안에 따라 3개의 표로 구성됨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규정의 처리가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싱가포르 과세관청의 다양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였음
 - 싱가포르 과세관청이 외국 과세관청과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BEPS 5(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²⁴²를 참조하여 강화된 지침을 설명함
-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의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에 제시함
 - 상호합의절차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납세자, 거주하지 않지만 싱가포르에 지점이 있는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상호합의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s)의 상호합의절차 조항에 명시된 기한(예: 3년)내에 시작해야 함
 -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때 4단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24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1단계(MAP 신청):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 신청서를 과세관청에 제출
 - 2단계(평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청서 평가
 - 3단계(검토 및 협상): 과세관청과 외국 과세관청 합의 도달 후 1개월 이내에 납세

242)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융해조세제도 대응

자에게 내용과 방법 등을 논의

- 4단계(이행):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상호합의절차 결과에 따라 이행

나. 2017/18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7-3회]

-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2017년 2월 20일 2017/18 예산안을 발표함²⁴³⁾
 - 2017/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750억싱가포르달러 규모이며, 예산안 부속서에는 법인세, 소득세, 탄소세 등의 세법 개정사항을 담고 있음
- 경기부양책으로 법인세 환급 상한금액 인상, 중소기업 지원보증, 노년층 고용 임금보조 확대 등이 포함됨
 -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이유로 법인세 환급세액을 일시적으로 확대함
 - 2017년에는 법인세 환급세액(Corporate Income Tax Rebate) 한도를 현행 2만싱가포르달러에서 2.5만싱가포르달러(약 2천만원)로 상향조정하며, 환급률은 납부세액의 50%임²⁴⁴⁾
 - 2018년부터 법인세 환급세액 한도는 1만싱가포르달러로 인하되며, 환급률도 납부세액의 20%로 제한됨
 -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SME Working Capital Loan)의 50%까지 정부가 보증함(기업당 30만싱가포르달러 한도)
 - 기업이 55세 이상의 노년층을 고용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금(Special Employment Credit)에 추가하여 추가특별고용지원금(Additional Special Employment Credit)을 연장함
 - 월임금이 4,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노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의 8%를 특별고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고용대상연령을 2017년 7월 1일부터 현행 65세 이하에서 67세 이하로 확대함
 - 노년층 근로자 채용 시 추가특별고용지원금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월임금의 3%를

243) 싱가포르 재무부, http://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7/Home.aspx(검색일자: 2017. 3. 17.)

244) 2017년 3월 24일 1S\$=801.97(KEB하나은행)

기업에 추가 지원함

- 추가특별고용지원금 예산은 약 160백만싱가포르달러이며, 노년층 근로자 12만명과 고용주 5만 5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가계지원대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적격대상자인 저소득 가구에 일회성 특별 환급을 실시하고, 거주자에게 2016년 소득세 납부세액의 20%를 환급하는 일시적인 소득세 환급을 실시함

○ 부가가치세의 일회성 특별 환급을 1인당 2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실시하는데, 약 2.8억싱가포르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며 1.3백만명이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과세가능소득이 2만 8천싱가포르달러 이하인 21세 이상 거주자로 주택가치(2016년 12월 31일 기준)가 1만 3천싱가포르달러 이하인 경우 200싱가포르달러, 주택가치가 13,001~2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자는 100싱가포르달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소득세 환급금액은 2016년 소득세 납부세액의 20%를 환급하며, 납세자 1인당 500싱가포르달러(약 40만원)을 한도로 함

□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세(Diesel Taxes), 탄소세 등 세법 개정이 있음

○ 경유 차량과 택시에 대한 유류세 부과를 종가세 방식에서 사용량에 비례(volume based)하여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함

-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7년 2월 20일부터 자동차용 경유, 산업용 경유 등에 1리터당 0.1싱가포르달러를 부과함

○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6% 감축을 목표로 2019년에 탄소세를 도입함

-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으로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는 발전소, 기업 등에 온실가스 배출 1톤당 10~20싱가포르달러로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임

3 인도

가. 연방 재무장관 통합 부가가치세 법안 하원 제출

[조세동향 17-4회]

- 인도 재무장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통합 부가가치세의 주요 법안을 3월 29일 하원에 제출함²⁴⁵⁾
 - 주별 또는 품목별로 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복잡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정안에 따라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통합 부가가치세가 시행될 예정임
 - 현재는 연방정부에서 연방소비세, 서비스세, 부담금 등을 부과하고 있고, 주정부는 진입세(Entry Tax), 판매세, 사치세 등을 각각 다른 세율로 적용하여 복잡한 체계임
-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간접세는 모두 연방 부가가치세(Central GST)로 통합되고, 주정부에서 부과하던 간접세는 주 부가가치세(State GST)로 통합됨
 - 통합 부가가치세 시행으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발생할 세수손실을 5년간 보전하기로 함
- 통합 부가가치세위원회는 연방, 주별로 부과하는 세목의 관리 범위를 정하고, 품목에 따라 5%, 12%, 18%, 28% 4단계 구조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확정함
 - 연방 부가가치세와 주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이동이 주 내(intra-state)에서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며, 재화와 용역의 주 간(inter-state)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 간 부가가치세(Inter-state GST)가 1% 추가로 부과될 예정임
 - 담배, 탄산음료, 고급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최고세율로 부과될 예정임

245) Taxnotes, "India - GST Bills Clear Lower House of Parliament,"(검색일자: 2017. 4. 3.)

나. 'Clean Money' 2단계 실시

[조세동향 17-5호]

- 인도의 중앙 직접세부(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는 클린머니 운영(Operation Clean money) 프로그램의 2단계로 개인납세자 6만명 이상을 조사할 예정임²⁴⁶⁾
 - 클린머니 운영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회피 근절이며, 지난 해 화폐개혁 시 예치된 현금예금에 대한 전자검증이 포함됨
 - 클린머니 운영 프로그램 2단계는 4월 14일부터 실시됨
 - 클린머니 운영 프로그램 1단계는 2016년 단행된 1,000루피 등의 통화 폐기에 따른 대규모 현금예금에 대한 전자검증으로 2017년 1월 31일 시작되었으며, 중앙 직접세부의 납세자 소득세 신고서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통화 폐기 데이터 비교 등이 주요 작업임
- 인도의 지난해 화폐개혁에 따라 은행에 예치된 구권액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과잉 현금거래자인 1,300명은 클린머니 운영 프로그램 2단계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음
 - 조세회피 고위험군은 과거 은행 예치금 등과 비교하여 현금을 초과보유한 자, 사업 거래 시 주로 현금을 이용하는 자, 고액자산을 보유한 공무원 등이 포함됨
- 2016/17 과세연도의 순 직접세수입은 8조 4,700억루피로, 클린머니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2015/16 과세연도 대비 약 14.2%가 증가됨
 - 소득세신고자도 2015/16 과세연도 대비 21.7% 증가하였음

다. 인도 전역에 통합 부가가치세 7월 1일부터 시행

[조세동향 17-6호]

- 인도의 통합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위원회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세율을 확정함²⁴⁷⁾

246) Taxnotes, "India - Phase 2 of 'Clean Money' Program Begins,"(검색일자: 2017. 5. 23.)

247) Taxnotes, "INDIA - Modi Reviews New Goods and Services Tax Regime," 2017. 6. 12.

- 인도 재무부 장관이 2006년 예산안 연설에서 2010년부터 GST의 도입과 관련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면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²⁴⁸⁾
 - 통합 GST 개정 이전에는 연방정부에서 연방소비세, 서비스세, 부담금 등을 부과하고, 주정부는 진입세(Entry Tax), 판매세, 사치세 등을 각각 다른 세율로 적용하여 간접세의 이원화 및 복잡한 조세체계로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되었음²⁴⁹⁾
 - 통합 GST 도입 목적은 주별 또는 재화별로 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복잡한 소비세 과세체계를 일원화하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통합 GST를 시행하여 친시장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인도 내각은 2014년 12월에 통합 GST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16년 8월에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통합 GST 도입을 준비함²⁵⁰⁾
- GST 과세를 위해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의 조정 등이 요구되어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었음²⁵¹⁾
 - 이후 2016년 8월에 상원을 통과하였고, 구체적인 모델 소비세법²⁵²⁾ 및 세부적인 세율체계가 공개되었으며²⁵³⁾, 2017년 3월에 하원을 통과하면서 7월 1일부터 통합 GST가 시행됨

〈표 III-1〉 인도의 통합부가가치세 논의 연혁

	내용
2006년	재무부 장관이 2007/08 예산안 연설에서 소비세 단일화 언급
2007년 05월 10일	중앙 및 주정부 재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가재정장관회의(EC; Empowered Committee of State Finance Minister) 구성
2007년 11월 28일	EC 및 연합재정세입국과 GST 논의
2008년 04월 30일	GST 모델 및 로드맵 마련
2009년 11월	GST 논의 보고서 발표하여 법안의 기틀 마련

248) Empowered Committee of State Finance Ministers(http://empcom.gov.in/content/16_1_Scope/Objectives.aspx)

24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7-4호

25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5-1호

251) Empowered Committee of State Finance Ministers(http://empcom.gov.in/content/20_1_FAQ.aspx).

25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6-7호

25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6-11호

〈표 III-1〉 의 계속

	내용
2011년 03월	GST 논의 보고서를 토대로 제115차 「수정 법안(The Constitutions 115th Amendment Bill)」이 하원에 상정되었으나, 재화 범위 등의 문제로 부결됨
2012년 11월 08일	GST 위원회 구성
2014년 12월 19일	제122차 「수정 법안(The Constitution(One Hundred And Twenty-Second Amendment) Bill, 2014)」 및 헌법 개정안 국회에 상정
2016년 08월 03일	상원 통과
2017년 03월 29일	하원 통과
2017년 07월 01일	통합 부가가치세 시행

자료: 인도 국가재정장관회의, http://empcom.gov.in/content/16_1_Scope/Objectives.aspx(검색일자: 2017. 7. 4.)
 인도 소비관세국, <http://www.cbec.gov.in/htdocs-cbec/gst/index>(검색일자: 2017. 7. 4.)
 Tax notes, "India - GST Bills Clear Lower House of Parliament,"(검색일자: 2017. 7. 4.)

-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간접세는 모두 연방 부가가치세(Central GST)로 통합되고, 주 정부에서 부과하던 간접세는 주 부가가치세(State GST)로 통합됨²⁵⁴⁾
 - 통합 부가가치세 시행으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발생할 세수손실을 5년간 보전하기로 함
- 통합 부가가치세 위원회는 연방, 주별로 부과하는 세목의 관리 범위를 정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통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확정함²⁵⁵⁾
 - 1,211개의 재화 및 500개의 용역의 통합부가가치세 세율을 5%, 12%, 18%, 28% 4단계 구조로 결정함²⁵⁶⁾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달걀, 우유, 꿀, 생과일, 채소, 소금 등)과 의료, 교육, 독립적인 언론인의 기사 수집 및 제공, 공인 스포츠단체, 공연예술 등의 인적용역 등은 통합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²⁵⁷⁾

2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7-6호

255) Tax notes, "INDIA - Modi Reviews New Goods and Services Tax Regime," 2017. 6. 12.

256) 인도 소비관세국, <http://www.cbec.gov.in/resources/htdocs-cbec/gst/chapter-wise-rate-wise-gst-schedule-18,05,2017.pdf>, 2017. 7. 3.

257) 인도 소비관세국, <http://www.cbec.gov.in/resources/htdocs-cbec/gst/chapter-wise-rate-wise-gst-schedule-18,05,2017.pdf>, 2017. 7. 3.

〈표 III-2〉 인도의 통합부가가치세 세율

	면세	5% 세율	12% 세율	18% 세율	28% 세율
재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달걀, 우유, 꿀, 생과일, 채소, 소금 등)	가공어류 및 육류, 커피, 차, 향신료, 석탄, 약 등	버터, 기타 지방류, 치즈, 건과일, 소시지, 과일주스, 치약가루, 양초 휴대폰, 바이오가스, 자전거 등	마가린, 파스타, 잼, 아이스크림, 인스턴트음식, 스피커, 모니터, 등	초콜릿, 탄산수, 세탁기, 청소기,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등
용역	의료, 교육, 독립적인 언론인의 기사 수집 및 제공, 공인 스포츠 단체, 공연예술 등의 인적용역 등	철도, 항공 운송서비스 등	냉난방 시설 없는 저가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냉난방 시설 있는 5성급 레스토랑, 통신 및 인터넷서비스, 1박당 5천루피 미만의 숙박시설 등	전시, 미술관, 워터파크, 카지노, 도박, 영화관, 5성급호텔, 1박당 5천루피 이상의 숙박시설 등

자료: 인도 소비관세국,
<http://www.cbec.gov.in/resources//htdocs-cbec/gst/chapter-wise-rate-wise-gst-schedule-18.05.2017.pdf>
 (검색일자: 2017. 7. 3.)
<http://www.cbec.gov.in/resources//htdocs-cbec/gst/Schedule%20of%20GST%20rates%20for%20services.pdf>
 (검색일자: 2017. 7. 3.)

4 일본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개정

[조세동향 17-4호]

- 일본은 OECD BEPS Action 3(효과적인 CFC 규정의 설계)의 CFC 규정을 “외국 자회사 합산과세”로 과세하고 있음
 - 외국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 자회사의 소득 상당액을 일본의 모회사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합산과세하는 제도임
- OECD BEPS Action 3(효과적인 CFC 규정의 설계)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여 CFC 개선방안을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였고, 개정안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실시됨²⁵⁸⁾

258)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re/zeisei17_pdf/zeisei17_04.pdf(검색일자: 2017. 4. 25.)

- 합산 판단 기준이 되는 조세회피 위험을 외국 자회사의 세율에 의해 파악하는 기존 제도에서 소득과 사업 내용에 따라 파악하는 구조로 개정됨
- 일정한 금융소득과 실질적 활동이 없는 사업에서 얻는 수동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대상이며 경제활동의 실체가 있는 사업에서 얻는 능동소득은 외국 자회사의 세율에 관계없이 합산대상에서 제외
- 경제활동실체가 없으면 능동적 소득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개정 전] 조세회피 위험을 외국 자회사의 조세부담률(20% 미만) 등으로 파악

외국 자회사의 조세부담률	회사로서 경제활동 실체판정	소득구분		자산성 소득 (이자 배당 사용료 등)		기타 (사업소득 등)
		경제실체 x	경제실체 ○	경제실체 x	경제실체 ○	
20% 이상	제도 대상 제외					
20% 미만	없음(적용제외기준 미달)					
	있음(적용제외기준 충족)					

주: 음영부분이 일본 모회사의 소득으로 간주해 합산과세됨

[개정 후] 조세회피 위험을 외국 자회사의 소득의 종류 등으로 파악

회사로서 경제활동 실체판정	수동 소득		능동 소득		적용면제기준 (외국 자회사의 세율)
	이상 소득 ¹⁾	이자·배당·사용료 등		기타 (사업소득 등)	
		경제실체 x	경제실체 ○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					30% 이상
현금박스에 해당 ²⁾					
경제활동기준 불충족 ³⁾					20% 이상
경제활동기준 충족 ³⁾		4)	4)		20% 이상

- 주: 1) 이상소득은 외국 자회사의 자산과 인력의 경제 실태에 따라 그 사업에서 보통 발생할 수 없고 발생근거가 없다고 간주되는 소득으로, 경제활동기준을 통과하고 회사의 실체가 있다고 판정된 외국 관계회사의 부분합산대상의 한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외국 관계회사에 대해서 합산대상으로 적용됨
- 2) 현금박스는 총자산에 대비하여 수동적인 소득의 비중이 높은 사업체임. 구체적으로는 총자산액에 대한 일정한 수동적 소득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30%를 넘는 외국 관계회사(총자산액에 대한 유가증권, 대부 용도로 제공하고 있는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합계액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외국 관계회사)
- 3) 경제활동 기준은 외국 관계회사가 소득을 얻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4개의 기준
- 4) 외국 자회사의 소득을 능동, 수동 구분(조세부담률이 20% 이상 외국자회사에 대해서는 면제)

- CFC 적용 제외기준을 OECD 권고안과 동일하게 경제활동기준으로 변경하고, 경제활동기준 충족 시 수동소득 합계액을 1천만엔에서 2천만엔으로 상향조정하여 CFC 적용 배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
 - 수동소득만 CFC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을 BEPS Action3의 경제활동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든 소득을 CFC 대상으로 하며,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수동소득만 CFC 대상에 포함
 - 경제활동기준은 외국 관계회사가 소득을 얻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4개의 기준임
 - 사업기준: 주된 사업이 주식보유, IP제공, 선박·항공기 리스가 아님
 - 실체기준: 본점 소재지 국가에 주된 사업에 필요한 사무소 등을 가지는 것
 - 관리지배기준: 본점 소재지 국가에서 사업의 관리, 지배 및 경영을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
 - 소재지 국가기준(또는 비관련자 기준): 주로 소재지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 주로 관련자 이외의 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것
- 각 사업연도 조세부담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CFC를 적용을 면제함
 - 그러나 20% 이상인 경우라도 페이퍼컴퍼니, 현금박스, 블랙리스트 기업 등에 해당되면 CFC를 적용함

5 중국

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2015년 연차보고서 발간

[조세동향 17-1호]

- 중국 국가세무총국(China's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2016년 12월 23일 발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⁵⁹⁾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주요 거래는 유형자산의 구입 및 판매 거래형태

이지만,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사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 승인제도도 증가하고 있음

- 쌍방적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 국가가 차지하고 있으며, 북아메리카는 2005-2015년 기간 동안 총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12.2%만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방적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일반적으로 완료까지 1년 미만이 소요되며, 2년 이내에 65.3%가 완료됨
 - 중국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에서 채택된 가장 일반적인 산출방법은 거래 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임
- 일방적, 쌍방적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진행절차를 의사전달, 적용, 타결 단계별로 실적을 제시하고 있음
- 2015년에 타결된 중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일방적 APA 76건, 쌍방적 APA 49건임

〈표 III-3〉 2015년 중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단계별 현황

(단위: 건)

진행 단계		일방APA	쌍방APA	합 계
의사전달(사전협의)		4	101	105
적용(검토 및 협상)		4	40	44
타결	(서 명 전)	1	2	3
	(시 행 중)	19	22	41
	(기간만료)	57	27	84
	소 계	77	51	128
합 계		85	192	277

자료: EY Tax Insights,
<http://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china-issues-2015-advance-pricing-agreement-annual-report.aspx>
 (검색일자: 2017. 1. 17.)

259) EY Tax Insights,
<http://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china-issues-2015-advance-pricing-agreement-annual-report.aspx>
 (검색일자: 2017. 1. 17.)

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등의 경감방안 발표

[조세동향 17-3호]

-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2017년 3월 5일 양회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함²⁶⁰⁾
 - 법인세 부담 3,500억위안 경감방안
 - 20%의 저세율이 적용되는 소기업의 과세표준을 현행 30만위안에서 50만위안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인세 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함²⁶¹⁾
 - 과학기술 중소기업의 R&D비용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함
 - 사업관련 수수료 부담 2,000억위안 경감방안
 - 기업의 명목성 비용부담을 야기하는 사업의 행정비용 수취항목 35개를 취소, 중지등으로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고, 비용수취 기준을 인하할 예정임
- 기업의 연간 이윤총액의 12%를 초과하는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신설되어 2월 24일부터 시행됨
 - 개정 전 법인세법 제9조의 기업이 지출한 공익성 기부금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연간 이윤총액의 12% 한도로 공제가능하였음
 - 법인세법 개정으로 12% 초과 지출 기부금에 대한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다. 비거주자 금융계좌정보 실사 정보관리방법 발표

[조세동향 17-5호]

- 중국의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중국 은행 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 중국 보험 감독관리위원회 7개 기관은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 실사 정보관리 방법을 5월 9일 발표함²⁶²⁾

260) Taxnotes, "China - Government to Reduce Business Tax Burdent,"(검색일자: 2017. 3. 13.)

261) 중국의 기본적인 법인세율은 25%이며, 저세율이 적용되는 소기업은 과세표준 50만위안 미만, 상시고용 인원 100명 미만, 순자산 10백만위안 미만인 경우임(제조업) China(People's Rep.)-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accessed 28 Mar. 2017).

- 비거주자 금융계좌정보 실사 정보관리방법 시행의 취지는 세원 관리 강화 및 외국 과세관청과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에 있음
- 금융계좌정보의 보고 및 실사에 관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임
-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가 역외탈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요 내용은 OECD의 일반보고기준(CRS)을 따르고 있음
- 중국 내 금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비거주자의 신규 금융계좌 및 기존 계좌에 대한 소유자명, 주소, 납세지위, 계좌 정보(계좌명, 계좌번호, 잔액) 등을 실사하여 소재지 과세관청에 2017년 말까지 실사 완료하여 보고해야 함
 - 보고 대상: 투자기관의 주식 및 채권, 예금, 보험 및 연금계약 등
 - 보고 대상 금융기관: 상업은행, 증권사,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을 포함하며, 금융리스회사, 자동차 금융회사, 통화중개회사 등은 제외됨²⁶³⁾

라. 영세기업의 법인세 경감 우대정책 범위 확대

[조세동향 17-6호]

- 중국 재무부, 국가세무총국은 연간 과세표준, 종업원, 자산총액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영세기업(小型微利企業)의 법인세 경감 우대정책 범위를 확대한다고 6월 8일 발표함²⁶⁴⁾
- 영세기업은 기업소득세 계산 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체 과세소득의 50%만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고, 20%의 저세율을 적용함
- 법인세 계산 시 법인세 경감 특혜가 적용되는 영세기업은 다음과 같음

262) 중국 국가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623078/content.html>(검색일자: 2017. 5. 21.)

263) 중국 국가세무총국, <http://hd.chinatax.gov.cn/hudong/noticedetail.do?noticeid=921021>(검색일자: 2017. 5. 25.)

264) 국가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660828/content.html>(검색일자: 2017. 6. 14.)

- (공업기업) 연간 과세표준 50만원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자산총액 3,000만원 이하
- (기타기업) 연간 과세표준 50만원 이하, 종업원 80인 이하, 자산총액 1,000만원 이하

마. 증치세 세율 간소화 정책 7월 1일부터 시행

[조세동향 17-6회]

- 중국의 국가세무총국이 4월 28일 발표한 ‘증치세 세율 간소화 정책’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한 상품의 세율을 인하하여 업종의 세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며, 현행 4단계의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여 증치세를 간소화함²⁶⁵⁾
- 주요 내용은 현행 13%의 증치세 세율을 적용하던 7가지 항목을 11%로 인하하여 세율 구조를 간소화함
 - 증치세를 11%로 인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① 농산품 ② 식물성 식용유, 수돗물, 석탄가스, 천연가스, 도서, 신문 잡지,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③ 사료 ④ 음향제품 ⑤ 전자 출판물 ⑥ 디메틸에테르 ⑦ 식염

바. 광고홍보비의 손금산입정책 발표

[조세동향 17-6회]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5월 27일 특정 기업의 ‘광고비와 홍보업무지출 세전공제 정책 통지’를 발표함²⁶⁶⁾

265) 현재 6%, 11%, 13%, 17% 세율 구조

266) Taxnotes, “CHINA - Preferential Tax Treatment Extended to Advertising Expenses,” 국가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653996/content.html>(검색일자: 2017. 6. 12.)

- 광고홍보비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화장품 제조 및 판매기업, 의약 제조기업, 음료 제조(주류 제외)기업 등임
 - 담배기업의 경우 광고비와 사업홍보비 지출은 전액 공제되지 않음
- 특정 기업의 광고홍보비는 당해 연도 매출금액의 30%를 미만에 대해서만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됨
 - 30%를 초과하는 광고홍보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됨

6 호주

가.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s tax; DPT) 법안 의회에 제출

[조세동향 17-2호]

- 호주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호주내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수익세 법안을 2월 9일 의회에 제출함²⁶⁷⁾
 - 우회수익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다국적기업이 호주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으로 이전할 경우 40% 세율로 우회수익세를 과세할 예정임
 - 우회수익세는 호주 내에서 거래를 수행하여 소득을 창출하지만 경제적 실질 없는 형식적인 거래를 통해 호주 내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 호주의 우회수익세 법안은 다음의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에 부과됨
 - 다국적기업의 전 세계 연간 수입이 10억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호주 내에서 연간 수입이 2,500만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267) Tax Notes, "Australia - Government Sends Diverted Profits Tax Bill to Parliament,"(검색일자: 2017. 2. 13.)

- 다국적기업이 우회수익세 등 조세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세금 보고 신고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최대 100배 인상하기로 함
- 세금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다국적기업은 가산금이 약 52만 5천호주달러로 증가할 것임
- 2018-19과세연도에 우회수익세로 약 1억호주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됨²⁶⁸⁾

나.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발표

[조세동향 17-4회]

- 호주 재무부 장관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4월 6일 발표함²⁶⁹⁾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법(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1,000개의 특별팀을 운영하여 실시함
- 59개 다국적기업과 기타 다수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71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적어도 7개의 주요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는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7개의 다국적기업(4개의 전자상거래 기업, 3개의 에너지 기업)에 대해 29억호주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것임

다. 재무장관 2017/18년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7-5회]

- 호주 재무부 장관은 2017/18년 연방정부 예산안을 5월 9일 발표함²⁷⁰⁾

268) 호주 정부 보도자료,

ht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09-2017/?utm_source=wysija&utm_medium=email&utm_campaign=Media+Release+-+Turnbull+Government+continues+crackdown+on+multinational+tax+avoiders(검색일자: 2017. 2. 23.)

269) 호주 재무부, <ht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30-2017/>(검색일자: 2017. 4. 24.)

270) 호주 재무부,

- 2017/18 회계연도 예산 총규모는 약 4,650억호주달러(약 400조원)임
- 조세 관련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 안정대책, 법인세율 인하, 은행세 도입 등이 있음

1) 소득세(주택가격 안정대책)

-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각한 후, 최대 30만호주달러까지 퇴직연금의 비과세적립금(Non-Concessional Contribution)으로 불입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
 - 65세 이상인 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부부의 경우 최대 60만호주달러까지 주택매각금액을 퇴직연금에 불입 가능함
- 적격 저가주택을 구매하는 거주자에게 자본이득세 10% 감면 혜택이 부여됨²⁷¹⁾
 - 적격 저가주택을 최소 3년간 보유하여 적격임차인에게 임대해야 자본이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짐
 - 개인 거주자에게만 자본이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임대료는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적용됨
 - 적격 저가주택은 주택공급재단(Community Housing Providers)에 의해 등록된 주택이며, 적격 임차인은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됨²⁷²⁾
- 한편, 비거주자에 대한 주된 주택(main residence)의 양도소득세 면제 폐지 등 비거주자의 호주 내 주택 소유에 대한 제한규정이 7월 1일부터 강화됨²⁷³⁾
 -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하던 주된 주택(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폐지함
 - 비거주자가 부동산 매각 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0%에서 12.5%로 인상되며, 실거래가 기준이 현행 200만호주달러에서 75만호주달러 이상으로 변경됨
- 비거주자가 신규로 투자하는 주택사업에도 제한이 있으며, 비거주자 소유의 미임대

http://www.treasury.gov.au/~media/Treasury/Publications%20and%20Media/Publications/2017/Portfolio%20Budget%20Statements%20201718/Downloads/PDF/07_ATO.ashx(검색일자: 2017. 5. 17.)

271) 호주 예산안, http://www.budget.gov.au/2017-18/content/glossies/factsheets/html/HA_110.htm(검색일자: 2017. 5. 31.)

272) 적격임차인에 대한 세부적인 법안을 마련 중이며, 예산안에는 저소득자 및 중간소득자로서만 규정되어 있음

273) 호주 예산안, http://www.budget.gov.au/2017-18/content/glossies/factsheets/html/HA_16.htm(검색일자: 2017. 5. 31.)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부담금이 5월 9일부터 부과됨

- 신규 개발 주택투자사업의 경우 비거주자가 사업의 5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비거주자 소유 주택이 연간 6개월 이상 미임대 시 부담금이 부과됨
 - 비거주자가 부동산 취득 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비거주자 투자 신청 수수료와 동일하게 매년 부과됨²⁷⁴⁾

2) 법인세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이 2026/27년 과세기간까지 시행될 예정임
 - 2016/17 현재 법인세율은 매출액 기준 과세소득금액 1,000만호주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은 27.5%, 대기업은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됨²⁷⁵⁾
 - 2018/19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매출액은 5,000만호주달러로 인상되어 적용됨
 - 매출액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장기적으로 향후 10년 내 중소기업의 세율을 25%로 인하할 예정이며,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는 없음

〈표 III-4〉 호주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개정내용

(단위: 만호주달러, %)

과세연도	매출액	중소기업 법인세율	대기업 법인세율
2015/16	200	28.5	30
2016/17	1,000	27.5	30
2017/18	2,500	27.5	30
2018/19~2023/24	5,000	27.5	30
2024/25	5,000	27.0	30
2025/26	5,000	26.0	30
2026/27	5,000	25.0	30

274) 투자수수료는 취득가격이 1백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5천호주달러, 1백만호주달러~2백만호주달러는 1만호주달러, 9백만호주달러~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91,300호주달러가 부과됨

275)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Small-business-entity-concessions/Concessions/Income-tax-concessions/Small-business-company-tax-rate/>(검색일자: 2017. 5. 28.)

- 연매출액 1천만호주달러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2만호주달러 미만 자산구입항목에 대해 즉시상각규정을 연장함
 - 2015년 5월 12일부터 2018년 6월 30일 사이에 구입한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을 즉시상각할 수 있음
 - 2017년 6월 30일이 일몰예정이었으나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
- 다국적기업 탈세 단속 강화를 위해 지하경제 단속 태스크포스(Black Economy Taskforce)를 구성함
 - 2,820만호주달러를 투입하여 조세범죄 및 다국적기업 탈세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약 4억 850만호주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3) 기타

- 여신금융기관(Authorized Deposit-taking Institutions)에 은행세(bank levy)를 부과하는 방안이 2017년 7월 1일부터 도입됨
 - 위험 선호적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회사채, 상업어음 등과 같은 금융부채에 분기당 0.015%(연 0.06%)의 은행세가 신설되어 부과됨
- 2017년 7월 1일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 구매 시 GST가 부과되지 않아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함
 - 현재는 비트코인 구매 시 GST가 부과되고, 비트코인을 통해 상품 구매 시에도 GST가 부과되어 GST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음
 -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 구매 시에만 GST가 부과되면 디지털 통화가 활성화되어 호주의 핀테크 산업의 성장도 기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담배소비세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2.5% 인상될 예정임
 - 2017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0년 9월 1일까지 총 4회 담배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이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물가연동제에 따라 조정됨
 - 스틱당 담배성분이 0.8g을 초과하지 않는 담배: 현행 \$0.61054/stick → \$0.61726/stick
 - 기타 담배: 현행 \$763.20/담배성분 1kg → \$771.60/담배성분 1kg

7 홍콩 - 2017/18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7-3회]

- 홍콩 재무장관은 2017년 2월 22일 2017/18 예산안을 발표함²⁷⁶⁾
 - 민생안정을 목표로 소득세 면세점 확대, 소득세 감면 및 소득공제 금액 인상과 주택자금대출이자 공제기간 연장이 주요 내용임

- 소득세 개정사항은 소득세 면세기준 확대, 인적공제 금액의 확대 등이 있음
 - 2017/18 과세연도에 개인소득세 면세점 기준을 4만홍콩달러에서 4만 5천홍콩달러로 인상하여 130만명의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인적공제 중 형제자매공제(dependent brother or dependent sister allowance), 장애 인공제(disabled dependant allowance) 금액을 인상하고, 본인교육비(self-education expenses) 특별공제를 인상함
 - 형제자매공제: 현행 3만 3천홍콩달러에서 3만 7,500홍콩달러로 인상
 - 장애인공제: 현행 6만 6천홍콩달러에서 7만 5천홍콩달러로 인상
 - 본인교육비공제: 현행 8만홍콩달러에서 10만홍콩달러로 인상
 - 적격 대출기관의 주택자금대출이자(home loan interest deduction)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 연간 공제한도는 10만홍콩달러로 현행 유지
 - 한시적으로 2만홍콩달러(약 29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의 75%를 감면하며, 약 18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²⁷⁷⁾

276) 홍콩 국세청, <http://www.ird.gov.hk/eng/tax/budget.htm>(검색일자: 2017. 3. 17.)

277) 2017년 3월 24일 1HK\$=144.57(KEB하나은행)

IV

기타

1 남아프리카공화국 - 국가별보고서 최종 규정 공개

[조세동향 17-1호]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2016년 12월 26일 국가별보고서 최종 규정을 공개함²⁷⁸⁾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BEPS Action 13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신고제도를 도입함
- 본 규정은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신고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²⁷⁹⁾
 - 신고의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기준 매출액이 100억란드(ZAR)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종모회사로 함
 - 국가별보고서에서는 Action 13 최종보고서의 요구사항과 같이 국가별 소득, 자산, 납부세액 등 재무정보와 사업활동 등을 기술하여야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으며, 신고기한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2 브라질 - 국가별보고서 최종 규정 공개

[조세동향 17-1호]

- 브라질 정부는 2016년 12월 29일 국가별보고서 최종 규정을 공개함²⁸⁰⁾

278) South Africa - Country-by-country(CbC) reporting - final regulations issued(29 Dec. 2016), News IBFD.

279)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No.R. 1598, December 23, 2016,
<http://www.sars.gov.za/AllDocs/LegalDoclib/SecLegis/LAPD-LSec-Reg-2016-07%20-%20Regulation%20R1598%20GG40516%20-%2023%20December%202016.pdf>(검색일자: 2017. 1. 26.)

280) Brazi - Implementation of CbC reporting - regulation published(02 Jan. 2017), News IBFD.

- 브라질은 BEPS Action 13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신고제도를 도입함
- 본 규정은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신고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기준 매출액이 22억 6천만 레알(BRL)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브라질 최종모회사로 함
 - 국가별보고서에서는 Action 13 최종보고서의 요구사항과 같이 국가별 소득, 자산, 납부세액 등 재무정보와 사업활동 등을 기술하여야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으며, 신고기한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3 칠레 - 국가별보고서 도입 발표

[조세동향 17-1호]

- 칠레 국세청은 2016년 12월 28일 국가별보고서 도입을 발표함²⁸¹⁾
 - 칠레는 BEPS Action 13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신고제도를 도입함
- 본 규정은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신고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5억유로(해당 사업연도의 12월 31일 기준 환율 적용)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칠레 최종모회사로 함
 - 국가별보고서에서는 Action 13 최종보고서의 요구사항과 같이 국가별 소득, 자산, 납부세액 등 재무정보와 사업활동 등을 기술하여야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으며, 신고기한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함

281) EY Global Tax Alert, January 6, 2017,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Chile_establishes_Country_by_Country_Reporting/\\$FILE/2017G_00067-171Gbl_TP_Chile%20establishes%20Country%20by%20Country%20Reporting.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Chile_establishes_Country_by_Country_Reporting/$FILE/2017G_00067-171Gbl_TP_Chile%20establishes%20Country%20by%20Country%20Reporting.pdf)(검색일자: 2017. 1. 26.)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7년 제1호

2017년 7월 24일 인쇄
2017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